

용기종기 전 경숙

1994년 겨울수련 및 제9회 정기총회 자료집

1994년 겨울 수련회 및 제9회 정기총회

일시: 1994년 1월 3일 - 5일 (2박 3일)

장소: 서울 숭실대학교내 사회봉사관

주최: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번지 275-8505~6

1994년 겨울수련 및 제9회 정기총회 자료집

1994년 겨울 수련회 및 제9회 정기총회

하남수련고숙 / 31

제 9 회 정기총회.....41

제 9 회 정기총회 회의록 / 43

1993년도 활동보고 및 중점과제 / 44

1993년도 운영구상 및 행사결과 / 55

1993년도 지역활동 중점과제 / 83

1994년 활동계획 / 121

회칙제정안 / 124

신·구 지역대표자 명단 / 132

결의문 / 133

일시: 1994년 1월 3일 - 5일 (2박 3일)

장소: 서울 송실대학교내 사회봉사관

주최: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주최 / 협찬: 지역사회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번지 275 -8505~6

94년 겨울 수련회.....2

- 일정표 / 2
- 중점사업보고회 / 4
- 조직강화를 위한 토론회 / 8
 - 탁아활동의 진단과 대안
- 지방자치제 재정강의 / 31
 - 예산과 우리 생활
- 아동음률교육 / 34
 - 유아를 위한 음률활동

제 9 회 정기총회.....41

- 제 8 회 정기총회 회의록 / 43
- 1993년도 활동보고 및 총평가 / 44
- 1993년도 중앙구조 및 행사평가 / 55
- 1993년도 지역활동 총평가서 / 83
- 1994년 활동전망 / 121
- 회칙개정안 / 124
- 신.구 지역대표자 명단 / 132
- 결의문 / 133
- 지탁연 활동일지 / 134
- 여성운동일지 / 142

부 록 / 별도 페이지 설정

- ♥ 준비를 위해 애쓰신 분들
- 겨울수련회 준비위원회: 조용란(동부지역대표) 전선경(인천) 김선자(북부)
임남희(안산) 정은진(봉천)
- 총회 준비위원회: 권금숙(성남) 이기원(수원) 김명신(구로) 최순옥(부천)
김연희(중부)
- 그 외에도 아동교육분과와 지역교사, 회장단, 사무국에서 애쓰셨습니다.

겨울 수련회 일정표

◆ 1월 3일 ◆

시 간	내 용	준 비 사 항
2:00-3:00	접수, 방배치, 짐정리	사무국 담당
3:00-4:30	개회식, 간단한지역인사 노래배우기	사회: 남미영부회장 노래배우기: 봉천지역
4:30-6:30	지장자치제 재정강의	강사: 곽해근씨, 사회: 전선경(인천대표)
6:30-7:30	저녁 식사	장소: 전산원 식당
7:30-10:30	조직강화를 위한 토론회 "타아소 활동의 진단과대안"	4개의주제에 각각 발제와 토론이 진행 전체사회: 이경희 (사무국장)
10:30 - 11:30	도래별 모임과 평가	주제: 내나이에 조직을 위해 할 수 있는일 (실천거리 10개 내오기)

1. 일정표에 따라 모임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2. 조는 지역별 토론과 나이별 모임이 있으며 방은 지역별로 이용합니다.
3. 시설물 사용에 있어서 깨끗하게 쓸 수 있도록 신경써 주세요.
4. 참석회원이 도중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역대표께서는 반드시 집행부에 알려 주
세요
5. 식사는 식권이 있어야 가능하며 방별로 나누어 드립니다.
6. 수련회 기간 중 이름표는 반드시 달고 다니시기 바라며, 자료집은 꼭 챙겨 가
고 다니세요.

◆ 1월 4일 ◆

시 간	내 용	준 비 사 항
	기 상	
7:00-8:00	세면, 체조	진행: 안경숙 (대구지역대표)
8:00-9:00	아 침 식 사	장소: 사회봉사관 식당
9:00-12:00	제8회 정기총회	준비: 총준위 사회: 최현숙 회장
12:00-1:00	점 심 식 사	장소: 전산원 식당
1:00-3:00	중점사업 보고회	준비: 총준위 진행: 정희연 (부회장)
3:00-6:00	아동 음률 교육	강사: 유연화씨 진행: 이연순(인천지역분과장)
6:00-7:00	저 녁 식 사	장소: 전산원식당
7:00-8:00	지역소개	사회: 김선자 (북부지역대표)
8:00-10:00	공동체 놀이 뒤틀어	진행자: 이준용 (서노협 문화부장)

◆ 1월 5일 ◆

시 간	내 용	준 비 사 항
-7:00	기 상	
7:00-8:00	세면, 체조	진행: 안경숙 (대구지역대표)
8:00-9:00	아침식사 및 짐정리	장소: 사회봉사관 식당
9:00-12:30	좋은부모, 좋은교사되기 훈련	강사: 오혜옥씨 사회: 조용만(동부지역대표)
12:30-1:30	지역별 총평가및 폐회식	사회: 정희연부회장

◆ 지역 아동분과에서 준비한 손유희는 프로그램 시작전에 한두가지씩 진행합니다.
 구로지역 : 조직 강화를 위한 토론회 전에 실시
 인천, 대전지역 : 정기총회전에 실시
 동부, 부산지역 : 중점사업보고회전에 실시
 수원, 군산지역 : 지역소개전에 실시
 안산지역 : 좋은부모, 좋은교사되기 훈련 강의전에 실시

중점사업보고회

93년 활동을 정리하며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자!

진행: 정희연(부회장)

올해는 경과조치 마감을 앞두고 중점사업으로 잡혀진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법개정 가시화의 중요 연결고리로서 지난해부터 지속되어온 지원요구 사업, 그리고 역시 작년부터 활발하게 진행된 및 지역에서의 민탁연대사업이 중요활동으로 설정되었는데 법개정사업, 지원요구사업, 민탁연대사업이 세영역은 각 시기마다 독립적이면서도 실제 내용상은 긴밀한 상호 연관관계 속에 놓여 있었다.

법개정영역에서의 국가와 보육의 공동책임이라는 중요과제 해결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로부터의 재정지원이라는 현실적 과제가 주어졌고 이를 실제로 확보하기 위한 영역으로서 민탁연대사업이 위치 지워지는 것이다.

법개정의 실현이라는 목표만을 놓고 보았을 때 그 목표의 달성은 실제 법조항을 바꿔내는 것일터이나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비중을 두었던 것은 우리의 지향이 담긴 공동보육의 목표를 널리 선전해내고 그 실질적 성과물로서 보육사업의 공공성을 정부나 시설운영자들로 하여금 깨닫을 수 있게하는 재정지원을 확보해 냈다는 것이었다. 연초에 우리팀으로 생산한 법개정안은 각계의 전문가 의견과 내부의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3월에 완성되었고 이후 4월의 공청회등을 거쳐 9월 국회에 법개정 청원서가 공식적으로 접수되었다.

4월 공청회 이후 민자당을 비롯, 민주당 보사위원, 영유아보육학회, 우리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 각종 선전매체 등 관련단체 및 여론매체를 통해 법개정의 정당성과 우리의 요구내용이 일정부분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업성과를 낳게 하였다. 또한 뒤에 별첨한 자료에서 보여지듯이 법개정사업의 가시적 성과인 모법의 개정은 현재 다소 어려운 상황에 있으나 실제 우리의 요구 사안인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이라는 측면은 정부와의 일련의 협상과정을 통해 확보 혹은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사업성과라 볼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그간 지탁연이 지향하는 바와 활동성과 및 내용이 보사부와 민간보육시설들에 널리 알려지고 인정받는 해였다. 연초 보사부의 보육사업 주무부서가 가정복지과에서 아동복지과로 바뀌면서 그 전과는 달리 상당히 유연한 태도로 나왔고 지탁연을 중심으로하는 민간보육시설의 상황에 많은 관심을 보여 보사부의 소관담회, 면담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연말에 민간, 가정보육시설에 교재교구비 일괄지급이라는 큰성과를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이해한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애초 내년도에 교재교구 및 관리운영비 항목으로 시설당 연간 380만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쌀문제등 긴급한 정치사안에 밀려 당장 내년에는 실현이 어려워지게 되었으나 95년에는 정기적인 재정지원의 단초가 마련된 점이 또하나의 성과라 할 수 있다.

지난 6월부터 준비에 들어간 전국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9월 '영유아보육시설의 실태와 보육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는 당초 계획보다 방대한 사업이 되기는 하였으나 별도 사례를 볼수 없는 전국실태조사라는 점, 아동보육료 지원등에 그간 우리의 연구내용과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한 보다 과학적인 요구내용 제시라는 점, 각종 민간보육시설들에 대한 현안들이 가감없이 드러났다는 점 등이 평가 받을 수 있는 측면이다.

또한 몇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탁연대사업은 내년 상반기중 공식적으로 단체 발족이 가능하게끔 준비가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준비작업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간식비와 교재교구비가 확보된 지역도 있어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민탁과의 연대과정에서 그간 지탁연의 활동내용들과 올해의 사업적 성과들이 일정부분 공유되면서 지탁연의 입지가 자연스럽게 확보된점은 또하나의 긍정적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올해 중점사업으로서 법개정사업과 그를 받쳐주는 두 축으로 설정된 지원요구사업, 민탁연대사업은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적 성과들이 내부적으로 공유가 덜 된점, 계획대로 과정대로, 결과대로 식으로 회원들에게 인식된 점등은 큰 실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93년을 기점으로 그간 3년여 동안 특별사업으로 법개정활동은 일단락을 짓게 된다. 이는 그간 법개정에 관련한 우리의 활동이 소중한 결과물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법개정사업을 벌여나가야 함을 의미하지만 그 형태나 방법은 달라 질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후 법개정 활동은 기존 우리의 법개정안을 필요시기에 따라 중앙단위에서 청원하는 일상적 사업 혹은 대중의 의지를 모아내야할 시기에 투쟁사업으로 조직해내는 두가지 방향이 있을수 있겠는데 일정기간 동안은 전자의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제도권 내에서의 우리 활동의 성과는 작년 아동보육료 지원을 확보한데 이어 올해 전 민간보육시설에 교재교구비 지원이라는 또하나의 가시적인 성과물을 획득하기에 이르러 이후에도 지속적인 민간 시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성과들을 토대로 내년에는 각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사업을 통해 해당지역에서의 다른 성과물 확보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여야 할 것이다.

	법 개 정	지 원 요 구	
		대 내	대 외
1월	↑ · 법 개정안 마련		
2월	내부합의		
3월	↓ · 이해찬의원 명단(1차) · 법 개정 청원서 소개키로		
4월	· 영유아 보육법 개정물 위한 공청회 개최	· 제청서 발송	
5월			
6월	· 민자당 법 개정제에 관한 소토론회 (보사부 입장변화)	· 실태조사 계획 ↑ · 실태조사 실시 ↓	· 아동복지과장 vs 위탁연호장 명단 (민간보육시설 상황에 대한 파악 요구)
7월		↑ · 요구내용 정리 ↓	· 보사부 주관 소간담회
8월			
9월	· 9/18 법 개정 청원서 접수 · 이해찬의원 명단(2차)	· '보육사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10월	· 부산 '제2회 영유아보육 발전을 위한 학술 심포지움' 에 토론자로 참석		
11월	· 영유아 보육학회에서 법 개정 문제 다룸 · 보사부에서 위탁연안에 대 한 입장 표명 (국회 상임위 제출용)		· 이해찬 의원, 보사부 관계자, 위탁연 민간보육시설 지원에 관한 명단
12월			교재, 교과비 지원

	민 간 략 아 소 연 대				
	안 산	과 로	부 천	성 동 구	인 천
1월					
2월		시민국강명단 '영아간호비지원'과			인천
3월	↑ 92년 시정계획 통해 국공대시설과 동일한 민간보육 시설에 간호비 지원 실시				민간보육 시설 연합회
4월			↑ 실태조사 및 간담회 ↓		자체 활동
5월	↓ 실태조사			↑ 실태조사 ↓	
6월	시의회 명단	가정복지과장명단 '영아간호비 지원요구'	↓ 준비		
7월	'안상지역 옥바라 보육정책을 위한 간담회'		· 부산시 민간보육시설 실태 및 보육정책 발전을 위한 간담 회 (94년부터 매년 가정보육시설에 교재교구비 지원확보)		
8월	민간보육시설 평교사모임 (개원)				
9월	1차 안산민보련 준비모임 시작				
10월			시의회와 시조례안 작업	성동구 사립 어린이집 가운 운동회	
11월			부산시 보육사업에 관한 시조례안 상정		
12월					

조직 강화를 위한 토론회 - 탁아활동의 진단과 대안 -

주 제

1. 평생 탁아사업을 위한 탁아교사의 조건
- 인천지역위원회
2. 현 자모조직을 진단하며
- 구로지역위원회
3. 재정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 안산지역위원회
4. 탁아소 운영에 관하여
- 부천지역위원회

* 이프로그램은 현재 여러탁아소에서 안고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

* 주제발제 뿐만아니라 토론까지 각각의 지역에서 준비하여 나뉘대로의 대안을 모색하고 토론회 이후에는 지역별로 내용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이 갖게 된다.

주제 발표 1.

평생 탁아사업을 위한 탁아교사의 조건

- “나는 탁아를 평생 할 수 있을까?”-

1. 문제제기

현재 지탁연 탁아소 수는 60여개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탁아소의 0.25%란 사실은 벌써 알사람은 다 안다. 3년 동안 매년 1/3씩 줄었다. 탁아소 수의 감소는 곧 교사수의 감소이다.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왜 탁아활동을 하는데 머리가 허언 선택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씩은 해 보았을 것이다. 그 이유는 “탁아”가 독자적인 부문운동으로 정립된지 얼마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다. 92년에 탁아운동론이 우리 내부에 의해 독자성을 갖는 운동으로 정립되기 전까지는 탁아활동은 많은 관련영역을 포함하는 운동이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다양한 부문운동에 두루 걸쳐지는 활동 이었다.

지금 우리들 중에 “나는 평생 탁아를 할꺼야”라고 마음 먹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옆에 있는 동료교사는 나와 평생 탁아를 같이 할 사람이야!”라고 느끼는 사람을 얼마나 있을까? 아니면 “탁아가 과연 평생활동 켜리가 될까?”라고 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탁아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교사다. 자모회의 역량으로 탁아활동력을 점치던 때는 이미 지났다. 지금은 탁아가 일반화 보편화 되면서 지역성, 보육대상, 보육료, 교사들의 동기등이 변화 되었다.

이 변화는 우리가 택한 것이다. 변화에 물리고 수용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탁아활동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로서 이변화에 뛰어들어 이것을 우리것으로 만들고 확산시켜야 한다.

그런데 교사들이 힘들어 하고있다. 몸도 지쳤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해오던 일과는 다른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우리가 해왔던 일들도 점점 자신이 없어간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잘될까?

2. 실태파악

수련회 시작전에 설문지를 근거로 요약

3. 해결방안

1) 운영의 정상화 = 경제적 자립

다른지역 발제로 대신함.

2) 근무조건의 혁신적 개선

연합회 내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조건 기준표"를 기준으로 하여 현실적인 근무여건을 조직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단, 특수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강제성과 관료적 요인도 배제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 영아보육교사: 1일 8시간

유아보육교사: 1일 9시간

2/ 보수

보육사업 지침서의 보수규정을 기초로 우리의 현실에 맞는 "임금 기준표"를 만들어야 한다.

예: 영아 보육교사는 수당을 지급한다. 등.....

3/ 휴가

토요일 - 격주 휴가

월차 - 1일

년가 - 1년이상 연속근무 경력자는 여름, 겨울 수련회와 방학을 제외하고 7일의 기본 휴가를 준다. 1년마다 1일씩 늘어남. 단, 연이어 3일 이상은 사용할 수 없다.

임신,출산 - 산전, 산후 60일의 유급휴가 줌, 이후 조건에 따라 무급 휴가를 연기할 수 있다.

* 임신, 출산, 병가로 인한 휴가중의 교사 보충은 임시교사를 "교육중심 교사"로 한다.

* 특강 교사를 발굴한다. 예: 유아체조, 아동미술, 피아노등

4/ 퇴직금

시설이 매월 15000, 교사가 매월 10000씩 적립한다. 30000씩

*정년퇴직 문제는 추후에 고민하자.

5/ 교사제충전의 기회를 위해 매월 일정액의 "교사 재교육비"를 확보, 적립하자.

6/ 회의를 과감하게 줄이자. 그리고 과학화해야 한다. - 정보 시대에 맞도록 컴퓨터의 모델을 각 어린이집에 설치하여 교사에게 시간을 주자.

<제안>

교사 발령제 (순환제)

1. 교사 발령제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어린이집을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제도로써 서울 동부지역의 교사들이 발령제의 초기단계인 '교사순환제'를 실시한 결과 교사들과 아동은 물론 부모들에게도 신선함을 주는 등 긍정적 평가가 나온데서 착안하여 가능한 지역 단위별로 시범적, 단계적 실시를 제안함.

2. 발령은 중앙에 "발령위원회"를 두고 이의 심의를 거쳐 지탁언 회장령으로 발령함.

발령시기는 3년 단위로 매년 3월 1일에 함.

발령처는 보통은 다른 어린이집이 될 수 있으며 본인의 적성과 조건에 따라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다.

예) 연구부, 사무국 등... 특수지역(신설, 경력교사 부재 등)은 3년이 넘을 수도 있음.

3. 충원되는 모든 신진교사는 발령위원회의 "소양교육"을 받고 수습기간없이 바로 근무한다.

예) 2월에 "신진교사 소양교육"을 실시한다. 후속 "기모임"으로 신진교사 모임을 상설화한다.

3)교사간의 갈등관계의 극복

사람이 모이는 곳은 어디나 갈등관계가 나타난다. 조건이 힘들다보니 '배려'도 한계를 느낀다고 생각할 지 모르나 그래도 타아주변에는 비교적 양질의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다.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다. 모든 관계를 멀리 바라보고 여유를 갖자.

※ '92년 중앙교사조직분과의 사업으로 "탁아소 교사의 갈등 유형"을 사례별로 모은 자료를 참고하기 바람.

"교사들간에 동료애는 어떻게 생기며 커가는 것인가?"

나와 함께 옆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동료나, 동료교사다. 우리는 모두 육아의 사회화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신념을 가지고 활동을 펼쳐나가는 동료들이다.

1/ 서로의 생각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자.

탁아운동론과 변화되는 탁아활동 방법론을 계속 학습하고 토론하면서 활동의 전망과 청사진을 함께 그리자. 그러면서 "평생동지"가 되기로 결의하자. 모든 문제를 '나', '그 선생', '우리 탁아소', '우리 지역'의 틀을 넘어서 연대의식을 가져야 한다. 부엌에서 세계가 보이듯이 모두의 것으로 받아들이자.

2/ 동료들 바로 알자.

교사간에 일상적인 대화를 많이 갖고 서로의 구석구석까지 알자. 많이 만나고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를 잡도록 항상 생각하자. 성장과정, 가족관계, 친구관계, 종교, 철학, 건강, 취미, 특기, 왜 탁아를 하는지, 등... 모든 것을 알자.

3/ 서로의 어려움일랑 개별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조직적, 집단적으로 해결하자.

작은 일도 음모적으로 풀려는 태도를 버리고 객관화, 공개화 시키자.

4/ 자기 일을 하면서도 동료교사의 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키우자.

근무시간에 없애이기 보다는 근무시간외에 언제라도 일을 찾아 사생활을 양보할 수 있는 자세를 갖자.

5/ 동료교사의 잘못된 점은 무조건 덮어 두거나 욕만 하지 말고 고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는 그것을 고칠 수 있다고 믿고 계속 포기하지 말자.

6/ 동료교사가 부족해도 할 일을 주고 넉넉한 자세로 기다리며 나의 주장만 내세우지 말자.

7/ 활동선배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과 후배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하자.

사업의 발전은 동료에게 돌리고 부족함은 스스로에게서 찾아나가자.

8/ 서로의 발전을 위해 자신이 듣고 아는 것은 모두 전수하고 계승하도록 노

력하자.

9/ 동료의 비판과 충고를 듣고 자학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자.

남이 알아주기 위해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 묵묵히 일하자.

10/ 동료의 건강에 대해 내가 먼저 신경쓰고 배려하자.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다.

4) 조직 강화

조직적 사고, 책임감, 신진교육, 재교육 강화, 조직관리 등.

→ 육아의 사회화를 폭넓게 실현하자

제안) 비밀의 민간탁아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참담하"

토론자 발표내용 : 메모를 하세요

*경제적인문제 <

복지자주권 - 유가제

근무시간외

육아수당 - 현행제

교사간담 - 신규교사

아동교육문제

교사간담 - 정액인정

- 아동교육에 대한 전문성

정액인정

- 아동교육에 대한 전문성

정액인정

- 아동교육에 대한 전문성

정액인정

- 아동교육에 대한 전문성

정액인정

- 아동교육에 대한 전문성

정액인정

주제 2

현 자모조직을 진단하며

1. 서론

우리가 탁아활동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심적인 대상인 동시에 주체였던 부분은 바로 자모들이었다.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들의 활동을 지속시키고 유지, 강화시킨 것도 바로 자모들이며 사실상 탁아운동의 하나의 동력으로 평가하는 것이 옳바를 것이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탁아소의 자모는 자모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권위와 권리를 갖게 되었고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면 그만이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처음 탁아활동을 시작하였을때 자모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절절해 보도록하자, 탁아소라는 활동의 공간이 아동과 교사, 자모로 구성되었고 교사들은 자모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함으로 아동의 문제를 보다 빨리 해결하고 올바르게 교육할 수 있다는 일차적 목적과 함께, 자모들이 경제적 자립력을 가지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주체적인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활동을 지지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육아의 사회화를 실현하는데 함께하기 위함을 포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점검하면서 93년도 지탁연 사업속에서 자모회와 자모조직을 점검해 보도록 하자.

2. 본론

(1) 자모회의 진단과 대안

각 단위의 자모회 또는 부모회는 한달에 한번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나름대로의 계획안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자모회를 하기전에 임원들과 책임교사가 결합하여 자모회를 준비하는 임원회의가 있으며, 자모회의 사업으로는 계획되는 프로그램진행과 수익사업 논의, 탁아소 운영에 대한 논의와 점검, 기타 소모임에 대한 논의, 행사준비들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와 함께 자모 또래들끼리 혹은

원하는 자모들이 함께하는 독서토론회, 강습회들이 있고 탁아소 소식지를 함께 만드는 소식지모임 등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자모회가 점점 힘을 갖지 못하고 자모들의 참여도나 관심도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또한 신입자모뿐만 아니라 오래된 자모들까지 탁아소에 대한 적극성이 적어지고 있고 자모회의 필요성마저 제고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전체적인 자모회의 내용과 형식 점검하여야 한다.

자모회의 내용은 낮은 친목도모나 경조사에서 부터 실천활동까지 포괄적인 내용을 잡아야 하는데 교사를 중심으로 목적성만을 강조하는 내용은 많이하게 되었고, 또한 교사의 준비부족으로 내용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계획성 있고 준비된 내용보다는 일회적이고 무계획적인 내용도 많이 있기도 하였다. 준비된 내용일지라도 자모들의 요구하는 내용보다는 시기에 따른, 혹은 우리교사들의 필요에 의한 내용이 있기도 하였다. 예를들어 무공해 비누 만들기를 하였을때 자모들의 반응이 좋았던것은 생활속에서도 자모들의 요구도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탁아법개정이든지 지자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시기적으로 이러한 교육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교육이 일회적으로 끝나버리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즉 교사들의 조직방식과 내용이 지속적이고 대안 중심적이어야 한다. 또한 자모회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과학적인 평가를 함으로 일회성을 극복하여 한다. 새로운 자모들이 각 탁아소에 많이 들어왔는데 새로운 자모들은 예전의 자모보다 여러가지 차이점이 보인다. 일단은 학력이 높아졌고 그에따라 자아의식이 강함으로 요구가 많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자모들에게 예전의 자모회의 내용만을 강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변화된 자모들의 요구들을 적극적으로 받아안으면서 교사들이 미리 준비하여야 하고, 오래된 자모들일지라도 계속적인 새로운 내용을 공급하여야 한다.

임원회의도 임원들이 중심되어 자모회 사전준비를 하고 실질적으로 임원회의를 통하여 임원들이 단련되고 자모회를 꾸려나가는 지도력을 갖게하여 자모회가 자모들의 자주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자모회준비와 마찬가지로 임원회도 교사중심적으로 진행되기때문에 어쩌면 임원들이 교사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더 많아지기도 한다. 임원회가 임원들이 단련되는 보다 적극적인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위에서 말했듯이 자모회와 함께 각 탁아소에서는 작은 단위의 소모임들이 있

는데 이러한 소모임을 자모조직으로 바라보기는 하였으나 자모조직으로 이끌어내는 많은 한계들이 있었다. 교사들이 일상에 매여서 다른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었다는 한계성과 자모들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조직적 대안을 만들어 내지 못하였다. 이러한 오류로 인하여 소모임은 1차조직으로의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하여 다른 부분의 조직화 방도가 모색되어야 한다. 즉, 자모회와 소모임이라는 1차조직과 지역의 부인조직의 2차조직의 선을 명확히 그을 필요가 있다. 1차조직인 자모회는 단위내의 자모들의 요구부분과 시기적으로 필요한 교육부분을 적절히 배합하면서 모든 자모들이 자모회를 통하여 단련되고 준비되는 선진자모들을 모아 소모임 내지는 지역제의 관심있는 분야를 함께 하는 부인조직으로의 전망을 가져야 한다. 예로 구로지역은 구탁위 자모들을 대상으로 몇차례의 주부대학을 개최하였고 주부대학에 참여했던 자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조사한 결과 지역내의 공동소모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자모들이 대다수 있었다.

(2) 공동운영

지탁원이 공동운영을 하게된 배경은 비영리로 만들어지면서 탁아소가 누구의 소유도 아닌 탁아소 구성원들의 것이었고 자모와 교사들을 탁아활동과 탁아소운영의 주체로 바라보았고 실제로 우리들이 비영리로 운영하였음으로 공동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운영이 힘든것이 사실이다. 공동운영이 중요한것 중 하나가 재정공개인데 재정공개를 함으로 인하여 탁아소 자모들이 탁아소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는 수익사업에 적극적일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수익사업을 매꾸기위한 것으로 사고해서는 안될 것이다. 실지로 수익사업을 통하여 자모들이 공동의 주체로 탁아소활동에 구체적인 실천꺼리로 참여하는 계기이기도 하며 수익사업을 통하여 자모들을 단련하면서 조직화하는 방도이기도 한것이다.이러하기 위해서는 수익사업도 자모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보다는 편하게 참여하면서 공동운영을 하고 있다는 참여감을 갖게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더 좋은 방도는 재정의 자립도를 높임으로 공동운영의 참여감을 교육과 같은 다른것으로 채워가는 것이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수익사업을 정기적인 탁아소 사업으로 시기를 정하여 무리없이 한다든지, 아예 보육료를 표준보육단가대로

받는다든지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것이다.

공동운영에서 재정을 공개하든, 수익사업을 하든 보다 중요한것은 바로 탁아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자모 교사간이 민주적인 논의와 토론속에서 탁아소 운영 전반에 대한 고민과 해결을 함께 해나가는 것과 그 해결의 방도들을 자모들이 자주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3) 일반적인 현상

주위에 탁아소들이 많이 생김으로 인하여 자모들이 탁아소를 선택하는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어졌고 생활형편이 좋아지면서 좋은 환경과 시설을 선호하게 되었다. 또한 학력이 높아짐으로 하여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데 대부분 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위의 내용의 반영으로 자의식이 강해지고 있다. KJc

이러한 것은 자모들이 권리부분이 강해지면서 탁아소에서 자기의 지위와 위치들을 타산하면서 작은부분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교육을 했는지의 점검부터, 교육의 내용과 형식, 놀이감의 정도와 수준, 교사들의 차림새, 교사들의 말투, 자기 아이의 관심도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모들의 관심이 작은 부분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과 권리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모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라도 아동교육의 내용을 강화하고 우리들만의 아동철학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자모들은 누구나가 아동에 일차적인 관심이 있기때문에 아동교육의 내용으로 접근한다면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이후에는 아동교육이 탁아소 선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것이다.

4. 결론

앞의 문제제기들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많은 성과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탁아소 운영과 탁아활동에 힘들면서도 자모회를 꾸렸고 진행했다는 것, 자모들과 함께 거리거리를 다니면서 탁아소 상황에 대한 것을 알렸고 비록 비현실적이기는 하지만 자모들과 함께 탁아법제정을 이끌어 내었으며, 지원요구싸움을 함께 하였고, 많은 행사들에 참여하여 우리들의 세를 과시화하고 확대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역내에서 재정상태는 힘들지만 일정부분 신뢰를 받고

있고, 지역내에서 관심도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성과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성실성도 있었겠지만 자모들의 적극성이 더욱 큰 힘이 되었다. 교사들이 자의적으로 자모들을 판단하고 혼자 걸론내리는 조급성이나 자모들의 변화된 부분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고 편향되게 파악함으로 자모들의 긍정성이나 장점들을 축소시키는 일들은 없어야 할 것이다. 교사들 먼저 올바른 시각으로 자모들을 대한다면 예전의 성과보다 더 많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활동가다운 품성들을 키우는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토론자 내용을 메모하세요.

동부 - 교사중심자문회

변화된 상황에 쫓김

부담 증가 → 조기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
정확한 파악 변화 → 본회에서 전문교육
- 양성교육으로 변화 / 수월자 선택의 폭이 넓어진 변화

자문회의 내용

교육내용 → 복습대리인 / 주재임 / 자문인 / 아동교육 / 전문성이 향상되어야 한다.
수업내용 → 이물질기동 위한 화상수업
동료연령 → 자기의 공동대변, 자해자살의 강박관념을 깨달음
특이회 → 94년도 내내 독대대변 교육재료가 없어야 한다.

주제발표 3

재정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1. 지탁연 탁아소의 현재의 재정과 원인

탁아소의 재정은 매달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그 원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지출항목에 비해 수입이 너무나 적어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일 것이다.

이는 우리 운영체계의 가장 커다란 전제가 되고 있는 보육료와 그외의 수입으로는 운영비 전부를 충당할 수 없다는 상황과 탁아소 자체의 재정기반이 출발부터 취약했고 벗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우리는 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계속 노력해왔으나 그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열악하기만한 재정과 적자를 감수해야만 하는 원인은 어디서 기인하는가?

첫째, '비영리 탁아소'에 대한 정확한 개념의 합의가 필요하다.

비영리가 낮은 보육료로 운영되고 있는 탁아소로 인식되고 있고 그에 따른 여러가지 발생하는 문제들은 교사의 희생과 몇번의 수익사업으로 마무리하는 우리의 현실이 진정 비영리는 아닐것이다.

'비영리'란 발생한 소들이 교사와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 그리고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재투자에 쓰여지는 탁아소를 의미한다는 정의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두번째, 수입이 일괄적으로 수납되지 않음으로써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출을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1년 예산을 책정하고 계획적으로 지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고 한달치 수입지출도 예견하지 못하는 상황은 우리의 재정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한다.

세번째, 재정문제에 대한 사고방식의 문제이다.

보육료를 올리는 것도 거의 매년있는 언레적인 것이지만 만성적자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수익사업도 재투자이기 보다는 만성적자로 출혈이 큰 재정적자를 매꾸는 상황이다.

후원 또한 재정에는 미비한 도움이 될 뿐이다.

정부의 지원확대도 서서히 이루어 지고는 있지만 당장의 문제해결에는 막막할 뿐이다. 이제 우리의 재정은 운영자(교사)들의 뼈를 깎는 희생만으로는 건널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그렇다면 우리의 활동을 살려내고 시대가 요구하는 탁아소로 공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은 최소부담, 교사의 최대희생의 현상은 이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2. 재원을 이루는 것에 대한 고민

(1) 보육료

탁아소에서 수납하고 있는 보육료는 전체 운영비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싼 보육료”이다.

다른시설에 비해서 싼 보육료는 먼저 교사의 낮은 인건비에 의존한다. 이것은 교사의 처우문제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문제의 파급효과는 실로 막중하다. 교사들의 적은 보수, 과다한 노동으로 교육의 질은 낮아지고, 부모들이 열악한 교육환경이나 교사들의 지친 모습에서 보육의 질을 의심하게 될 수도 있는 문제이다.

또한 과거에 비해 부모들의 수입증가와 생활수준향상으로 보육료의 부담이 거의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저 생활비에도 못미치는 교사의 임금은 또다른 피해의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

두번째로 부모들의 문제이다.

‘비영리=싼 보육료’의 등식이 성립되고 수혜자가 당연히 요구해야 할 문제제기마저 하지 못하고 탁아소의 발전을 함께 고민하기 보다는 묵묵히 다니다가 형편이 좋아지면 시설 좋은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생각이 많다.

또한 보육료가 가정경제에 그리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정부와의 지원 투쟁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 싼 보육료의 패해라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자부당분이 높으면 실질적인 싸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가정은 허황된 것만은 아닐 것이다.

세번째로, 민택연대에 있어서 낮은 보육료 때문에 좀더 정확히 표현하면 “비영리 탁아소”라는 개념의 모호성(?) 때문에 나타나는 혼선이다. 심하게는 “싼게 비지떡”이라는 다른 탁아소의 반감까지 야기 되었고 정부의 민간시설 지원기준을 “국공립 시설과 동등한 보육료”를 받고 있는 민간 시설로 책정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해준꼴이 되고야 말았다. 이제는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게된 보육료에 대한 개방적 아니 파격적인 접근이 필요할 때이다.

(2) 지원금 사용

대부분의 탁아소에서 지원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시설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모들의 변동, 지원 싸움의 시기적 경과에 따른 대상아동, 부모들의 지원금의 쟁취과정이나 그 지원선의 허구등이 잘 이해가 안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적어도 아동지원금에 한해서는 해당아동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과정상의 융통성은 존재해야 한다. 낮은 지원선으로 인한 해당아동이 줄어들어 가고 있는 현상이나 일괄적인 적용으로 자녀수, 주거형태들이 고려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여 지원금을 시설에서 융통적으로 분배하는 것도 중간 단계에서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용자모들에 대한 지원투쟁의 과정과 성과의 공유는 반드시 필요하고 올바른 지원선 확보 및 시설지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작업을 게을리 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안정된 재정지원의 확보는 탁아소를 존폐의 위기에서 건져낼 가장 중요한 발출임을 잊지 말자.

(3) 후원

후원은 비영리임을 내외적으로 인식하는데 중요한 고리이다. 그리고 국가와 더불어 공동양육, 육아의 사회화의 망아적 형태로 민간의 후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의 재정상 도움은 되고 있지만 중요한 해결방법은 아니다. 그러나 후원을 활동 공유의 형태로 잘 활용한다면 우리의 이념은 더욱 널리 퍼져나갈 것이다.

앞으로의 활동영역이 지역중심으로 될 것을 감안하여 많은 지역 후원의 확보

는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4) 수익사업

비영리 탁아소의 재정확보 방법중에서 가장 단시일에 많은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공간의 중요성, 자모간의 단결력등 여러가지 부분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주 사안이 절박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극약처방이다. 주로 전세금 마련, 이사기금마련, 운영비 마련으로 진행되고 그 형태도 요즈음은 매우 다양하다.

수익사업의 가장 큰 단점은 부모나 교사가 갖는 엄청난 부담이다. 일정한 금액을 채워야 하고 아쉬운 소리하기 싫은 부모는 정해진 금액을 때꾸어야 하는 부담, 준비과정에서 받는 과중한 일의 부담은 수익사업 이후에는 풀린 긴장과 더불어 건강과 허탈감마저 안겨준다.

수익사업의 장단점이 이렇게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어찌해야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을까의 고민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일단, 일상적인 재원으로 수익금을 처리하기에는 그 희생이 너무 크다. 그러므로 재정적자를 위한 수익사업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자. 그렇다면 부모들의 주인의식 함양이나, 자모 조직화의 유의미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이것은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담없는 차원의 수익사업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쫓겨나기 직전의 탁아소를 구하기 위한 절박한 수익사업보다는 지역주민과 함께 기쁘게 탁아소의 발전기금도 마련하고 문화적인 여유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수익사업에 대한 인식이 요구될 수 있다.

3. 결론에 대신하며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돈의 의미는 엄청나다. 그 뜻이 아무리 좋아도 돈이 없다면 그저 좋은 뜻만 되지 좋은 활동으로 인한 성과는 없을 지도 모른다. 아이들을 좀더 잘 보기 위해서, 자모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재원의 확보이다.

우리를 항상 따라다니는 1.탁아소의 재정기반의 취약 2. 현재의 운영상태로

는 더 이상 곤란하다는 전제는 우리에게 파격적인 개편을 요구한다.

그 대안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육료의 현실화를 이야기하고 싶다. 부모들의 생활수준도 지난 23년간 많이 향상되었다. 그러므로 보다 좋은 시설을 선호하고 시설이나 보육의 환경(교사포함)이 양호하다면 적절한 보육료는 지불해야 한다는 의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부모수입에 대한 적절한 보육료가 정해져야 하고 시설은 부모의 요구에 부응하는 시설로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육료를 현실화하여 지금보다 높았을때 수혜자의 부담을 줄여 나가는 것으로 수혜자와 더불어 정책적 요구들을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시설에서는 보육료를 부과할때 아동연령, 가족수, 주거형태, 수입등이 고려되 모범적인 차등보육료 제도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보육료가 현실화 되었을때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먼저 부모의 소극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모회나 기타 행사에의 참여권유가 거부될 수도 있고 부모의 적극적 관심이 간접으로 개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황금만능적인 사고도 부모사업의 껍질함을 안겨 줄 수도 있다. 하지만 부모의 요구들을 잘 받아내어 자모사업등도 변화를 주어야 하고 올바른 부모교육의 형태도 고민하여야 한다.

둘째, 보육료가 전에 없이 많은 폭으로 올랐을때 대상부모의 변화가 야기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점을 감안하여 현실화의 폭이 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상전에 자모회에서의 충분한 제용적 합의는 중요한 사전 사업이 될 것이다.

셋째, 표준보육단가에 근거한다면 보육료 수준에서 다른 민탁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민탁과의 차이는 보육료의 차이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탁아소의 재정이 시설과 아동에게 고스란히 제투자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비영리의 개념이 확산되어야 하며, 시설이 사회로 환원되어야 할 복지시설임을 인식해야 하고 개인의 소유물로서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모범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외에도 후원자 관리등 여러가지의 문제들이 나타나겠지만 중요한 수입원이

보육료인 만큼 보육료의 현실화는 문제해결의 관건이 된다는 생각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수입이 적으면 유능한 교사를 잃게 되고 아동과 탁아운동 모두에게 피해가 된다는 점, 질 좋은 보육서비스에 적은 수입은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 작은 공간과 작은 수입으로 소수의 가정애 우리의 뜻을 펼치기에는 우리의 결의와 각오 희생이 너무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이다.

☞ 토론자 내용을 메모하세요.

1. 아동보육제 - 주관적 판단이 어려움
2. 수익사업 - 불가능에 많은 재해석
건강, 환경을 위한 보육 사업
방앗간 체인점처럼
3. 보육료 인상
4. 고위(4) (현상)
5. 후원

주제발표 4

탁아소 운영에 관하여

1. 지탁연 탁아소 운영의 원칙

1) 진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탁연 소속 탁아소는 그간에 성과를 계속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진보적으로 성장하는 탁아소로 나아가기 위하여 운영을 획기적으로 쇄신해야 할 시기에 봉착했다.

2) 우리는 그간 육아의 사회화라는 대의에 입각하여 국가가 보육사업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당위하에 탁아법 제, 개정작업과 지원확보 작업을 벌여왔다. 우리는 앞으로도 물론 이 작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3) '육아의 사회화'가 전면화되기까지는 국,공립시설과 민간시설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 민간시설이 공공성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가 지금 현단계에서는 육아의 사회화에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민탁연대사업은 이러한 맥락에서 지탁연의 주요한 사업과제로 제기되었고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해왔다.

4) 지탁연 소속 탁아소는 민간시설이라는 입지하에 민간시설의 성격을 주도해야 하는 역할을 다해내기 위해서도 자기 근거지인 탁아소를 모범적으로 탁아소 운영을 해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타민간시설에 비해 시설이나 운영면에서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

5) 이제 우리는 시설이나 전반적인 운영의 면에서 지탁연 탁아소를 정상궤도로 올려 놓아야 하는 당면 과제를 '비영리탁아소'라는 원칙을 잃지 않는 선상에서 잘 해결해야 한다.

6) '비영리탁아소'란 흑자를 내면서 이부분을 계속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며 더 많은 아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진보적으로 성장하는 탁아소가 되어야 하겠다.

7) 또한 보육의 질을 높여내기 위한 교육적 내용을 생산하고 보급함으로써 보육환경개선과 더불어 보육의 내용을 충실히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포괄적 의미

의 보육환경이라는 측면에서 교사, 부모(가정), 지역사회를 바라보아야겠다.

2. 탁아소의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들과 극복방안

(1) 시설규모와 적합성 여부

현재 지탁연 탁아소는 3,4명의 보육교사가 15~30명의 아동을 15~30평 정도의 시설에서 보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것이 적절한가를 시설규모와 보육아동수, 교사수가 적절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래서 운영수지가 일정하게 흑자를 낼 수 있는 '규모'를 산출함으로써 검토해 보아야 한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운영규정에 비추어서 몇가지 경우로 나누어 적정규모를 산출해 보고자 한다.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보육료는 표준보육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지출도 표준보육단가 산출근거로 제시된 수치를 사용하겠다.

예1: 교사2인, 보육아동수 22명 (영아7, 유아15), 최소 18평

수입: 영아 7 x 14만 8천원 = 1,036,000원

유아 15 x 10만원 = 1,500,000원

합계 2,536,000원

지출: 인건비 40만원 x 2 = 800,000원

급식비 584,000원

(주식비: $380 \times 22 \times 25 = 209,000$, 간식비: $500 \times 22 \times 25 = 275,000$ 원)

교재교구비 $2,000 \times 22 = 44,000$ 원

시설관리비: 난방비- $1,200 \times 22 \times 180 \div 12 = 396,000$ 원

공공요금- $11,864 \times 22 \div 12 = 21,750$ 원

수용경비- $19296 \times 22 \div 12 = 35,376$ 원

합계 1,781,126원

수입 - 지출 = $2,536,000 - 1,781,126 = 754,874$

* 위의 차액은 건물유지비 및 기타 경지를 제외한 것임

예2: 교사수 3명, 아동수 37명 (영아7, 유아30), 30명

수입: 4,036,000

지출: 3,150,076

수입 - 지출 = 885,924원

예3: 교사수 4명, 아동수 44명 (영아 14명 유아30명), 36명

취사부 1명추가

수입: 5,072,000원

지출: 3,862,252원 (취사부 인건비 300,000원포함)

수입 - 지출 = 1,209,748원

예4: 교사수 5명 아동수 59명 47평

취사부1명

관리인 1명

수입: 6,572,000원

지출: 5,231,203원

수입 - 지출 = 1,340,797원

이상에서 본 몇가지 경우를 살펴보면 대체로 규모가 커질수록 흑자분은 약간씩 상승하지만, 건물유지비가 많이 드는 만큼 운영수지면에 적정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는 각 지역이나 탁아소에 조건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일이다.

(2) 시설규모 확대를 위한 자본 구성방안

1) 시설을 통합하는 방안

- 각각의 시설 공히 교사들의 공동운영체제인 경우, 그래서 교사들이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진다면 구성원의 합의하에 가능한 방안

장점: 사업규모가 커지고 사업주체와 대상이 일원화되면서 개별로 운영될때

보다 이전 지역위원회에서 개별단위 탁아소가 만나서 사업하는 것보다 통합력이 강해진다.

단점: 어쨌든 별개로 운영되던 체제가 통합되는 만큼 구성원의 결속력이 다져지기까지 어려움이 많을터이고 차량운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부분 이전에 다니는 아이들이 떨어져 나가고 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2) 교사들이 공동출자를 해서 자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 교사들의 저축분이라든지, 개별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일정액의 자본분담금을 책임지고 확보하는 방안

장점: 어렵더라도 이렇게만 된다면 이전에 사업의 축적분과 더불어 더 큰 효과를 바랄 수 있는 발전적인 대안이다. 또한 교사들이 자기 출자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부 운영과 경영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게 된다.

단점: 교사이동이 있을 경우, 출자를 할 수 있는 교사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3) 외부후원 내지 독지가를 확보하는 경우

- 이미 일부지역에서 이런 사례를 발견할 수 있고, 소규모 후원금을 대량으로 모집해서 탁아소를 설립한 선례도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사람을 찾는다면 가능할 수 있겠다.

장점: 뜻있는 돈, 사람을 보육사업에 적극적으로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보육사업 저변을 넓혀갈 수 있다.

단점: 후원자 내지는 기부자를 운영체계에 적극적으로 결합시키지 못하면 탁아소 존립의 위협이 생긴다.

4)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방안

복지사업이 확대일로에 있는 만큼 신축된 복지관등에 팀으로 들어가 운영권을 쥐고 사업하는 방안

(3) 시설환경개선 및 교육환경개선 방안

민간시설 지원금 300만원을 심분활용하여 시급히 개선을 요하는 시설, 교육환경에 투자하면 어느정도 열악함을 만회할 수 있겠다.

(4) 공동운영체계의 문제점과 대안

현재 지탁언 탁아소는 대체로 교사들의 공동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운영이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 명확한 책임성이 없다. 보다 명확한 직급체제를 갖추고 책임과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실제 운영상에서 만성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교사가 인건비를 적게 타간다는지 수익사업을 벌인다는지 하는 소극적인 사후대책이 있을뿐, 운영의 타개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자세는 찾아보기 어렵다.

전반적인 운영의 책임자와 아동교육의 책임자를 두 축으로 내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인선과정에서부터 철저히 이루어져야만, 지역, 중앙 단위에서의 계통성도 확고해 질수 있다.

(5)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

1) 현재 지탁언 소속 탁아소 아동교육의 현황을 진단해보면, 내용과 이념면에서 앞서가고 있으나 프로그램운용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뒤떨어지는 면이 있다. 아동교육책임 교사제를 실시하여 개별, 지역단위에서 시설운영체제와 더불어 아동교육체제의 위상을 높이고 중앙과 지역간에 아동교육체제의 계통을 철저하게 확립해야겠다.

2) 중앙단위에서 이런 계통을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교육내용(프로그램화원)을 생산하여 실용화된 형태로, 제작 보급하자.

(6) 재정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

1) 보육료를 일정정도 정상화(실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타민간시설과 약간의 차등은 두어야겠다 - 표준보육단가의 90%를 제시하는 사람도 있다)하되 과도기를 설정하여 그 필요성을 자모들에게 충분히 설득하고 예산자료등을 근거로 제시해야겠다. 또한 내부에서부터 차등 보육료제(아동보육료 지원대상자와 일반 아동, 재부지침 마련)를 실시하여 시설과 부모 공히 보육료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한다.

2) 중앙과 지역의 재정사업을 통합하여, 재정국과 시설운영체제의 책임자를 주축으로 재정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는 것도 검토해볼 일이다. 물론 재정사업의

목적과 용도, 분배원칙등은 명확히 해야겠다. 혹자는 현재 지탁연 탁아소들에 탁아소 업무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잉여인력을 활용하여 지역운동을 벌이는데 있어서도 수익사업의 지향을 갖고 사업해야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특히 지역위원회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 사람이 제시하는 사업 영역으로는 육아용품, 아동용품판매점 등 탁아소의 특성과 연관될 것이다.

(7) 입소대상

현재 입소대상이 이미 확대되어 있는데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를 1차적인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일정 비율을 내부에서 정하여 성격이 흐려지는 일리 없도록 해야겠다.

(8) 총괄

탁아소의 표준모델을 정립하려는 시도가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시설규모, 환경, 보육료, 입소대상, 운영원칙, 교육등의 면에서) 모델을 정립하고 적용해보는 과정을 거쳐 이를 확산해 내야겠다.

토론자 내용을 메모하세요. [A]

광주광역시

현장 - 영산강
관내공동체/기타
현장에 속

지방자치제 제정 강의

예산과 우리생활

강사: 박해근씨 (제정구의원 보좌관)

1. 예산이란 무엇인가?

(1) 역사적 성격

“민주국가에서, 국민은 자기수준에 걸맞는 정부만 가질 수 있다.”

미국 민주주의 혁명의 제 일 슬로건이 바로 '대표없이는 조세없다 (without representative, NO TAX)'가 아니었는가? 역사적으로 볼때 예산제도의 성립 자체가 바로 민주주의 제도의 성립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1688년 명예혁명 직 후 영국 의회는 국왕으로부터 조세동의권을 확보하고 18세기 들어와서는 다시 예산의 지출도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세기 들어와서는 의회가 의결한 목적에 소정의 예산을 정확하게 지출하는가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국민과 의회의 가장 큰 관심을 예산지출에 있어서 부정을 막는 일 이었다.

* 국회의 고유업무: 법률제정 개폐권, 예산안 심의 의결권, 국정감사 및 조사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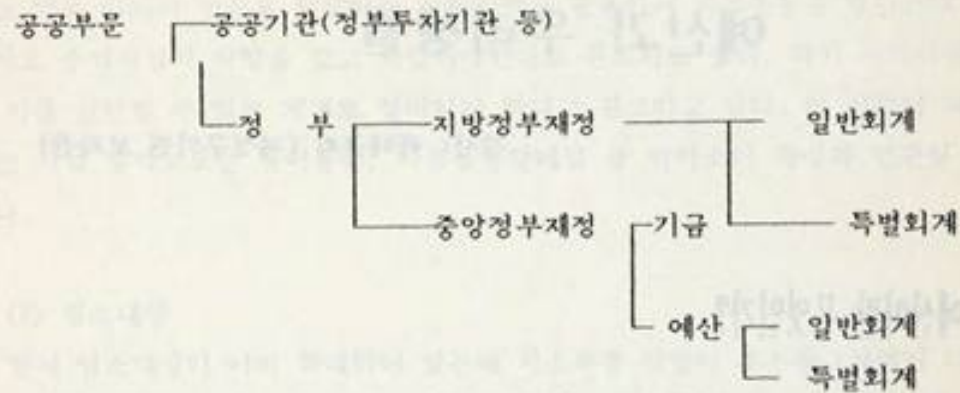
(2) 기능적 성격

예산은 일체의 가식과 군더더기를 뺀 국가활동의 실체이다.

예산은 사회문제 해결의 방식

예산과정은 정치과정에 의해 지배되고 영향받는다.

※ 예산의 구조



<1> 지방정부 일반회계의 내용

1) 세입 -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양여금

0 지방교부세: 내국세의 13.27%를 재원으로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많이주고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적게 또는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재정의 형평화 기능을 담당한다.

구체적인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일반재원으로 제공, 17.3%

91년 지방재정자립도 평균 69.6%: 서울특별시 98.8%, 직할시 89.1%

시 74.7%, 도 51.6%, 자치구 51.2%, 군 29.35%

0 보조금: 구체적인 사업용도를 지정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사업진행, 상당수준의 지방비가 함께 부담, 9.0%

0 지방양여금: 91년부터 시행, 국세의 일정세목(토지초과이득세, 주세, 전화세)을 국가가 일괄적으로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잉여하는 제도, 2.8%

91년도에 도로정비사업.

92년도에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 보조금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지방양여금이 차지하는 역할이 증가한다.

2) 세출 - 지역개발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 등

<2> 지방정부 특별회계의 내용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지역개발기금사업, 통합공과금사업, 의료원사업, 도시개발공사, 서울지하철공사.

2. 지방예산편성과 심의 과정

(1) 행정부 내에서의 과정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하는 결정체계 (시장, 국장, 구청장, 군수)

* 중앙정부는 경제기획원 예산실 중심

"쓸데없이 예산을 많이 획득해 봐야 할 일만 많아질 뿐이다."

예산편성에 반영할 시민의 의견을 반회보를 통하여 제공받고자 하였으나 거의 없었다. (시민의 무관심) 구청장이 동을 순시하면서 들은 주민들의 요구사항

11월 중순 경 시예산제안 보고대회 - 시장, 부시장, 각 국실장, 예산실무자

각 국별로 우선순위 표시하여 제출.

12월초 구예산제안 보고대회 - 시장, 부시장, 구청장, 기획감사실장

(2) 의회에서의 과정

12.2일 의회에 예산안 보고 12월 5일 - 12월 20일 예산심의.

광역의원의 45.7% 기초의원의 32.8%가 관변단체 출신이다.

* 한번 예산을 따는 것이 중요하다, 공무원은 적극성이 없으므로 아이디어는 우리가 내야한다.

* 기업이 직장보육시설설치에 투자한 비용의 10%에 대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 등 기업체의 참여 유도위한 방안 강구.

유다기업 - 본세 감면 혜택
유타기업의 세액공제는: 현재 감제 되고 있는 세액이다

3. 지방행정

지방정부는 단순집행적인 성질의 사무만 수행, 중앙정부는 기획조정만 하기 때문에 실태 잘 모른다.

보건사회부 가정복지국 아동복지과

시도 가정복지국 가정복지과 아동계

구청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계: 아동복지시설 및 육아시설 지도 감독 운영 지원

	이 좀 더 확실해지며 레코드나 리듬 악기에 흥미를 보인다.
3년 ~ 4년	음성 조절을 잘 하게 되고, 리듬적인 반응과 동요를 부르게 된다. 노래에 맞는 창의적인 극화 활동도 가능하다. 음의 크다 - 부드럽다, 빠르다 - 느리다와 같은 기본 개념을 알게 된다.
4년 ~ 5년	정확한 리듬과 높낮이를 조절하면서 기억력을 통해 노래 전체를 부르게 된다. 높낮이와 짧고 긴 음의 개념을 형성한다. 레코드판 감상을 잘 유도하면 오래 집중할 수 있다. 5세에 평균 10개의 다른 음들을 노래할 수 있다.

4. 음률활동의 내용

1) 듣기

듣기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경험은 소리의 탐색이다.

듣기기술발달의 초기에서 유아는 자신의 몸이나 주변의 물체를 두드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서로 다른 소리를 알게 된다. 그러므로 교사는 유아에게 소리나는 여러가지 물체를 가지고 실험해 볼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 녹음된 음악과 함께 생동감 있는 실제 연주를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계획한다.

교사는 들도록 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야 하며, 곡은 2~3분 이상 지속되지 않는 비교적 짧은 곡을 선택하도록 한다. 또한 유아의 활동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배경음악을 자주 경험하게 한다.

*교수방법

① 여러가지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음악 듣기를 전후해서 음악의 내용이나 여러가지 느낌을 이야기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주의깊게 듣고, 소리를 식별해 보게 하고 그 소리를 만들어 보고, 모방해 보게 한다. (소리의 높낮이, 세기, 길이....)

③ 여러가지 음악을 듣게 되면, 유아는 좋아하는 음악과 그렇지 않은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때 교사는 적절한 반응을 해줌으로써 왜 그 음악을 좋아하는지

생각해 보게 한다.

④ 음반을 최대한 활용하고 카세트를 사용하여 자신의 음성이나 다른 유아의 음성을 녹음해서 들어보거나 여러가지 소리나는 물건을 녹음해 보게 한다.

⑤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나 성악가를 교실로 초대해 생음악을 듣는 기회를 마련한다. 이러한 비공식적인 음악회의 경험은 음악의 질을 높이고 공식적인 음악회에서 청중의 태도를 배우게 된다.

⑥ 높고 - 낮은 음, 크고 - 작은 음, 길고 - 짧은 음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청각 교재와 다양한 악기를 사용한다.

⑦ 가끔 긴 곡을 들려주기 보다는 자주(가능하다면 매일) 짧은 곡들을 들려 주는 것이 더 낫다. 유아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의 듣기(감상)로는 즐기기를 배우지 못한다.

⑧ 듣는 경험을 질문이나 토의를 통해서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 들어서 느끼는 것이 우선이고 보충으로 질문과 토의를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특별한 양상에 대해 간략하게 지적하는(예: "이건 피아노 소리야", "음악이 점점 빨라지네")외에는 듣는 경험 도중에 말을 해서는 안된다.

⑨ 여러 악기나 소리나는 물건을 보지 않고 듣기만 해서 알아 맞추는 게임을 해보거나, 똑같은 용기 여러개에 같은 소리를 내는 것을 두개씩 넣어서 유아가 흔들어 보고 같은 소리끼리 짝을 짓게 해 볼 수 있다.

2) 노래부르기

노래부르기 활동에서는 노래의 내용이나 소재의 선택과 음역(음의 범위)의 선택에 유의해야 한다.

대부분 유아들이 노래하기 편한 음역은 레(D)-솔(G) 사이의 음이며 집단으로 부를 때는 시(B)-화(A)까지가 적합하다고 보므로 노래를 가르칠때 너무 낮게 부르지도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노래의 소재 및 특징

① 자연과 계절에 관한 노래: 동물, 꽃, 자연현상(비, 눈, 번개, 달, 바다, 별, 파도, 사계절 등)

② 친구, 가족, 지역사회의 여러 사람: 소방서 아저씨, 집배원 아저씨, 경찰 등

③ 노래속에 이야기가 있는 것: 고양이와 쥐, 작은 흰 쥐, 곰 세마리

④ 주고 받는 노래; 반복하는 노래

⑤ 동물 및 기타; 곰, 사슴, 오리, 배, 자동차, 시계 등

⑥ 유아의 놀이가 있는 노래; 숨바꼭질, 그네뛰기, 물장난 등

* 유아를 위한 노래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심미적인 가치, 분위기를 전달하고 아름다움을 전해 주는 것 (예; 작은 별, 빗방울, 과꽃 등)

② 멜로디, 기쁨, 노랫말이 자주 반복되는 것 (예; 머리 어깨 무릎 발, 엄지가 춤춰 등)

③ 이해하고 기억하기 쉬운 것 (예; 생일축하노래, 높은 곳 낮은 곳 등)

④ 명확하고 기억하기 쉬운 리듬 (예; 똑같아요, 주먹 쥐고 등)

⑤ 재미있는 노래

⑥ 빠르고 생기 넘치는 것, 느리고 분위기 있는 것, 경쾌한 것, 행진곡 등 다양한 분위기의 노래

⑦ 몸동작을 가지고 있는 노래나 동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노래

* 노래지도

① 동기유발로 노래내용을 이야기식으로 꾸며 말한다.

② 교사가 새노래를 한번 부른 후에 그 노래를 아는 유아가 있으면 한번 불러 보게 한다.

③ 멜로디 악기를 사용해서 반주를 할 경우 단순하게 멜로디만 똑똑하게 들려 줌으로써 유아가 정확한 멜로디를 알게 한다.

④ 유아의 노래는 길지 않고 보통 8~12마디 정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전체를 한번에 부르는 방법을 택해야지 마디마디 끊어서 부르는 방법은 좋지 않다.

⑤ 노래의 성질, 내용에 따라 그때에 맞는 리듬악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⑥ 한번에 완전히 가르치려고 너무 여러번 반복해서는 안된다. 새노래 배우는 첫날은 5~7명 이상은 지루하다. 한번에 다 못배웠다면 다음에 계속하도록 한다.

⑦ 노래가 문답노래, 반복노래, 노래의 부분이 구분되는 노래, 의성어가 있는 노래 등은 각 역할을 나누어 부를 수 있다.

3) 소리만들기

부적응 아동 - 양지 어디 왔어
침묵의 숫자게임



구스강동기 한지 2~8장 이 들음은

한지 복서

94년 겨울수련회 자료집

한지, 아나카

포함한 개념해설의 단점 - 등락, 진탕에 대한 개념

외자맞기 - 악기명행

(1) 유아가 수집한 소리나는 도구 중에서 서로 다른 소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잘 어울리는지 소리내보고 평가해 보게 한다.

(2) 유아와 함께 악기를 만들어 보도록 한다.

(3) 어느 유아에게도 한 악기만을 연주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 모든 유아가 다양한 악기를 접하도록 격려한다.

(4) 리듬악기를 노래나 음률활동에 병행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시작전에 악기를 가지고 있도록 준비한다.

(5) 유아에게는 악기로 합주를 시킨다는 것은 무리이며 각자 리듬악기를 가지고 간단한 노래에 리듬을 맞춰 보도록 장려한다.

(6) 이야기나 연극에 있어서 특수한 음악적 효과를 위해 악기를 사용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이야기나 연극에서의 노래효과나 소리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

(7) 노래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가지 악기만 사용하지 말고 악기를 교체해가면서 노래를 부르면 음색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

4) 움직이기

* 움직이기 활동 계획의 요령

① 이동 동작(Locomotor movements)과 비이동 동작(Non-Locomotor movements)의 내용을 정리하여 표를 만들 것. ^{이동하기 행동} ^{비이동하기 행동}

② 이동 동작에서 뛰뛰기에는 높이뛰기와 넓게뛰기가 있는데 높이뛰기에서 유아는 짝과 같이 복소리의 리듬에 맞추어 동시에 뛰어 오르거나 친구와 교대로 뛰어 오르기 할 수 있다. 넓게뛰기는 개구리의 모습을 연상하며 개구리 뛰뛰기를 한다. 미끄럼 지치기는 겨울철에 스케이트 타기를 연상하며 움직일 수 있다. 멀리뛰기는 몸의 방향을 앞으로 향하며 날으는 새가 되어 본다.

③ 비이동 동작에서는 구부러기와 펴기에서 우리 신체에서 구부릴 수 있는 부분은 얼마나 많은지, 높은 선반의 물건을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토의하고 실제로 해 본다. 돌기와 돌리기에서 제자리에서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위해 팽이를 돌리거나 나사를 박아 봄으로 움직임을 끌어 낼 수 있다. 밀고 당기기 동작은 마차끌기, 배젓기, 그네타기 등의 놀이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

④ 움직임을 다양하게 만드는 동작의 내용을 분류한다.

i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이기(앞으로, 뒤로, 옆으로, 가로 질러서, 원으로)

다양한 움직임 → 몸의 움직임
반응

94년 겨울수련회 자료집

Ⅱ 다양한 높낮이를 사용하여 움직이기(낮게, 높게, 무릎으로 기기, 떨어지기, 들어올리기, 너머로 움직이기, 천천히 눕는 동안의 움직임)

Ⅲ 다양한 크기로 움직이기(크게, 작게)

Ⅳ 다양한 질감을 사용해서 움직이기(부드럽게, 슬프게, 즐겁게, 바쁘게, 느리게, 무겁게, 가볍게, 물결이 흐르듯이, 지그재그로, 뿔뿔하게, 휘휘)

⑤ 동작(움직이기)을 나타낼 수 있는 단원에 따른 경험이나 놀이 장면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i 굵혔다 폈다: 봄동산의 땅파기

ii 기어가기: 작은 흰 쥐, 토끼와 거북이, 곰 잡으러 갑시다

iii 걷기: 새마리 곰, 군인놀이, 소풍, 등산

⑥ 각 활동에 적절한 음악, 리듬악기 등의 사용을 계획해서 효과있게 움직임을 행하게 한다.

2월 5일에 진행하는 <좋은 부모, 좋은 교사 되기 훈련>자료는 별도로 나갑니다.

제9회 정기총회 자료집

제 9회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정 기 총 회

일시: 1994.1.4(화) 오전 9시-12시

장소: 송실대 사회봉사관

- 순 서 -

1. 기회선언
2. 민중의례
3. 회원점명
4. 전회의록 낭독
5. 의순체택-서기 임명
6. 감사보고
7. 토의안건
 - 1) 재정 결산보고 및 승인
 - 2) 사업보고 및 승인
 - 3) 94년 예산안 승인
 - 4) 94년 사업계획안 승인
 - 5) 회칙 개정
 - 6) 임원 선거
 - 7) 신임지역대표자 인준
 - 8) 기타사항
8. 총회 결의문 낭독
9. 폐회

제 8회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정기총회 회의록

1. 회원점명
2. 신입회원인준
3. 사업보고 및 승인-전회원 동의 및 재청으로 승인
4. 감사보고-예산안 제출의 필요성 제기
 상여금, 퇴직금 적립이 필요
 회원회비 납부에 있어서 특정지역의 장기미납에 대한 대안의 필요성이
 제기
5. 재정보고 및 결산승인-전회원 동의 및 재청으로 승인
6. 회칙개정-제 3장 조직의 제 10절에 재정사업국을 두는 것이 상정되었으나 위상과
 역할의 문제제기로 지역대표자회의로 위임됨
 -선거에 관한 내규 신설
7. 회장단선출-보궐선거실시로 남미영부회장 선출
8. 감사선출-남미영씨가 부회장으로, 유옥순씨가 서울여성노동자회 부회장으로 일을
 하계됨으로써 정성희(은누리교사) 신현희(새날아기마을)씨 선출
9. 신입지역대표 인준
10. 사업계획보고 및 승인-93년 지역대표자회의로 위임
11. 예산안 승인

1993년도 활동 보고 및 총평가

<1> 93년 활동 목표

1993년도는 탁아운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해였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된 보육제도가 근 3년째에 접어들면서 대략적인 윤곽이 마련되는 시점이었고 그에 따른 탁아운동세력의 노력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간 축적된 조직역량을 바탕으로 93년도 중점사업을 법개정 활동에 두면서 이에 관련한 제반 활동들을 힘있게 벌어나갈 것을 결의한 바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설정한 93년도 활동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개정활동에 박차를 가해 법개정을 실현한다.

이를 위해 중앙 개정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정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가고 지역별, 사안별 일상투쟁과 연구부, 전문집단과의 연계를 통해 법개정작업을 실현해 나간다.

2. 본과 활동, 연구부 등 각 구조들의 일상적이 활동을 유지 강화 한다.

92년도 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유지 강화시켜 나간다.

3. 각 지역위원회 활동의 안정화를 이룬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위원회에서는 지역의 독자적 사업을 창출하고 그에 따른 연대 모색을 하며 지역간의 편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한다.

4. 재정사업 기반을 확립한다.

본 회의 유지, 지속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재정자립을 꾀하기 위해 토대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서 각 지역위원회, 교사 등이 적극적으로 재정사업에 결합되어야 한다.

<2> 주요 활동 보고 및 평가

1. 영유아보육법 개정사업

1) 사업 일정

-개정안 마련(1월-3월): 각지역, 개정특별위원회, 정책연구부, 정책소위원회

- 개정안 마련을 위한 도움을 위해 윤찬영교수, 김종해교수, 박주현변호사방문
- 이해찬의원 1차 면담, 청원 소개하기로 함
- 법개정 공청회 (4월 24일, 3시, 전진상 교육관)
- 민자당, 법개정에 관한 소토론회(6월)
- 이해찬 의원 면담, 청원서 제출(8월)
- 국회에 청원서 수리 (9월 18일자)
- 「환경과 사회」 법개정에 관한 입장 기고
- 「사무직여성」에 법개정 취지내용 기고
- 「민주 여성」 법개정 취지 기고
- 부산걱정모임, 제2차 보육심포지움 법개정 분야 토론 참여(10월)
- 보육학회 법개정 문제 다룸
- 보사부의 법개정에 대한 입장 정리(상임위 용)
- 이에 대한 우리측 입장정리하여 의원실에 제출:개특위, 윤찬영교수
- 12월 초에 상임위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쌀문제로 연기

2) 활동 평가

93년도는 우리가 중점사업으로 법개정 사업으로 정하면서 이를 개정활동의 원칙과 목표를 명확히 하는 가운데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부적 합의를 이뤄내는 한편 지지여론을 형성한다는 방침하에 실행하였다.

사업의 주체는 내부적으로는 중앙개특위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회장단이 주로 활동하였는데 이에 따른 평가를 간단히 살펴보겠다.

가) 개정의 내용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단일안을 만들어 낸 것이 중요한 성과라고 보여진다. 이는 법제정과정과 비교해 볼 때 다양한 의견이 만들어 질 수 있었으나 조직의 활발한 토론과 그 결과에 대한 합의를 중요한 사업 원칙으로 상정하고 개정안 마련을 하였기에 별다른 무리없이 단일안을 채택할 수 있었고 이는 우리의 성숙도를 볼 수 있는 측면이라 보여진다.

나) 그러나 개정안 마련 이 후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거나 공유하는 하는 작업이 미흡하였고 따라서 4월 공청회 이후 조직적으로 개정의 내용을 선전하거나 개정을 관철시키기 위한 후속활동 없이 지나갔다고 보여진다.

이것은 개정사업이 중앙 위주의 사업이 될 수 밖에 없는 속성이 있음을 감안 하더라도 조직적으로 중점사업을 설정한 것에 대해 그 의미를 충분히 살려내지 못했다는 결정적 한계를 지니게 된다.

개정사업에 대한 전 회원의 공유나 어떠한 성취감이 거의 부재하다는 것인데 이는 두가지 요인으로 요약될 수 있겠다. 하나는 중앙 사업을 조직적 의식적으로 공유하려는 일련의 활동이 초기 법개정안 작성이후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이 원인은 개특위가 중앙위원의 성격으로 전환되면서 지역확산의 역할을 사실상 집행 위원회나 지대회가 가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합의과정이 없었고 그로인한 공백이 었다. 그리고 다른 변수 즉 민간보육시설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급박하게 제기되 면서 이를 처리하기 위해 사안에서 밀리는 결과를 낳았고 그로인해 주로 개정관 련 활동이 회장단내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치달아버렸다. 둘째는 개정사업의 방 식이 그간의 방식과 전혀 다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없어 서 전혀 역동성을 공유하지 못하였다.

다) 「법개정 공청회」 개최 시기를 4월로 잡은 것은 시기적으로 적당하였는가가 제기된다. 이는 오히려 가을에 상정하여 정기국회를 거냥하여 공청회 작업등 선 전하는 활동이 훨씬 유효했다고 본다. 그리고 5월 임시국회 상정을 예상하고 치 워진 4월 공청회는 내,외 선전적인 측면에서도 미흡하였다.

라) 결과적으로 법개정안을 어렵게나마 조직적 합의속에서 마련한 것과 법개 정을 가시화한 것(청원)은 일단 성과라 하겠으나 이러한 활동을 전체 조직 차원 에서 힘있게 실천해 나가는 데 실패함으로 실책으로 평가된다.

2. 각 구조들의 활동을 유지 강화

1) 각 구조 활동

가) 지역대표자회의

지역대표자회의의 역할을 비중있게 하기 위해 지역논의와 중앙논의를 분리하 여 논의력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실시하였다. 성과도 있었으나 아직은 미흡하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지역의 독자적 활동이 활발해 지는 조건속에서 앞으로 더욱 중 요한 논의 및 조정, 합의기관의 면모를 발휘할 것으로 보여진다.

주요 논의 사항은 대선활동 총평가, 총회위임사항 논의, 분과구조 재편성, 진 행방식결정, 3.8여성대회 참석건, 여성평화의 집 사무실이사건, 재정사업에 관 한 건, 탁아소통합문제와 위탁채선정, 입소대상논의, 민탁연대의 원칙 논의, 특별 회원, 일반회원에 관한 논의, 정부안검토, 보사부 면담건, 수익사업건 등 이다.

나) 아동교육분과

1) 전반적으로는 아동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이 구체화하는데 있어서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아동교육분과, 교육연구부 모임은 어느 정도 활발한 가 운데 안정화되었으며, 영아탁아 교사모임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도 발전적 측면이 라 보여진다.

2) 아동분과에서 어린이날 행사주체가 되면서 어린이날 행사가 상당한 질적 향상을 가져왔으나 여기서 4,5월 두 달간 분과의 집중과제가 되면서 분과내에서 다른 내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3) 실기 강습회나 재통잔치를 위한 인형극 강습회 등 올 해는 실기교육이 많이 배치되었는데 이는 상반기 평가에서 나온 지역 교사들의 요구, 실기교육에 대한 교육욕구를 적절히 받아들여 사업화한 것으로 교사들의 호응도가 높았다.

4) 아동관 토론회는 우리의 교육목표를 다시 살펴보고 구체화시키고 심화시키 는 활동으로 기획 자체에는 충분한 의의가 있다. 다만, 교사들의 고민이 짧고 관 성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5) 교육활동 교류에 있어서 교육실제를 중앙분과에서 교육함으로서 교육활동의 양적 확산을 꾀하기 위한 사업이었으나, 지역에서 준비가 부족하고 확산에 어려 움이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사업은 각 지역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사 업이라 하겠으며, 중앙에서는 자료모임을 하여 책자 발간등을 통해 확산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6) 전체적으로 조직내에서 아동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자리잡고 또한 많은 활동을 벌인 것이 중요한 성과이고 발전이다. 그러나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서는 교육관련 활동이 단순히 분과 차원을 벗어나 전지역 교사의 의견에 기초한 사업방침과 진행이 요구된다. 여기서 분과장의 역할에 대한 재인식과 책임감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현재 신진교사중심에서 배치된 분과를 그 이상으 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다) 자모조직분과, 교사조직분과

조직의 역량을 고려하여 하반기에는 양 분과가 구조로서 활동하는 것은 정지되었다. 이에 대한 교사의 부담감은 상당히 줄었으나 동시에 그에 관련한 활동에 대한 대안 마련이 부족하여 몇가지 문제점을 남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장 큰 문제로는 신입교사에 대한 교육으로 이는 내년 활동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꼭 점검하여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나) 연구부

아직 모임주체 평가가 나오지 않았기에 추후 보고하도록 하겠다.

교육연구부- 자체 세미나 : 교육사회학 : 문화재생산, 경제재생산, 저항이론,

아동기의 실종

. 아동권 토론회 개최 - 노동, 통일, 공동체

. 놀이감책 발간(7월~9월)

. 1월 겨울수련회 '성평등교육' 세미나

8월 여름수련회 '놀이감' 세미나

. 소식지 글내기 작업 - 유치원 교육과정(개정된내용) 1.2.

영아 교육과정 1.2.

. 영보법 개정안 검토

. 지역 순회 교육 - 안산지역, 인천지역 '성평등교육'

정책연구부- 육아의 사회화에 관한 자료검토, 외국 탁아제도 연구-자료발간

예정

. 신경제안 검토, 법개정안 검토, 실태조사안 검토

마) 정책소위원회

민택연대의 원칙 논의, 보사부 면담, 보육위원회 논의, 개정안 검토,

하반기 활동 사실상 정리됨

2) 평가

이에 대한 평가는 각 구조의 활동이 중점사업에 편중되지 않고 일상활동으로 꾸준히 자리매김하였는가가 관건이라 보며 따라서 각 구조의 지속적 활동, 성과,

내부 강화의 정도, 각 구조의 사업 배치에 따른 문제점 및 조정정도, 구조의 효율성, 담당자들의 사기 및 부담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전반적으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겠다. 그중에서도 교육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된 것은 큰 성과이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지역위원회 평가에서 나왔듯이 자모사업에 관한 고민이나 개별 탁아소의 어려움 등이 구조나 사업에 배치되지 못하므로 사실상 많은 일상활동이 간과되었음을 볼 수있다. 이는 사업을 대외적으로 펼치면서 이전부터 혹은 새롭게 제기되는 내부의 중요한 사안이 상당히 밀려있음을 지적할 수 있겠다.

지략면 → 지역위 → 개별탁아소 → 개개 교사들

3. 지역위원회 안정화, 독자사업 창출

이는 두가지 축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먼저 민택연대의 틀이나 지역활동의 모델이 미약하나마 창출되었고 이에 대한 중앙의 지원사업이 요청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활기찬 실천 및 성과가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지역 독자적 활동의 가능성 및 일정정도의 가시화란 측면에서는 다소 성공적이었다고 본다.

그러나 다른 측면으로 볼 때 주변에 많은 탁아소들이 생기면서 우리의 조건이 절대적인 차원에서는 일정정도 진전한 운영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위기감이 무겁게 다가와 그야말로 위기감을 맛보는 한해였다. 운영, 재정, 타 탁아소와의 비교, 교사의 문제, 자모의 변화 그리고 객관적인 운동상황이 겪는 어려움으로 인해 개개인이 갖는 기본적인 상실감이 가중되었고 이러한 처지는 우리를 상당정도 의기소침하게 하거나 다소 패배감을 맛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변화의 국면, 새로운 활동의 전개속에서 위치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두들어 지며 이는 지역간이나 탁아소간에도 차이가 있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상황속에서 우리 활동의 긍정성을 새롭게 강조하고 정립해 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더욱 각 활동간의 교류, 공유 동일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시급히 요청되는 과제로 등장한다.

4. 재정사업

1) 사업자본금의 현황

출자금모 : 총 62,000,000원

동원방식 : 재정사업기금, 후원금, 어언지원금, 회원 기부금 은행대출금 개인

사채 등

내역 자산금: 본회 재정사업기금	5,000,000원
여언 특별사업지원금	3,500,000원
후원금	3,100,000원
회원기부금	5,147,000원
※ 총액	16,747,000원
부채: 지역위원회별 할당된 무이자	8,000,000원
회원 개인	7,000,000원
금융기관 대출금	5,000,000원 (1년상환신용대출)
신협적금대출	5,000,000원 (2년상환대출)
개인무이자대출 (1년 약속)	10,000,000원 (300만원 줄어들)
2부이자 1년상환 부채	8,000,000원 (200만원 줄어들)
※ 총액	43,000,000원

자산금+부채 = 59,747,000원

2) 운영 현황 및 평가

가)일반적으로 초기 1년간의 사업 운영은 가장 어렵다고 한다. 더구나 사업 경험이 전혀 없고 또 충분한 숙련도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고 보니 상당한 무리수를 안고 출발한 사업이었다. 그러한 조건에서 올 한해를 평가해 볼 때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94년도 부터는 그간의 축적된 기술 등을 토대로 다소 활발한 사업운영이 예상된다.

나)기계구입, 은행 상환, 차량구입비 월부금, 일부 부채상환, 재료값으로 묶여있는 금액 등을 볼 때 지난 1년동안 약 800만원정도의 이익을 올린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회원 혹은 조직에게 구체적으로 성과물로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자본의 부족으로 기본적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이 마련되지 못하여 (예컨대 재료구입비 등) 생기는 문제이고 가장 큰 것은 사업자금 70% 이상이 부채이어서 이에 대한 상환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추후 조직에서 면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올 해는 새로운 사업에 적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이에 어느정도 도달하였다고 보여지나 이후 이 사업이 보다 원활하고 발전되기 위하여는 운영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조직내 담당간사 배치)

라)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홍보 선전을 적극적으로 할 뿐 아니라 조직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게 있어야 할 것이다.

마)조직적 대응에 대하여 그간 산발적인 평가작업이 있었으나 전체적인 논의나 적극적 결합이 아직 미미한 수준이고 그나마 개별탁아소의 관심여하에 주로 의존하는 실정이다. 조직적 뒷받침이 없다면 이 사업은 일상적 인건비 확보 수준에 머물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결합이 요청된다.

사)재정사업을 마련하기 위해 개별탁아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조직적으로 아주 빠른 시기에 자본금을 조성해 낸 것을 볼 때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해 낸 것은 오직 전회원의 헌신과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귀감이 될 만한 사건이라 본다. 따라서 이 후 운영에 대해서도 보다 큰 관심과 조직적 연결속에서 모범을 창출해 나가자. *조직적 관여*

5.인대사업

1) 한국어성단체연합

각종 회의 구조(집행위, 대표자 회의, 정책과 사업위원회)에 참여하는 것과 행사나 토론회 등에 결합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여언의 올 해 중점사업이 「성폭력 추방의 해」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활발한 활동을 벌였으나 우리가 여언의 전체사업에 참여, 공유하는 정도는 매우 미흡하다고 볼 수있다. 이는 언 초에 여언과의 관계를 상부단체로 설정하고 힘있는 결합을 벌여나갈 것 등을 결의하였으나 자체 사업이 과다하게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활동력을 담보해내지 못하였다. 따라서 여언 사업 공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여언 사업이 상당정도 선전을 중심에 한 사업이어서 이를 우리의 선전 홍보사업과 긴밀히 연결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12월 대표자회의에서 여언사업에 대한 회원단체내의 전 회원이 여언사업에 참가할 계기를 마련하고자 3.8여성대회를 범여성단체 회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만들어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따라서 각 단위에서는 3.8대회를 정확히 행사일정에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여성운동일지 별첨 자료> p142

2. 사회복지예산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단체의 내부 형편이 급격히 나빠지고 또 사대위 내부에서 지도의 구심력

없음으로 인해 활동정지되었다.

6. 실태조사(추가 사업)

지역활동 강화를 위해 민탁연대의 사업이 마련되었고 이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가운데 또한 정부에게 민탁 활성화, 지원요구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시급히 민간보육시설 실태조사가 제기되었다. 이는 법개정 공청회장에서 보았듯이 구체적인 개선요구가 법개정작업과 더불어 시급히 요청되었으며 이에 대한 발빠른 대응이 개특위, 교사, 자원활동가 등의 노력과 전문역량과의 결합등으로 훌륭한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우리의 요구를 주장함으로 보사부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한 민탁들에게 지탁연의 입지를 강화하는 큰 성과를 낳았다. 그러나 이로 인해 93년 사업이 다소 과중하게 다가오는 결과가 되기도 하였다.

7. 평화의 집 입주

수년간 논의하였던 평화의 집이 올 해 급격하게 진척되어 지난 8월 드디어 입주를 하게 되었다. 비록 적은 공간이지만 사무실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또 월세가 나가지 않게되어서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언 초에 재정사업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적 노력이 있었는 데다 갑작스레 추가되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또 개별 탁아소 형편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이를 위해 애써준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

<3> 총평가(성과와 과제)

올해의 사업을 마무리 지으면서 보건데 1993년도는 대단히 많은 활동이 요구되고 수행하는 한 해였다.

중요하게는 그간 우리나라에서 탁아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게 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여 청원하는 등 일련의 법개정작업이 있었고 민간탁아소에 대한 공적 재정지원을 확보해내기위해 요구하고 선전하는 과정이 있었다.

이러한 활동을 벌여나가면서 사업을 평가해볼때 두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난다.

하나의 탁아활동의 성과 그 자체로 여기서는 아직 미미한 결과물에 불과하지만 의미상 중요한 수확이 있다. 법개정에 관하여는 먼저 지탁연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체내 단일안이 무리없이 확정되었다는 점이고, 각 당의 관심 촉구, 각종 토론회나 공청회에서 법개정 논의 하도록 하는 등의 작업을 펼쳤다. 두드러진 성과로 결과되지 않았고 또 많은 부분 미약한 추진을 하였다고 보여지나 이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정도 형성하였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개정내용의 핵심인 민간탁아소에 대한 공적 재정지원은 상당한 정도 여론을 형성해 나갔고 지지세력을 일정정도 확보해 나갔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보사부가 발표한 최근 문건에 의하면 국공립탁아소의 추가 확대 신설계획, 지방정부의 재량권 및 조례제정 실시 가능성 알시, 민간탁아소의 공공시설 이용권 허용, 민간보육시설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는 그간 지탁연이 주장한 요구사항으로 우리 주장의 정당성과 합리성에 대해 상당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수렴하려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여진다. 구체적인 성과물은 올 93년도 불용예산을 민간탁아소 전체에게 지급한 것이다. 이는 다소 획기적인 조치라고 보여지고 또 내년엔 민탁지원이 본 예산에 편성되는 데는 실패하였지만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진 점 등이 중요한 성과일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결과적으로 탁아영역의 새로운 국면에서 지탁연의 입지를 세우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나아가 지원요구활동의 가시화 및 조례제정 여부는 향후 지자체 시대에 발맞춰 우리활동이 지역에서 펼쳐지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지역위원회나 개별 탁아소의 평가나 반응을 볼 때 이러한 성취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것은 가장 큰 이유로 주변 여건의 변화로 개별 탁아소가 맞이한 조건의 변화 및 운영난으로 인해 위기감이 생겨났기 때문이고 또다른 이유는 모든 사업이 공유 및 의견수렴 과정이 미약하여 모든 회원의 성취감을 갖기에 너무 공백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그간 지탁연 최대의 장점인 같이 의논하고 같이 의견을 모으고 같이 실천하고 그 결과를 똑같이 나누는 그간의 좋은 사업 풍토가 상당정도 침해되었기에 이에 대한 복구가 시급하다고 본다. 또한 지역과 개별탁아소 개별교사가 갖는 어려움이 실로 이모든 사업의 성과를 상쇄하고도 남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주관적 처지에 따라 얻은 것에 대해 과소 평가해서도 안되고 우리활동의 대의적 과제를 간과해서도 안되지만 우리 모두가 당면한 내부적 난관

을 극복하기 위하여 조직적 노력을 강력하게 강구해야 할 것이다. 바로 이 시점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새롭게 사업에 임하자.

1993년 중앙 구조 및 행사 평가

중앙 개정특별위원회

1. 활동목표

- 1) 개정활동의 원칙과 목표를 명확히 하는 가운데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부적 합의 이뤄내는 한편 지지여론을 형성한다.
- 2) 제도 개선 활동 유지와 지역별 작업 활성화
- 3) 경과조치 마감 작업

2. 사업 일정

< 서울 경인 개특위 : 매주 1회 회의 >

1월> 11월 경과조치 관련 내부 실태조사 분석, 법 교육,
'92년 개특위 사업 보고서 발간

2월> 지역, 중앙 개특위 사업의 방향과 목표에 대한 논의
- 초안을 2/13 지대의 합식에 제출
영보법개정에 관한 자체 세미나

3월> 보육사업 지침 분석과 가구소득 조사실시.
- 요구안 내용 정리하여 '보육사업 수행을 위한 제안서' 정리

4월> 공청회 준비, 용도변경에 관한 논의

4월> 개정안 마련을 위한 논의, 정리작업
제안서 마련을 위한 논의, 정리작업.

용도변경에 관한 논의

서울시 지원에 관한 논의

5월> 용도변경에 관한 논의

공청회 평가와 사후 작업 논의

9월 토론회 준비

6월> 민탁 연대활동 주체간 연석회의 마련

9월 토론회 기획- 실태조사 기획

7월> 9월 토론회 진행 - 전국 6대도시 보육시설 실태조사 진행

8월> //

9월> 실태조사 결과 분석과 보고서 '영유아보육시설의 실태와 보육정책의 대안' 작성 진행.

'보육사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실시

< 지방개특위 >

2월> 영보법 개정안 이해를 위한 세미나(김정자, 박주현 등의 글), 지역상황 보고,

3월> 보육사업 지침서 교육과 분석, 이를 통한 지역에서의 요구작업 점검

4월> 4월 공청회 발제문 검토, 제안서 내용검토, 지역상황 보고

5월> 야외 개특위

6월> 용도변경, 신경제 5개년계획, 서울시 보육위 자료 검토, 9월 토론회 준비

7월> 9월 토론회 준비, 상반기 평가

9월> 보사부 비공식 소간담회, 9월 토론회, 실태조사 결과 분석

3. 활동 평가

1) 사업평가

< 평가 항목 >

- . 역량과 조건, 시기에 맞게 사업이 적절히 채택되고 배치되었는가?
- . 통일, 집중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는가?
- . 교사들이 매 사업의 목표를 인지하였는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
- . 92.93 중점사업으로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

가) 영유아보육법 개정활동

1> '영유아보육법 공청회' 개최 시기를 4월로 잡은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당하였다고 평가되었다. 정기국회 기간내의 법개정공청회 등의 활동 배치가 훨씬 유효했지 않는가에 대한 평가이다. 개정활동에 있어서 시기 선택은 주관적 정세에

앞서 객관 정치정세, 특히 국회 일정속에서 효과적인 사업의 배치가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측의 단순정보에 따라 일정이 잡혔으며 지역에서 시기적으로 법 공청회가 아니라 지원 관련 중앙사업을 벌려야 한다는 제기가 있었음에도 회장단(정책소위)의 판단에 따라 사업이 배치되었다는 것이다.

2> 5월 임시국회 상정을 예상하고 치뤄진 4월 공청회는 내,외 선전적인 측면에서도 미흡하였다. 또한 제도권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탁연 중앙의 제도권에 대한 토비력이 약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3> 법 개정 공청회 이후 개정의 내용을 선전하고 개정을 관철시키기 위한 후속활동 없이 지나갔다. 이는 초기에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유하는 작업이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유코자 하는 작업의 미흡이 나타났고 4월 공청회이후의 공백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채 현재에 이른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이것은 중앙 위주의 사업이 될 수 밖에 없는 법개정사업이 가지는 속성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아주 최소한의 법개정 활동의 목표에 합의하여야 한다는 연초의 제기를 비추어봤을 때 교사들이 법개정활동에 대한 목표의식이 분명한가에 대한 의문과 제도권내 개정활동의 한계를 뚫지 못했다는 평가를 하게 한다.

4> 그러나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 자체보다 내, 외적으로 개정에 대한 정당성을 선전하여 우리가 이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유리한 지점을 획득하는것이 개정활동의 중요 목표였음을 상기하여 볼 때 자체적으로 개정의 내용을 정리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고 그러한 과정속에서 올바른 타아이념을 정립하여 나갔다는데 의미가 있다 하겠다.

나) 제도 개선요구 활동

1> 전체적으로는 그간의 지탁연내 축적된 타아정책 및 제도에 대한 연구의 성과를 최대화시키려는 노력 (전문인력 결합 등)으로 구체화, 정교화되어 가는 것은 있었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보육 행정, 제도 개선 요구 활동 2년째에 들어서면서 지난 사업을 계승하는 차원으로 남아 창조성이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제도개선 요구내용이 아동지원, 간식비 지원, 시설비 지원 등 지난해의 요구항목과 수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점)

2> 중앙차원에서 보육 행정의 방향이 밝혀진 상반기에 지원 요구 투쟁을 공개

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평가이다.

3>올 9월에 개최한 '보육사업 발전을 위한 대 토론회'의 경우, 년초 계획보다 큰 비중이 되어 버렸으나 그럼에도 제도개선을 위한 요구대회 성격에서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즉 지역의 제도개선활동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너무 늦은 시기였기에 구체적인 성과를 안아오기에 미흡했다는 평가이다.

4> 종래에 지탁언 존재 자체를 모른체 하거나 거부했던 보사부가 그간의 입장에서 탈피하여 공식적인 타아관련세력으로 지탁언을 대우하는 가운데 요구내용을 수렴코자 하는 등 변화가 보였다.

이는 타아문제 해결의 대안 모색 등 그간의 우리 활동과 노력 축적에 따른 정부측의 인정이며 이것이 설혹 부서의 변화 (가정복지과-아동복지과)에 따른 일시적인 유효책이라 하더라도 정부측과의 교섭통로가 확실해진 점, 요구내용 전달과 그에 따른 반응 변화가 예측 가능하다는 면 등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5>그러나 정부와의 관계가 세련되어진 반면 요구의 강도가 약했다는 점이 평가되었다. 즉 직접 요구보다는 우회적인 전술을 택하거나, 로비등에 의존 경향이 있다. 이것은 수동적인 대 정부 자세, 절박감이 떨어지는 등으로 나타나 기대하고 의존하여 후속작업 점검 소홀로 드러나 이에 대한 극복대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다) 평가

올 한해는 개정안 교육이나 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교사들이 개특위 사업에 대해 조금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한해였다.

그런 반면 중앙에서 기획, 점검 등이 모두 이뤄지는 사업 중심은 교육하거나 받는 것 외에 다른 역할, 실천활동이 부재케 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것은 곧 바로 개특위 주체 등 몇몇 개인의 사업으로 가는 경향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지역 개특위, 민탁언석 주체 아닌 경우에는 일반교사들은 개특위 사업을 수렴, 흡수하는 자세가 되게했다.

이러한 요인으로서는 첫째, 영보법 제정 대응과 신고 여부에 따른 대응이 치열했던 91년과 보육행정 첫 해로서 어수선하고 아동지원 등 새로운 대응면이 있었던 92년에 비해 올해는 정책 표면상 지난해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고 이에 따른 긴박함에서 정도가 덜했다는 점이 있을 수 있다.

둘째로는 경과조치 마감을 앞두고 이전에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지난 '92년

의 내부 실태조사를 통해 경과조치 마감에 따른 타격이 그리 심하지 않으리라는 내부의 타산도 개특위 사업의 절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평가이다.

셋째로 일방적으로 잡혀진 일정과 사업에 대한 통고, 전달 중심의 개특위 사업 성격에서도 이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법, 정책 등의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 분과로서 일정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개특위 사업에 일반 교사들이 의사를 밝히고 문제제기 등을 하는 등의 참여 분위기를 만드는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중앙 결정 우위의 개특위 사업이 가지는 성격상 지역개특위의 독자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평가되었다. 이것에 교사 중심의 사업 방식, 실천 형태는 일반교사들의 동력이 굳이 포나게 움직여야 할 거리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는 평가이다.

2. 구조 평가

. 서울 경인 영유아보육법 개정특별위원회 회의

. 지방 //

< 평가 항목 >

- . 연합활동과 지역활동의 원활한 의사교환이 이뤄졌는가? 지역의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었는가?
- . 법, 제도에 관한 논의와 그에 따른 사업을 기획, 실행하는 구조로서 적당했는가?
- . 이후 영보법 개정사안이 일상사업으로 자리하면서 동시에 개특위 해소 및 그에 따른 우려, 보완 구조 등이 논의되어야.

< 평가 내용 >

- 1) 제도개선 요구 활동은 년초에 계획된 활동 방향 및 목표에 따른 사업 배치가 시기, 비중에 있어서 부적당했다.
- 2) 개정활동과 보육행정 전반에 대한 대응 활동은 개특위의 다른 구조에서 맡아 안아 중심 고민할 내부 여력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올해 개특위 사업을 미룰(?) 수 있는 구조로 정책 연구부, 정책 소위, 연구자 등이 여겨졌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 구조들과의 관계설정이 불명확하고 책임 분산, 사업의 나열이 나타났다. 개특위가 개특위 사업 전반에 대해 책임지는 역할분담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3) 올해 개특위 구조는 상반기 동안 서울 경인 지역을 시, 도단위로 묶어 서울시, 경기도 등으로 나누어 회의 운영을 하였다.

이것은 같은 행정단위별로 묶었을 때 동일한 상황과 조건속에서 개특위 사업을 효과적으로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당초의 예측에서 벗어났다. 각 행정단위별 모임과 전체 개특위 회의를 병행시키기에 시간적, 사업상 무리였고 각 지역의 내부역량, 준비정도의 편차가 해소되지 않은채 지역사업의 원활한 지도, 지역상황 점검, 총체적 의사교환, 공동대안 모색 등에 있어 미흡했다. 또 4월 공청회, 실태조사, 9월 대토론회 등의 사업 수행을 위해 지역의 현안 해결과 사업지원 논의가 뒤로 미뤄질 수 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사업의 단초를 마련치 못하고 장기간의 소강상태에 있는 지역, 개특위 회의에 안 나오는 지역에 대한 배려, 검토가 없었다는 평가이다.

표면적으로 지역사업이 중앙사업과 연결되지 않거나 중앙의 사업 흐름에서 뒤쳐지는 지역과 중앙과의 괴리가 심각해졌다.

따라서 중앙사업과 맞물리면서 법, 제도 등에 관한 활동을 지역에서 왕성히 활동했음에도 지역내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이다. 이는 교사 일반이 참여하는 실천 활동거리를 마련하지 못한 채 예전에 했던 방법을 그대로 하였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이다.

3. 개특위 해소 이후

1) 영보법 개정활동이 특별활동에서 일상활동으로 전환되는 국면의 전환으로 특위체를 해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개특위가 영유아보육법 개정활동 뿐만이 아니라 보육행정 전반에 대한 대응활동의 역할을 해왔던 것을 보았을 때 개특위 사업이 그대로 유지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2) 일상적인 조직사업, 개특위 사업 등을 포함한 일상분과로 가야 된다는 집행위의 제안에 대해서는 법, 제도,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전담구조로 가야 된다는 의견이다. 내용과 질이 다른 각기의 사업을 혼합해 놓았을 때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것은 개특위가 해왔던 역할과 사업의 성격을 분류하여 살펴보는 가운데 찾

을 수 있겠다.

지난 1992년, 1993년의 개특위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면

1) 현 단계 정부 탁아정책의 흐름과 정세, 탁아관련 세력에 대한 신속한 정보입수, 검토, 분석과 이에 따른 파장 예측 <연구능력>

2) 그에 따른 중앙, 지역의 대응접촉면 찾아 사업으로 입안, 실행, 지탁연 방침화 <기획과 실행능력>

3) 중앙의 흐름속에서 지역내 독자적인 역할과 사업을 입안하여 지역내 교육, 선전, 연대 등의 사업 총괄 <대표성과 지도성>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개특위 해소 이후의 구조에서는 다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속에서 구조 논의가 되어야 한다.

1) 개특위 사업의 집중성을 확보해야

2) 지역과 중앙과의 개특위 관련 사업의 연결통로서의 구실

- 중앙 개특위장의 지역내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건지.

- 지역의 집 대표의 권한과 역할 명확하게 하면서 중앙 연대 사업을 책임져야.

3) 지역구조가 복잡, 중첩되면서 전달, 의사소통이 어려움을 해결해야

3) 개특위 해소 이후 구조에서는 보육행정 전반에 대한 대응활동에 각 지역의 민간탁아소 연대활동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활동이 첨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지역의 보육행정 개선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 아동교육분과

지탁연의 교육활동관련 분과및 부서는 각 지역위원회 아동분과장으로 구성된 서울경인지역 아동분과, 지방아동분과, 영아탁아소 책임교사로 구성된 영아탁아모임, 그리고 대학원생과 전직 교사등으로 구성된 교육연구부등이 있다. 이 각 모임은 각각 독자적인 활동을 함과 동시에 상호 보완, 결합된 활동을 진행했다.

몇년 사이에 증가한 교사들의 아동교육에 대한 고민과 노력의 통해 아동교육분과와 연구부모임은 조직 자체가 안정화되었으며, 영아탁아모임의 경우 올해 모임을 시작했다. 아동교육활동 평가는 각 모임별로 올해 사업과 구조를 평가하고 내년 사업의 방향과 목표를 수립하는데 고려해야 할 것을 정리하는 것으로 한다.

1993년 지탁연 아동교육분과활동은 92년의 교육활동성과를 계승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활동목표 1)아동교육의 질적 확산, 2)전교사의 교육에 관한 관점과 활동합의를 위한 지역분과 정착화, 3)이 모든 활동을 통해 주체역량을 키워냄으로써 육아의 사회화 실현한다라고 정한바 있다. (1993년 1월 총회및 아동분과에서 합의)

이러한 계획과 원칙이 93년 활동에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조직 구조별로 사업과 주체를 평가하고자 한다.

〈분과 활동〉

1. 서울경인지역 아동분과

1)93년 활동일지

3월 일상활동 지원사업- 교육활동교류, 소중과 신입아동 다루는 법에 관한 논의

아동관 토론회 (노동의 가치를 아는 교육)결합및 확산 작업과 평가.

지역분과 활동계획 잡기

4월 일상활동 지원사업- 교육활동교류

어린이날 행사 준비

5월 어린이날 행사 참가및 평가작업

6월 일상활동 지원사업- 건학에 관하여, 캠프에 관하여, 방학 통신문에 관한 논의, 교육활동 교류

아동관 토론회 (통일세대를 위한 통일교육)결합및 확산 작업과 평가

수련회 아동교육 프로그램 정하기

7월 일상활동지원 사업- 교육활동 교류, 방학 통신문 만들기 작업

수련회 프로그램 준비작업(새 노래 배우기), 상반기 분과 활동평가

8월 하반기 계획 잡기

9월 일상활동 지원사업- 교육활동교류

지역분과 평가 완료, 실기 강습회준비

10월 일상활동 지원사업- 교육활동교류

제 1회 실기 강습회 개최및 평가

11월 재롱간치에 대한 논의

아동관 토론회(공동체 교육)논의

수련회 아동교육 준비

12월 인형극 강습회 개최(제 2회 실기 강습회)

아동관 토론회 결합및 평가

1년 분과평가

2)사업별 평가

가.어린이날 행사 - 어린이날 행사 평가서 자료 참고

어린이날 행사는 올바른 어린이 문화를 위해 노력하는 제반 단체들과의 연대 행사로서 올해는 지탁연의 경우 유아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등 각 단체가 자기 내용을 갖고 결합함으로써 내용에 있어 충실한 면이 있었다. 그러나, 내부평가를 하자면 아동분과가 4,5월 이 행사에 집중함으로써 인해 다른 내용에 대한 논의가 중앙차원에서 진행되지 못했고, 특히 지역의 경우 이 준비로 인해 지역자체내 사업진행에 많은 차질을 주었다.

내년에 이 사업을 할 경우 고려되어야 할 점은 첫째, 지탁연내의 준비위원회를 올해와 같이 아동분과내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찍 준비하고 지역의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 요구된다. 둘째, 이 행사를 타 교육관련 단체와 연대 행사로 할 것인지, 민간 보육시설과 함께 할 것인지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나. 실기 강습회(2회 실시)

상반기 평가에서 나온 지역교사들의 교육실제에 대한 요구를 받아 사업화한 것으로 종이를 이용한 미술활동과 교구교재 만들기, 인형만들기와 인형극 공연법 배우기를 하였다. 교사들의 높은 참여를 이끌어 낸 이 사업은 교사들이 교육실제에 대한 교육이나 강습을 접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자체내에서 준비함으로써 교사들에게 교육활동을 준비하는데 자신감을 높여 주었고, 교사들의 교육에 임하는 관성적인 자세를 되돌아보고, 교육연구에 대한 결의를 높여주었다.

내년에는 준비주체를 지역장중심이 아닌 지역분과 활동의 성과로 중앙차원의 실기 강습회를 개최하고, 1년계획에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지역에 부담을 주지않고 풍부한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하는 것과 전문적인 외부 강사를 통한 교육도 함께 계획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 일상활동지원사업- 아동관련 행사

그동안 진행했던 아동관련 행사를 검토하고 정리의 계기로서 유효한 사업이었으며, 실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신입아동을 대하는 법, 방학통신문)

내년에는 이러한 올해의 자료를 토대로 각 지역위에서 보다 풍부한 내용이 창출되어야겠다.

라. 교육활동 교류사업

교육실제를 중앙분과에서 교류함으로써 교육활동의 양적 확산을 꾀하기 위한 사업이었으나, 지역에서의 준비부족과 지역에서 각 집으로 확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 사업은 각 지역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사업이라 합의하며, 중앙에서는 자료 교류와 모임을 통해 책자 발간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되었다.

마. 아동관 토론회 결합 및 확산 작업

아동관 토론회의 준비주체는 교육연구부이나, 교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확산하는 작업은 아동분과에서 하는 것으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이 부분적으로 수행되어 아동관 토론회 때 논의된 내용이 교육실제의 기반이 되지 못하고 1회적인 논의로 끝나버린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중앙에서 수행하는 각 토론회 및 강연을 각 집까지 전달하고 풍부한 내용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본과의 역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3) 분과회의 평가

① 중앙분과 참가 지역이 몇몇 지역에 국한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6월 이후로 지역분과의 참여가 3~4개 지역으로 축소되면서 참가 지역장의 역할이 가중되고, 사업 진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중앙회의의 낮은 참가율은 각 탁아소, 지역의 열악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동교육의 내용을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각 집과 지역의 교육활동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 지역 교사의 의견에 기초한 사업방침결정과 집행이 요구된다. 몇몇 성원에 의해 아동분과 사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것은 한계를 갖는다. 분과 모임에 참가하지 않는 지역은 어떻게 교육활동이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고, 중앙차원의 교육프로그램의 지역교사의 참가율도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 현상이다.

그러므로 내년에는 모든 지역이 아동분과 체계를 구축할 것과 모든 지역이 중앙분과 모임에 참여할 것이 제기되며, 만약 지역에서 분과장 선출 및 중앙 모임이

참가가 어려울 경우 지대의 장이 참가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② 2주일 단위로 개최되는 중앙분과 회의 조정이 요구된다.

내년에는 1달에 한번 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합의했다. 중앙 모임으로 인한 지역활동, 각 탁아소 활동의 위축을 막으면서 심도깊은 논의를 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기로 했다.

③ 분과장 역할에 대한 재인식과 책임감이 요구된다.

분과장 인선에 있어 기준이 요구된다. 특히 신진 교사 중심의 활동만이 아니라 중진까지 참가하여 지역분과가 튼튼하게 꾸러지고, 그 속에서 분과장의 책임감있는 활동이 요구된다.

④ 분과장에 대한 교육이 요구된다.

아동분과의 역할, 지역분과 활동과 중앙활동의 이해, 사업기획에 대한 방법론, 조직관리 등에 대한 교육이 초기에 되어야 한다. 상하반기 M.T 등을 통해 교육하거나, 교육을 통해 분과장의 역량을 키워내며, 분과장간의 친화력을 높여나갈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었다.

⑤ 회의의 내용이 중앙사업중심으로 논의되면서 각 지역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것이 오류로 발견되었다. 중앙분과에서는 지역분과에 대한 사업의 점검과 제안을 같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지방아동분과

1) 활동일지

3월 지방 아동분과 사업계획 검토

일상활동지원 사업- 소풍에 관한 논의

4월 일상활동지원사업 - 견학에 관한 논의

아동관토론회 (노동의 가치를 아는 교육) 세미나 및 실제 교류

어린이날 행사(지역별) 준비 및 검토

5월 일상활동지원사업 - 교육활동교류

어린이날 행사 개최, 평가

통일교육 자료 모음

6월 일상활동지원사업 - 캠프에 관한 논의, 방학통신문에 관한 논의

아동관토론회 (통일교육) 세미나

수련회 프로그램 - 유아체조하기로 함

7월 모임이 없었음

8월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계획

수련회 평가

9월 민탁연대와 아동분과의 역할에 관한 논의

지방계획 검토

교구교재 만들기 사업

10월 강습회 평가

비디오 도서관에 관하여

아동관 토론회(공동체 교육) 내용 사전에 논의

재롱잔치에 관한 논의

교구교재 만들기 사업

11월 아동관 토론회 내용 초안 검토

교구교재 만들기 사업

지방아동분과 평가

수련회 준비

12월 아동관 토론회 (공동체 교육)세미나

교구교재 만들기

내년 사업방향에 관한 논의

수련회 손유희 준비 합의

2)사업평가

가.어린이날 행사

각 지방에서 준비하는 어린이날 행사를 검토하고 각 지역의 기획내용을 함께 이야기하고 대안을 찾는 형태로 논의되었다. 각 지방의 기획내용을 교류함으로써 내용을 풍부히 준비할 수 있었던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내년에는 정보의 적극적인 교류와 동일한 사업을 각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할 때 함께 기획함으로써 각 지방의 활동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나.일상활동 지원사업 - 아동관련 행사

서울경인지역과 동일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다만 성실한 준비와 논의력은

별로 평가되어야겠다.

다.교육활동 교류사업

서울경인지역과 동일

라.아동관토론회 결합및 확산 작업

매 토론회전에 교사들의 의견 취합과 초안검토, 지방아동분과차원의 세미나등의 사업을 꾸준히 진행했다. 다만 이 내용을 토대로 한 지역내의 사업이 없음으로 인해 계속적인 교육의 성과로 남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마.교구교재 만들기사업

상반기 논의 중심의 분과활동을 뛰어넘자라는 요구와 서울경인의 경우 대규모 강습회등을 기획하고 있는 실정에서 지역분과의 역량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면서 만들어진 사업이었다. 언어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사업은 평균 1회 모임에 1~2가지의 교구를 제작하였다. 이 사업은 서울지역에서 한 강습회와 같은 성과를 낳았으며, 내년에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3)분과회의 평가

①지방아동분과는 지역위의 분과 활동이 한 탁아소의 교육활동자체와 같은 지역이 있는가 하면, 4개정도의 탁아소가 지역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그에 따른 다른 형태의 아동분과 활동을 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 등등 조직의 편차를 가지고 있다. 또한 지역의 어려움이 많아 실제 지방아동분과모임의 참가는 반 정도를 넘지 못했다. 그러나, 각 지역, 탁아소가 안정화될 예정이라 내년에는 적극적인 결합이 예상된다.

②지방아동분과또한 지역에서 역할을 정확히 부여받고 자기 역할에 대한 재점검이 요구된다.(지방아동분과의 역할을 명확히 한다.) 지방아동분과는 서울경인지역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습회, 교육을 전달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며, 그에 따른 심도깊은 논의와 토론이 요구된다.

③각 지역의 사업을 기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각 지역이 실정에 맞게 사업을 기획하는 방법을 중앙(지방아동분과)에서 함께 논의해야겠다.

④분과회의 전에 사전회의 준비를 정확히 해내고,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회의에 참가하는 것이 요구된다.

<총평가>

93년 사업의 목표와 본과의 위치에 근거해서 총평가를 하자면,

1. 체계의 안정화와 지역아동본과의 활성화측면에서 보자.

아동본과는 지탁언의 전 탁아소의 아동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아동본과의 체계는 중앙에서 지역까지 모두 갖추고 있다. 이에 대한 전성원의 정확한 이해와 합의가 필요하겠다. 지역의 경우 본과의 활동이 그 본과원 중심의 활동으로 국한되어 소모임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를 넘어서 각 집의 교육활동에 뿌리를 둔 활동으로 전화되는 것을 요구받고 있다.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제 지역과 각 탁아소의 교육활동을 강화하는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그 속에서 중앙사업이 고려되고 각 지역에서 수렴된 의견에 기초하여 전체 지탁언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활동과 사업이 중앙에서 입안되어야겠다. 지역아동본과의 활성화 대안으로 전교사의 합의와 함께 지역에서 사업을 입안하계금 중앙본과에서 본과장을 중심으로 자체 교육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본과장모임외에 아동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진 현장교사 중심의 중앙 연구모임이 제안되었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2. 아동교육의 질적 확보와 교사들의 아동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보자.

93년은 아동관련행사 지침마련, 교육활동실제 교류, 실기교육, 아동관련토론회 등을 개최하면서 아동교육의 질적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교육의 질적 확보와 전문성확보는 단순히 중앙에서 몇번의 교육을 통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제안된 내용에 대해 실제 적용시켜보고, 그 과정에서 내용을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활동을 대함에 있어 자신감을 획득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사업이 진행되지 못함으로인해 성과가 미비했다. 중앙에서 사업을 계획시 어떻게 확산하고 전교사와 또한 조직적으로 그 사업의 성과를 내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함께 되어야 할 것이다.

내년의 사업방향을 평가에 기초해 제기한다면,

1. 중앙본과와 지역본과활동이 조직적으로 결합한다. 그리고 연구부, 중앙지역이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결합한다.

2. 사업별로 살펴보면,

중앙에서는 1)외부교육에 대한 정보를 정규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2)공동양육, 영역별 교육이론, 교육철학등이 이론적인 내용에 대한 교사 재교

육의 장이 다양한 형식으로 요구된다.(소식지, 강연, 공개토론회, 소규모 토론회)

3)교유실제에 대한 실기 교육의 장을 마련한다.

4)지역사업간의 교류와 점검을 정확히 하고 지역의 기획력을 높인다.

5)비디오 도서관사업을 수행한다.

등이 제안되었다.

지역본과활동은 1)활동의 원칙에 있어 각 탁아소의 교육활동에 뿌리를 둔 본과활동을 한다. 2)사업내용은 각 탁아소의 일상활동에 대한 점검, 지역내 아동교육에 관한 내용을 연구하고 심화하는 사업수행(중앙과 함께 혹은 지역독자적으로든), 각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교육이 되어야한다. 등이다.

내년은 교육의 문제가 탁아활동에 있어 새롭게 제기되는 한해가 될것이다. 이는 흩어져 있던 교육활동의 지난 성과를 모으고, 교사들내에서도 교육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아동본과사업이 단순히 한 본과사업으로 있기 보다는 전 교사의 고민을 담는 장이 되어야 하며, 아동본과의 활동이 조직속에서 이루어지고 지역위원회, 연구부등과의 유기적인 결합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임을 또한 이야기한다. 활발히 연구하는 교사와 아동교육의 질적 담보의 형태로 연구 결과가 나오게끔 내년 사업을 계획해야 할 것이다.

〈영아탁아소 모임〉

활동일지

5월 소개및 인사

각 탁아소 상황교류

앞으로 할 일에 대한 논의

7월 탁아소내에 있는 교육관련서류 모으기

식단에 관하여

하루일과에 관한 논의

9월 영아의 건강

영아탁아소 모임의 방향에 관해

11월 영아의 안전관리와 응급처치

영아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영아탁아소의 모임은 추후 평가할 것임.

주요 행사 및 홍보사업

1) 어린이날 행사 총평기(1993년)

- <새날을 열어갈 어린이 한마당> 보고서

- .참여 단체 : 서울교육대학 총학생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초등지회, 지역 사회탁아소연합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유아교육을 위한 전국교사모임, 한국어린이문학회, 어린이도서연구회, 놀이연구회, 교육문제창작회.
- .도움단체 : 월간 우리교육, 극단 아리랑, 한림토이스, 초등미술교과모임, 훈장, 좋은 아버지되기모임, 초등어린이사진모임, 아람유치원, 책마을 서점, 참교육사, 서울무비.
- .후원 : 월간 우리교육, 참교육사, 현암사, 사계절, 푸른나무, 창작과 비평사, 산하 참견, 우리네 방앗간, 여성사, 한국환경, 사회정책연구소.
- .목표 : 작년에 준하며 1)아이들을 병들게 하는 문화를 비판하며, 아이들이 주체로 참여하여 뛰노는 건전한 어린이 문화의형성과 대안적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 2)어린이 문화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로 대안적인 내용을 만들어 나가는 단체들의 내용을 홍보한다.를 전체 목표로 잡 내면서 지탁연 내부로는 각 유아교육학관련학과 학생회, 단체와의 연 대의 틀을 마련한다.
- .일시 : 1993년 5월 5일 , 오전 10시 ~ 오후 4시
- .장소 : 서울교육대학
- .준비과정 : 3월 19일에 타 교육관련 단체와 연대모임을 시작하여 10여회의 준비모임을 갖졌으며, 지탁연의 경우 아동분과가 어린이날 행사 준비위원회 로 전화하여 행사를 준비하였고, 자원활동가 중앙 연석회의가 결합하여 당일 진행요원과 자원 교사로 활동하였으며, 서울지역 유아교육 관련학과에 공문을 보낸 결과 성대 아동학과 학생회 산하 학회에서 결합하여 행사를 준비하

었다.

- .재정 : 후원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장터 수익금의 5할로 충당하며 표판매값으로 재정을 충당.- 지탁연 티켓은 200~250 만원 예상.(나간 표는 350장)
- .당일 행사 : 기념식, 운동장 놀이, 공연, 유아 실내 놀이, 만화 영화 상영, 전시, 및 판매, 장터 등
- .참여인원 : 10,000 여명
- .당일 행사 진행 요원 : 교육대학교 학생 300여명(?)과 지탁연 소속 자원 활동가 100여명과 다수의 교사와 참교육 학부모회분들
- .행사 평가

9개 교육관련 단체가 모여 '새날을 열어갈 아이들 한마당' 어린이날 행사를 93년 5월 5일 교육대학교에서 1만명이라는 예상치 못한 많은 어린이와 부모, 교사가 참여하여 성대하게 치렀다.

이번 행사는 작년을 계승함과 동시에 여러가지 다른 시도들이 있었던 행사였다. 우선 4개 단체에서 9개 단체로 참여단체가 확대되었고 그에따른 행사내용이 양질 모두에 있어서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 많은 단체가 모여 각자 자기 단체가 대상으로하는 어린이를 위한 내용을 만들어내고 각 단체의 특성에 따라 전문화된 자기 내용등을 투여하여 행사를 준비하고 한자리에 모음으로 어린이 문화의 단면이 아닌 대안적 어린이문화의 모든 영역을 담을 수 있었다. 또한 연대행사를 함으로 자기영역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각 단체를 서로 확인하고 앞으로 단체간의 교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 하나, 이번 행사는 예상밖으로 많은 인원이 참가하였다. 작년부터 신문 광고 등을 보고 조금씩 참가하기 시작했던 일반 참가자의 참가가 올해는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이는 재야 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이 줄었음과 동시에 3회 개최라는 것이 주는 선전효과에 기인한다. 이렇게 예상을 벗어나는 참가로 당일 진행에 있어 많은 문제와 혼란이 있었다. 물론 진행상의 문제는 별도로 평가할 부분이다.

내년에 행사를 준비하는 데 많이 고려해야 할 것들은 확대된 참가자들에 맞게 어린이들이 행사에 치이지 않게 장소 선정과 분산 개최를 고려 프로그램의 형식과 내용 전면 검토와 기획이 요구된다.

지탁연에 국한시켜 간단히 평가를 하자면

91년의 어설피름과 92년 중앙만의 결합으로 유아프로그램의 내용을 담아 유아영역도 중요하게 자리잡히는 행사로 만들어냈다. 앞으로 행사를 준비하는데 유아부분도 당연히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유아들이 소외되지 않는 행사를 만들어내는데 단초를 만든 것이 이번 행사를 통해 얻은 성과이다.

또한 미흡하게나마 어린이를 위한 행사를 치루기 위해 교사간의 어린이날에 대한 입장 정리 및 자모 자부와의 합의과정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겼다. 첫째, 우리 아동과 관련한 사업에 있어서 교사들이 얼마나 적극적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을 보자면 창조적이고 신나는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간의 합의과정이 잘 되지 못하면서 어머니대회처럼 자신의 몫으로 모든 교사들이 합심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 또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번 평가를 하면서 어린이날 행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합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제 우리도 아동에 관한 내용으로 부모를 설득하고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어린이날 쉬는 문제와 부모가 쉬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날 행사를 적극적으로 결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충분히 부모와 이야기를 한다면 그날 쉬고 다른 좋은 행사를 참여하든지 본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준비가 없음으로 낮은 참여와 어린이날의 의의를 살리는데 미흡했다. 앞으로 전문화된 영역으로써 자리잡기 위해서는 아동과 관련해서 교사간의 충분한 고민과 합의 그리고 부모들을 설득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교육과 함께 어렵게나마 치른 행사로 교사들이 행사에 대한 자신감과 적극성을 가지게 된 것은 행사의 성과라 할 수있다. 그리고 성대 아동학과의 참여는 앞으로 다른 유아교육 관련학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집행위 차원의 평가는 5/10 함.

- 어린이날 행사 준비위원회(서울경인지역 아동분과) 준비과정
- 3/30 어린이날의 유래와 경과, 어린이란 용어에 대하여 교육.
- 92년 어린이날 행사 검토
- 올 어린이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 오자.

- 4/1 지대위에 어린이날 행사 계획서 제출 - 목표와 대략의 행사 계획을 검토함.
- 4/6 연대 모임에서 계획한 전체 행사 내용 검토
- 유아가 소외되지 않고 유아들도 즐길 수 있게 준비되어야 한다면 부모들도 함께 참가하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
- 유아대상 놀이 프로그램 기획 - 대략 종류만
- 자활을 파악해 오자. 지역별 체계를 확실히 해서 지역에서 확실히 준비할 수 있게 하자.

2) 어머니 큰잔치 총평가(제 6회)

- * 행사일: 1993년 10월 17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 * 행사장: 국민대학교
- * 주제슬로건: 엄마, 아빠 함께 만든 탁아복지, 밝게 자라는 우리아이들!
- * 참여인원: 부모/320 아동/320 교사/100 자활/60 기타/20
- 진행/60 (890명)

1. 목표

1년에 교사와 자모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인 어머니 큰잔치는 지탁연의 년 사업 중 가장 비중있고 커다란 규모의 중요한 사업이고 연합회 소속 탁아소와 지역, 각 지역과 중앙 등 연합회의 조직역량을 하나의 사업을 통해 점검하고 보다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탁아운동을 해 나갈것을 결의하는 한편 지탁연의 대중사업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번 어머니 큰잔치는 그동안 지탁연이 영보법 개정활동의 정당성과 상반기 활동의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자모대중들이 문화적 환경을 느끼는 가운데 대중역량 강화에 복무하고 아버지들의 참여를 통한 가족잔치로 마련하였다. 또 일하는 여성의 일반적인 정서와 생활을 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 이번 행사가 목표에 어느 정도 부합되었는가?

여성의 본질, 여성 억압의 성격을 통해 여성 일반의 문제에 접근하고자 했던 목표에 부합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당면 탁아활동의 핵심적 과제 일반 (법 개

정, 정책요구 등) 공유에 대한 측면에 봤을 때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

2) 내용과 채택한 방식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적당했는가?

전통혼례와 노래자랑의 경우 그 의미에 있어서 어머니큰잔치에 걸맞았는가에 대한 평가가 약간씩 달랐다.

전통혼례의 경우 나름의 의미는 있었으나 참석자에게는 단순 공유되었던 점, 노래자랑의 경우 집단적 발표와 출연의 프로그램속에서 개인 참여 중심이라는 한계가 있다.

3) 참여 주체들이 올해 행사 목표에 대해 인지하였는가?

올해에는 어머니 큰잔치 이전과는 다르게 여성의 본질적인 삶에 대해서 잡혔다. 그러나 교사들내에서는 뭔가 그간 싸움의 성과나 투쟁내용을 가지고 자모에게 얘기해야 할 것 같은 위축감을 가지고 대했다.

2. 주체

1) 준비 정도

.작년의 경우 7월 23일 지대의에서 중앙집행모임의 구성이 논의, 결의된 것에 비해 올해는 9월 2일 지대의에서 결정되었다. 집행모임은 작년에 비해 약 한달정도 늦은 시점에서 모였다. 준비모임의 구성이 늦은 것으로 인한 무리가 뒤따랐다. 즉 지역위원회의 상황을 중앙집행모임에서 점검하고 세부적인 준비를 하기 보다는 행사를 진행시키기에 바빴던 점 등이있었다.

그러나 짧은 준비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집행모임의 순발력과 성실성으로 예년수준을 넘어섰다는 평.

.또한 '서울 경인지역 자원활동가 대표자회의'를 통한 자원활동가 준비는 짧은 기간과 예년에 비해 적은 진행요원 등에도 불구하고 자체기획 (놀이터 등)부터 실행과정에 참여하는 등이 성과이다.

<지역준비>

.중앙집행모임이 꾸려진 후 지역준비모임이 구성되었다. 지역에서는 운영위, 집대표회의, 임원 자모회의 등을 꾸려 준비를 총괄하기로 하는 준비구조를 두었다.

. 그러나 준비구조가 기동적이지 못하고 역할 분담에서도 교사들은 무리한 일정, 관성적인 인식 등으로 인한 긴장감 저하가 지적되었다.

이로 인해 준비가 집행위원 개인에게 치중되고, 지역 준비과정 일체를 집행위원이 담당하여 인원이 많은 지역의 경우에는 당일 진행의 총괄이 어려움이 드러났다. 특히 중앙 집행위원이 지역대표와 긴밀히 결합하여 준비키로 하였으나 실제로 의미공유와 세부사항 준비에 있어서는 효과적으로 지역준비가 되지 못하였다는 작년의 평가를 볼 때 이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한다.

. 전반적으로 교사 주도에 의한 준비로 되어 자모들이 그 과정에서 소극적 자세를 갖게되었다. 그러나 지역에서 노래자랑의 지역 예선등 자모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 낼 수 있는 지역준비의 내용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실행한 안산지역의 경우에서 지역준비의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그러나 지탁연 사업이 너무 많으면서 지역내에서 어느 한 사업에 집중되기 어려움다는 지적은 다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즉 지탁연의 년중 가장 큰 사업을 준비주체만 바쁘게 뛰어다니면 되는 '그저 치뤄지는 행사 중 하나'로 여겨지게 했던 것이다.

2) 참여 정도와 참여자세

대체적으로는 참여인원이 적은 것이 지적되었다. 이것은 현상적으로는 예년에 비해 늦어진 준비 일정과 단순한 참여 권유작업 등의 결과이며 또 한편으로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들이 이속에 있다고 평가되었다.

즉 아주 크게는 지탁연 위상이 혼란스러워짐에 따른 교사들의 김빠진 모습이라고 진단하기도 하였으며

총래의 어머니 큰잔치가 지탁연의 '세력'을 집결하고 과시하는 것에서 가족 문화제의 위상으로 미세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잔치'를 어머니대회와 혼선하는 것이 있었으며 '자모들의 변화'도 있다.

그러나 '자모들의 변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황속에서 각 지역의 자모사업의 췌점들이 어머니 큰잔치로 표현된 것이라는 지적들이다.

즉 총래의 어머니 큰잔치와 같은 행사에 아이를 맡긴다는 이유만으로 꼭 참석해야 한다는 당위적 차원, 동원의 의미는 파기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3. 행사 준비 일정

- 중앙 - 9/2 지대의 (중앙 준비위 구성을 결의)
 9/3 서.경 자활대표자회의 (어머니큰잔치 준비위 꾸림)
 9/7 1차 중앙 집행모임 (기획초안 논의)
 9/14 2차 중앙 집행모임 (당일 프로그램 논의)
 9/16 지대의 (중앙집행모임에서 제출한 기획서 통과)
 9/20 3차 중앙집행
 9/23 서경 자활대표자회의 2차 준비회의 (실외놀이마당에 대한 기획)
 9/27 4차 중앙집행
 10/3 5차 중앙집행, 3차 자활준비회의 (행사용품 제작)
 10/8 6차 중앙집행
 10/12 7차 중앙집행
 10/13 4차 자활준비회의
 10/16 8차 중앙집행, 5차 자활준비회의

4. 행사 기획의 방향과 내용

1> 기획

기획팀을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올해에는 중앙집행모임에서 기획초안을 마련하였다. 가족문화제의 성격으로 변화하여 두번째 맞이하는 올해 행사에서는 지난해에서 평가, 제안되었던 지역발표의 고려, 문화경험 부여 등이 고민되었다. 특히 전통혼례, 노래자랑, 가장 행렬 등은 예년에 없던 프로그램으로서 처음으로 기획되어 진행되었다.

시기: 꼭 가을에 해야되는지의 지적과 자모, 자원활동가의 상황을 고려해 10월 둘째주는 고려되어야 한다. 추석 동계추전에 하자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조정: 연합회의 경우 9월 대토론회 준비와 겹쳐서 준비에 어려웠다.

자모들의 경우 집내외 대소사가 많았다.

각 탁아소의 경우에 가을철 공동행사 등과 겹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장소: 경인지역의 경우 너무 멀었다는 평가. (인천, 안산)

아이들 놀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부속 유치원 등이 있는 대학을 설정하자, 올림픽 공원 등에서 하는 것은 어떨지 등..

시설: 마이크 시설 미비가 지적되었으나 한정된 예산에서 불가피.

출연진 섭외: 행사 사진촬영팀 연락 잘못으로 당일 불참.

후원 : 후원단체가 해마다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지적.

일정 : 전체적으로 하루 일정 선정이 너무 빡빡했다는 지적. 개별 자유시간 등 이 없는 가운데 '전시'등의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무리. 조금 느슨한 일 정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

2> 프로그램 평가 (지역평가서의 내용을 요약해서 실음)

예년에 비해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새로운 시도가 돋보였다는 평이다.

. **개회식:** 교사축가는 좋았으나 연습을 많이 해 크게 부르자. 대외적 역할, 지위에 따른 홍보로 내빈초청도 권위있는 인사로.. 교사축가는 준비가 불성실했음을 반성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알고 있는 쉬운 노래로 하자. 많은 교사들이 있음에 놀랐다.

. **전통혼례:** 전통혼례의 내용, 의미부여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 진짜 혼례식이었으면 좋았겠다(합동혼례식이었다면 덜 소란스럽지 않았을까?) 난장판의 의도(성혼행진 후)가 잘 살지 못했다. 노천극장 앞에서 고기를 굽는 등 산만했다. 길 눈이 말씀도 길고 전체적으로 지루. 새로운 느낌. 노천마당 가운데서 하면 좀 더 잔치 분위기가 나지 않을까.

-> 전체적으로는 새로 시도한 전통혼례 프로그램이 기획의 의도를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인데 이것은 전통혼례가 자체가 가지는 지루함 등에 외부 대행사를 부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준비한 데서 오는 비전문성 등이 있기 때문.

. **노래자랑:** 본래의 의도가 퇴색된 감이 있다. 지역 장기자랑으로 변질되었다. 즉석 신청 등으로 하여 참가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산만했다. 참가기준 명확히, 기준에 맞게 참여시켜야. 자부 참여도가 높았다. 선물의 단가를 너무 낮게 책정했다. 전반적으로 재미있었다.

가장해려 : 주제(내용) 전달은 쉬웠으나 사전에 앞에 나가서 준비하는 관계로 자모들의 전체적 주제 이해의 기회가 줄었다. 지역들간 사전에 맞춰보지 못해 급기는 느낌이 있었으나 자모의 참여가 가장 돋보이는 부분. 마지막부분의 내용 차이가 없어 지루. 순발력있고 빠르게 진행, 흥미로웠다.

대동놀이 : 시간에 쫓겨 끝내는 분위기. 프로그램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흥에 겨울 것이다. 순서간 단절된 느낌.

기획전시 : 내용은 좋았는데 관심을 끌지 못했다.

교사들이 주도적으로 전시를 관람을 유도하는 자세 필요.

아동프로그램 :

* 놀이터 -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준비, 노력한 점 높이 평가. 그러나 아동 스스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적어 금세 싫증내었던 점 보완 요.

* 인형극 - 장소, 내용 좋았다.

그러나 상영중이나 시작 전 아동대상의 노래나 율동을 함께 하는 시간이 있었다면. 부모가 함께 볼 수 없어 아쉽다. 지역별로 나누어 본것 좋음. 상영횟수 늘렸으면 좋았을 것.

* 덩터 - 장소 부적당.

* 실내 놀이터 - 퍼즐, 인형, 동화책 등이 마련되어야

5. 홍보

(초청장, 포스터, 팸플렛, 플명카드, 지난해 비디오 시사, 대외홍보)

. 중앙, 각 지역에서 사전에 어머니 큰잔치의 의미를 충분히 홍보할 필요성 느낌. 외부 홍보의 효과 측정 불투명

6. 총평 및 제언

이번 어머니 큰잔치는

그간 5회까지 진행해오면서 지탁언의 전 사업속에 안정적으로 배치되고 중요한 사업으로 인정되었고

이런 안정적인 면이 갖는 부정성으로, 어머니큰잔치의 관성적 준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한다.

정리해보면 교사들의 긴장감 저하로 인한 참여인원 미흡, 조직화 실천사업의 미약 등이 지적되었던 지난해 평가와 같은 평가가 올해에도 연이어 제기되었다는 점, 또는 행사프로그램의 구성력과 연출력의 세련성, 전문성 제기 등과 일상적 문화사업, 문화소모임 등에 대한 고민 등도 지난 해와 같은 수준에서 제기되었다.

- 이것은 어머니 큰잔치가 효과를 가지는가 (또는 기대할 수 있는가)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어머니큰잔치를 왜 하는가?

왜 하는가?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탁아세력의 규합과 지탁언 조직화의 경로속에서 어머니큰잔치가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지 확인 작업 필요하며 (올해 지탁언 사업이 교사 중심의 사업이 많으면서, 일상속에서 자모들의 교양, 조직화, 단련되는 기회가 적다. 또한 앞으로 지탁언 교사들의 활동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등등) 자모조직에 대한 전망, 고민이 함께 되어야 한다.

즉 4회까지의 '어머니 대회'를 통해 각 지역의 투쟁과 일상활동의 공유, 조직화 사업에 대한 검토와 방안 모색 제기가 가장 큰 성과이자 과제임이 정리했다면 '어머니큰잔치'로서의 성격변화에 따른 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가족 문화잔치의 성격으로서 어머니 큰잔치의 형식에 따른 한계 - 어쩌면 이것은 과거 많은 운동집단이 가졌던 이념적 과격성으로 인한 규정이기도 할 듯 - 가 일단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 투쟁의 내용을 어떻게 '문화 기술'을 통해 세련되게 풀어가는가가 관건이며 이에 따른 경제적, 물적조건도 무시할 수 없는 지경이다. 솔직히 말해 우리는 문화적 역량, 경제적, 인적자원 등에서 모두 딸리는 입장에서 어떻게 어머니큰잔치를 욕심만큼 해결할 수 있는지가 고민이다.

그러나 사업을 '치루기' 이전에 각집, 지역에서는 변화된 자모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사업에 임해야겠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는다.

앞으로 사업에서 모든 것을 다 담으려는 욕심을 내지 말고, 한.두가지로 집약적 충분한 시간속에서 여유있게 진행해야겠다. (오전에 가장행렬, 오후에 대동놀이, 체육대회)

다음으로는 목표 수립을 어떤 형태로 모아 낼 수 있을지이다. 지대의 등에서 당면 과제 중에서 어머니 큰잔치의 목표, 주제 등이 잡혀야 한다.

특히 앞에서 제기한 대로 어머니 큰잔치의 주제, 위상을 명확히 하여 자리를 잡아가야 할 것이다. 1년의 가장 큰 지탁연 행사인 만큼 확실한 주제, 의의 설정으로 설득력있게 인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행사의 목표가 뚜렷하게 있어야 중심이 설 것 같다.

특히 올해의 경우 교사준비가 많았던 점은 자모역량 강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머니 큰잔치의 준비주체가 자모인가, 교사인가 등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수원

그렇다면 당위적 차원의 동원이 아닌 이를 위해서는 일상사업속에서 자모의 조직화 방도 (소모임) 이 계속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몇가지는 기획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 문화운동단체와 지속적인 연대와 교류가 전제된 상태에서 문화홍보간사의 문화 교육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연합회내 문화역량의 발굴 및 소모임 등의 활성화 방안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자모, 자부의 정서파악과 대안문화의 모색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3) '함께 가는 길,'

* 일정: 1.2월 합본호, 3월.4월.5월특집호.6월.7월. 8,9월 합본호

통권 14호, 올해 7권 발행, 현재 10.11월 합본호 준비 중

* 자료회원: 신청자 25명 중 6명 입금 (1년 3명, 6개월 3명)

* 발간부수: 1993년 5월 이후 외부배포량 포함 300부 발간

* 형식: 3인의 편집부가 기획, 원고 청탁, 작성, 편집의 전 과정을 한후 외부 인쇄로 월간 발행 (수련회가 있는 달은 두달 합본호로 격월)

* 내용 및 평가

소식지로서의 제 기능을 담보하였던가에 대해서는 애초의 요구자체가 '소식지'로서의 성격 - 연합회 활동과 지역활동의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위한 소식전달 주요 기능 - 에서 보았을 때에는 어느 정도 부합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편집부 내부에서 의식하는 의식하지 못했든지간에, 또는 점차 자리잡혀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필연적으로 내.외적 요구가 늘어나면서 '소식전달' 위주의 소식지에서 변화하는 것이다.

그것은 탁아활동이라 칭하는 포괄적인 내용을 충실히 담아내는 가운데 '탁아 운동가에게 읽히는 아동교육 전문 기관지'로서의 성격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 1> 예산의 안정, 확대가 필수적이다.
- 2> 기획력의 강화, 편집부원의 보강과 강화
- 3> 인쇄 세련성, 편집의 전문성 강화
- 4> 배포망의 확대와 유료독자 확보

4) 자활조직 -서울강인지역 자원활동기 대표지회의

* 일정및 내용: 신입 자활주체교육준비 (1월), 신입 자활주체 교육(2),
신입회원 교육에 관한 지침 (3), 어린이날 행사 준비(4),
자활가 전체 체육대회 (5), 자활대표합숙 준비(6),
자활대표 합숙과 하반기 활동논의 (7),
어머니큰잔치 준비 (9,10)
이월사업- 후임자선발,교육일정 논의 (11)

* 조직화의 주안점 및 평가

집단 자활단위의 책임자들에게 지탁연 활동과 행사에 대한 신속한 정보 공급과 교육, 자활단위 상황 파악을 통한 연합회에서의 지원과 관리가 주 목적이다.

매달의 회의는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한 교육과 정보 공급, 타 학교의 활동 사례 발표와 논의를 주로 하였으며 시기에 따라 행사준비, 진행 등이 첨가되었다.

이를 통해 책임자들에게 탁아활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넓히는 한편 책임자로서 자신감을 갖게 하여 원활한 조직 운용과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어느정도 맞아떨어졌다고 할 수 있겠다. 정기회의를 통해 만나는 자활책임자들은 서로간에 연대감을 느끼는 한편 대표회의를 통해 현장활동과 연합활동을 연결시켜 낼 수 있었다. 또한 연합행사에서 자주 만나는 일반 자원활동가들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자활대표자회의’를 통한 조직화는 책임자 한사람, 한사람이 단위로 돌아가 후배 자원활동가들을 교육하고 조직하는데 필요한 유,무형의 배려와 더불어 학교 단위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가 함께 이루어져야만 더욱 유효하다.

그러나 연합회 소속 회원 탁아소 자원활동의 내용들이 드러나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들만이고 자활조직에 관해 논의하는 구조가 없는 상황임을 볼 때 담당간사의 노력이 많이 요구된다.

이전에 자활조직의 역량 강화에 대한 나름의 문제제기와 감감증을 가지고 있었으나 현 수준의 자활대표자 회의를 유지, 지속시키는 것에 일단 의미가 있음을 밝히며 점차 경인지역 학교단위를 결합시키는 작업, 자활대표자들에 대한 교육의 강화 등을 제안하면서 평가를 마치겠다.

1993년 지역활동 총평가서

구로지역

1. 지역활동목표

- 1) 민탁연대를 강화한다.
- 2) 자모소모임을 구성하여 지역조직 토대 형성한다.
- 3) 지역위 구조 강화를 위해 지지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 4) 탁아교사의 자질 향상에 주력한다.

2. 각 분과 활동과 평가

1) 자모분과

가) 하반기 활동내용

- . 살기좋은 구로 여성회 사례 듣기.
- . 지역부인회 결성준비를 위한 주부대학 실시
(미래를 창조하는 자녀교육, 새로운 삶을 위하여, 사회절반은 우리의 몫, 환경문제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 지역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나) 평가

- . 상반기에는 약간 침체되었으나 하반기 들어서 지역전체를 바라보는 사고속에 지역 여성조직에 대한 고민을 하는 발전을 가져왔으며 93년 활동 목표에 충실했다고 할 수 있다.
- . 94년 자모분과의 과제는 개별 탁아소의 자모회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1년 공동계획안 작성, 자모회 활성화를 위한 논의 등)
- . 단위 탁아소의 자모회 활성화가 되고 지역자모조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전망을 가질 수 있었다.

2) 아동분과

목표: 올바른 아동관을 정립하기 위한 활동과 영유아 교육에 있어서 교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보한다.

활동내용: 가> 미술 교육 세미나 실시 나> 3.4세를 위한 교육활동 자료집 발간 다> 공동캠프 라> 교재 교구 만들기 마> 신문스크랩(읽고 토론)

평가: 유아활동자료집 발간은 큰 성과였고 내용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모임과 준비사항이 많아 힘들었고 앞으로 일상 활동 점검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다. 그리고 우리만의 교육내용, 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한 논의와 고민들이 필요하겠다.

3) 교사분과

목표: 지역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과 토론의 기회를 갖고 서로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활동 내용: 수지침 소모임, 신입교사 교육, 교사야유회, 체육대회

평가: 지역구조의 효율성과 교사들의 일의 과다하다는 점과 단위 일에 대한 역량강화를 바라보며 하반기 해체하였는데 분과활동이 하반기에 없어 지면서 지역에 대한 관심이 축소되고 교사들과의 만남이 적어지긴 했지만 효율적 일처리로 단위에 집중 할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내년에는 역량강화로 힘있게 가리라 본다.

.상반기 수지침 소모임은 지역교사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4) 법개정 분과

목표: 민탁모임의 강화

- .지자체에 적극적 대응
- .법개정의 내용 공유와 활동을 위해 교육에 결합하고 힘쓴다.

평가: 민탁회원 17명 확보, 힘을 기르는데 기본이 되는 긍정적 효과를 낸 한 해였으며, 개특위의 내용과 민탁의 논의가 낮은 차원이지만 분과전체 교사들에게 공유되기는 하였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분과와 개인교사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의 구체적 사업의 방침이 부재하였고 주체들이 지역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시키지 못하였다. 이후에는 실속있는 사업 계획과 힘있는 집행이 뒤따라야 하겠다.

5) 운영위원회

활동내용: 단위 점검, 분과 점검, 중앙논의 보고와 전달, 회원 동정 및 가입, 탈퇴심의, 월례회 준비와 점검, 행사주관, 지역연대활동, 자활 공동모임

평가: 운영위와 자모분과 내의 지역조직 필요성 토론을 하며 논의력을 높이고 내년 자모조직 운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서 바람직하다.

.운영위의 집단 지도체제의 역할이 자리를 잡지 못했고 각단위의 재정압

박으로 인한 운영불안에서 오는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 대안들이 있어야 안정적인 지역위의 구조가 될 수 있으며 지도력 개발을 위한 개인들의 노력과 교육의 기회 시간의 배려 등이 필요하고 논의 활성화 위한 준비주체, 즉 지역장의 반상근체가 꼭 실시해야 한다.

.구로지역위로서의 위상 정리와 교사들의 자발성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내용들이 고민되어야 하며 지역의 모든일이 전체교사에게 골고루 역분되어 함께 커나가는 지역위가 되어야 한다.

3. '94년도 사업 방향

.조직체계를 점검해서 효율화를 꾀한다.

.지역장이 분과장 회의를 함께하고 행사소위를 꾸려 행사소위에도 결합해서 운영위때 중요한 사항만 함께 정리해서 논의하고 분과장은 운영위에 결합하지 않는다.

.지역 법개정분과를 해체하고 1인으로 민탁과 중앙과의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아동분과의 질적 발전을 위해 분과와 전체교사들이 함께 공부하고 대안을 모색해 본다.

.교사들의 재교육과 신진교사교육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군산지역

1. 활동일지

1월 연계획

5월 어린이날 행사

교사교육: 언어교육에 대한 토론과 교재 만들기

6월 제1회 아동관 토론회: 규율과 규칙에 대하여

10월 자모들 계룡산 등반대회

제2회 아동관 토론회: 놀이는 좋은 노동의 준비다

11월 교사교육: 음력영역에 대한 토론과 교재 만들기

12월 교사교육: 미술영역에 대한 토론과 교재 만들기

94년도 계획과 교사단합 모임

2. 주요사업내용

1) 아동관 토론회

. 2차에 걸쳐 개최

. 지역내 민간보육시설의 교사들 간에 만남의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는 좀더 많은 교사들과 함께하기위한 방법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어진다.

. 원장과 평교사와의 연결고리(교사회)가 없어 모든 교사들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2) 교사교육

. 3회에 걸쳐 이루어짐

.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원칙적인 이해와 함께 현실에 맞는 교재 활용법을 고민하고 토론했다. 좀더 연령별로 세분화된 주제와 훈련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다. 앞으로는 규칙적으로 다양한 주제를 갖고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간의 교육방법에 대한 견해차이를 좁힐 수 있는 계기로도 작용

3) 분과활동

가) 아동교육분과

영역별 교사교육을 중심으로 활동

이해와 활용의 폭이 넓어짐. 적극적인 교류와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나) 자모조직분과

주체적으로 모이고 내용을 꾸리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자체내에서 어떻게 해야 참여율이 높을까 등에 대한 고민들을 해냄. 정기강좌의 내용과 강사선정이 잘 되어서 부담없이 고민을 이야기 할 수 있었다.

4) 총평

가)민탁연대의 기간세력을 확보해 내는데 역점을 두었다. 앞으로는 일정한 형식을 담아 다수의 민탁관계자들과 동시에 만날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아동교육에 관한 활동에 시기를 적절하게 배치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지속적인 필요성과 다양한 주제선정이 과제다.

다)교사들간에 각자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협력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매 사업마다 책임선을 따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라)교류하고 있는 민탁들에 자모회 조직의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조직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 앞으로는 구체적인 교류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마)이후의 과제에 대한 토론은 다시 논의하기로 함.

부산지역(하반기 평가)

1. 각 탁아소 평가

.아동(아동수의 변화, 아동관찰일지, 입소대상, 교육내용)

.부모(직업의 변화, 부모의 성향, 프로그램, 부모와의 관계, 부모회형태)

.교사(품성,조직-부탁위에 대한 견해, 역할, 처우, 갈등)

※개별교사의 한해의 활동내력과 앞으로 각오와 계획

.자원활동가(조직과 관리)

.후원자관리(재정관리포함)

※탁아소평가는 틀만 잡고 아직 마무리 못지음

2. 지역 활동평가

93년 목표와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를 점검해보며, 바르게 수행되었는 지 평가해 본다.

1)행사(5월 어린이날, 10월 공동나들이)

2)연대사업(걱정모임, 여성단체, 시민운동단체, 교육관련단체...)

3)조직

가)월례회의

마지막주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바꿈(탁아소를 돌며)

내용은 안전처리, 각 탁아소 한달 보고서 중심으로

나)임원회의

매달1회, 월례회의 전에 (분과장과 회장)

다)분과회의

아동교육분과

성과: 지역의 실정에 맞게 부족하나마 성실하게 유지되어 조직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계기가 됨

과제: 현재의 양성교육훈련생들로 구성된 아동교육연구부를 넓혀나가고, 부족한 부분들을 차근차근히 채워나가는 방향으로 나간다.

개정특별위원회

문제점: 근본적으로 개특위사업을 잘 몰라서, 회원들이 자기문제로 받아내지 못했다. 따라서 활동이 부신했다.

과제: 전회원이 인식 할 수 있게 하는 개특위장의 역할이 중요하며, 우리 탁아소들이 당면한 특수한 부산지역 무허가지역의 현 과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속에서 민간탁아소들과 만나 나간다.

3. 94년 계획

3.8여성제, 어린이날행사, 자원활동가 체육대회, 아동교육 실기강습회, 공동부모회, 10월행사 등

부천지역

1. 활동 목표

1)조직관리의 강화를 통해 부탁위의 결속력을 높이자.

-대표자 회의 강화:각 탁아소 회의를 통해 교사및 탁아소위 요구를 수렴, 집행하자

-월례회의의 내실화:교사교육을 강화하고 사업을 공유하는 역할을 하자.

-개특위 활동 강화:본과 사업중 개특위의 비중을 높이고 민탁연대 사업을 전개하자.

2)본과별 중점 사업 수행

개특위:민탁연대 조직, 지원확보 사업을 통해 법 개정 활동의 기반을 다지자.

교사, 자모 대상의 상시적 교육을 실시하자.

아동교육분과:교사교육및 학습을 통해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자.

조직홍보 분과:일상사업으로 자료정리 및 배포

신진교사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갖고 교사재교육을 강화하자.

2. 지역활동일지

1월 수련회

2월 신입교사 오리엔테이션

3월 수. 과학 자료집 교육

4월 보사부 지침교육

5월 민탁임원 선출, 지역 어린이 큰잔치

7월 시의원 간담회

8월 수련회

10월 어머니 큰잔치 참여

3. 주요사업과 내용

1)민탁연대사업-조직화 사업 (중구모임결성, 지구모임결성, 임원 선출)

2)지원확보를 위한 사업(시의원 간담회 개최-성과물로 조례제정 작업중)

3)지역 비영리 시설과의 연대사업-어린이 큰잔치 참가, 실무자, 시설장 수련회 참가

4. 개별탁아소 활동일지

아이사랑

2월 후원조직

3월 수익사업

4월 후원자와 함께하는 개원잔치

5월 이사

6월 개원잔치

8월 물놀이

9월 소풍

10월 견학

큰본이

2월 자모회(원비인상, 아동교육간담회)

3월 자모회(강사초청, 아동교육 강연)

4월 소풍

5월 회지발간

7월 물놀이

9월 소풍

10월 자모회(건강교육, 한의원 원장초청)

11월 자모회(신입자모환영식, 아동교육 간담)

5. 활동 평가

가)92년 하반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조직 결속력 약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 탁아소 교사회의 강화를 통해 교사와 탁아소의 요구를 조직적으로 수렴하고 집행하기 위한 단위로서 대표자 회의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나, 대표자 회의 자체가 실질적인 대표자로 구성되지 못하여 애초의 한계가 있었고 또한 이를 극복할만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나)상반기에는 비교적 교사 개인이나 교사회의 속에서 「부탁위」라는 틀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바탕이 미약하나마 깔려 있었으나, 중.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각 탁아소에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같이 나누지 못하였고, 탁아소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관성화되어 버렸다.

다)이 밖에 지역장의 지도력 문제, 임원및 중요성원이 제 역할을 끝까지 하지 못한 점, 양성교육을 받고 있는 교사가 있었던 점 등이 보조적으로 작용하여 하반기에 들어서서 거의 활동이 중지되고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에만 만나게 되었다.

라)또한 분과 활동은 개특위가 민탁연대 사업의 정책 및 실무 단위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했지만 민탁연대 사업이 일정하게 진전되어 모임의 틀을 갖춘 후에는 적극적인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

마)비영리 시설장 연락모임과 민탁연대 준비모임의 임원회를 통해서만 사업이 진행되었다. 일정정도 사업의 성과는 있었지만 앞으로 이 사업을 유지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비가 필요하다.

사)교육분과의 경우 상반기 초에 분과장이 탁아소를 그만두면서 신입교사들의 학습단위로 상정되었으나 초기의 열의와 의지가 지속되지 못하고 이를 이끌어내지 못해서 모임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개별교사들의 아동교육에 대한 학습 열의가 높았으나 개별교사들의 의지와 노력이 지속되지 못했고 명확한 과제 부과도 없는 상태에서 조직적인 성과는 부실하였다.

아)조직홍보 분과의 경우 초기에 분과원 1명을 두었으나 담당교사가 그만두었고 이를 대표자회의에서 그 역할을 받기로 하였으나, 앞서 말한 대로 대표자 회의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소기의 활동도 하지 못했다.

자)개별 탁아소 회의 내용이 주로 탁아소 자체의 운영문제 (재정, 아동교육 및 환경개선, 자모회 내용 준비, 탁아소 행사 준비)를 가지고 논의되는데, 부과되는 과제와 역할분담이 개별교사를 통해 수행되는데 그치고 부탁위 조직활동이 교사들에게 명확한 역할과 책임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임의적인 조직으로 그 위상이 떨어졌다. 교사들의 열의와 의지가 높았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었겠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탁아소간에 부탁위를 탁아소 협위체로 보는 시각, 교사조직으로 보는 시각, 탁아운동을 한차원 높여내고 지도해내려는 시각적으로 활동하였다. 앞으로 부탁위 내부성원과 각 탁아소의 입장이 보다 명확해질 때 부탁위의 위상도 분명해지고 활동내용도 그에 걸맞게 잡혀질 수 있겠다.

6. 중임사업에 대한 평가

가)각 지역의 총체적 요구로서, 탁아운동의 대의에 따른 활동으로서 법개정활동 및 제도개선 요구활동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활동의 성과도 거둔

반면, 교사로서의 요구및 개별탁아소 운영에서 빚어지는 여러가지 문제를 받아내고 사업화 하는데는 미흡하였다.

나)그 지점에서 지역사업과 중앙사업이 일정정도 괴리된 채 진행되었다. 지역사업도 개별탁아소 자체적으로, 교사도 교사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다)지대의가 1회는 지역중심으로 1회는 중앙사업중심으로 논의를 모아 사업을 해낸다는 회의진행상의 운영의 모를 피하기도 했지만 문제를 진단하고 방침을 세우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내지는 못하였다.

라)분과사업이 보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단위가 될 수도 있었지만 각 지역에서 분과 구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부분의 지역위 요구를 분과를 통해서 수렴하고 사업화 해내기에는 애초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아동교육분과의 경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몇몇 지역의 성과물(자료집 발간)을 보급하고 아동관토론회와 실기강습회를 통해 부분적으로 교사와 지역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업을 내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다. 앞으로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연간-월간 교육계획안이라든지, 지탁연 교육지향점에 의한 교육 프로그램의 생산, 적절한 프로그램의 배치, 각종행사 프로그램의 제공 등 아동교육의 체계를 확립해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아동교육의 질 향상은 1차적으로 교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때, 교사들의 기본적인 자질 구비를 위한 교육및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경력교사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는 집중교육이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등도 고민되었으면 한다. 각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교사들의 제충전에 대한 욕구는 다양한 내용을 함축하는 의미로서 교사들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데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성남지역

1. 평가에 앞서

이 평가서는 중앙지대의에서 제기된 사항과 93년 성탁협 활동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대안을 중심으로 사안별로 정리한 것으로 두차례의 성탁협 전체회의를 통해 정리되었다.

2. 평가 순서

- 1) 성탁협 의 구조변동과 활동 역량에 대해
- 2) 교사간의 문제에 대해
- 3) 자모회 운영에 대해
- 4) 탁아소별 재정운영 현황에 대해
- 5) 아동 교육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 6) 탁아운동에 대한 시각의 전면적 재검토, 경과조치 이후에 활동에 대한 전망

3. 평가 내용

1) 성탁협 구조변동과 역량에 대해

- .각집 대표로 구성된 대표자 회의를 강화하자.
- .경력교사가 탁아에 관한 전문역량화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 .현재 아동교육분과, 조직분과 체계로 되어 있는 분과 체계를 현재 성탁협 활동역량을 감안하여 효율적 구조로 대처하자
- .아동교육 강화와 함께 아동교육분과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 아동교육강화의 필요성이 왜 제기되는가? 탁아운동을 바라보는 시각, 탁아운동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탁아활동을 하게 된 동기(어떤 생각을 갖고 탁아활동을 시작했는가?)

2) 교사간 문제에 대해

- .교사의 처우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활동량, 활동시간, 활동비 인상 등)
- .현재 교사로서 나의 가장 큰 고민과 어려움
- 신진교사의 경우 경험이 부족해서 겪는 어려움
- 아동교육상의 어려움
- 건강문제, 교사들간의 관계문제, 자모들과의 관계문제 등이 제기됨
- .경력교사와 신진교사들간의 관계나 역할상 불균형의 문제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 경력교사의 경우: 탁아전문역량을 키워서 탁아운동발전과 탁아모델 창출에 기여하게 한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휴가제를 정착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한다. 평생직장화.
- .탁아소운영과 교사교육에 관한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 신진교사의 경우: 신진교사의 고민과 어려움을 최대한 배려하자. 경험의

기회를 다양하게 마련하자. 대화를 많이하자

- .경력교사와 신진교사간의 갈등: 경력교사의 경험적, 습관적 일처리의 문제
- 신진교사의 소극성과 의존성의 문제제기

3) 자모회 운영에 대해

- .그동안 자모회 운영에 대한 총괄적인 점검, 평가가 필요하다.
- 자모회의 목적, 목표, 내용, 운영방식, 현재 자모회 상태 등
- .현재 자모회 상태를 진단한다.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자모의식변화에 따른 원인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 .교사의 대처방식은 어떠했는가? 어떠해야 하는가?

——자모회 운영방식에 대해

- 자모회 내용의 참신함과 다양성을 피해야 한다.
- 아동교육에 관한 내용을 다각도로 준비하자
- 각종 소모임 형태로 자모회를 운영하자(직업별, 취미별, 신,고참별 분리 운영방식)
- 친목계 수준에 있는 졸업생 자모모임을 강화 활용하자.
- 모범적인 모델 창출이 시급하다.
- 자모조직화를 위한 교사의 자질과 전문역량을 키우자

4) 재정운영에 대해

- .비영리의 개념
- .현재 지역탁아소들의 경영에서 나타나는 문제
- 적은 수입, 규모의 영세성, 책임 경영의식의 부족, 교사활동량의 문제, 추가 자본 확보의 어려움
- .재정 문제 개선방안으로 보육료 현실화의 문제가 집중 토론됨
- 보육료 현실화시 자모에 대해 설득력을 가져야 한다.
- 보육의 질을 높이는 문제
-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문제
- 보육의 질을 어떤 수위에 맞출 것인가
- .기존의 운영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기에는 무리한 여건이 많다. 현실화시킬 수 있는 선을 조정하여 수용할 것과 버릴 것을 명확히 판단 시행하자.
- .국공립 위탁하는 방법 등을 통해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나 민간탁

아소를 유지하면서 개선방향을 찾을수도 있다.

.현재까지 수익사업이 갖는 한계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사업의 다양화 항시적으로 할 수있는 방법을 모색하자

5) 아동교육의 중요성이 왜 강조되는가?

.질높은 탁아서비스가 되어야 민간탁아소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보육료 현실화에 대한 필요성

.질높은 교사확보와 교사활동의 내용측면에서

6) 탁아운동에 대한 시각의 전면적인 재검토, 경과조치 이후의 활동은?

.탁아활동을 하게된 동기

아이를 좋아해서, 여성에 대한 동질감과 여성문제에 대한 고민속에서, 직장
탁아활동에 대한 계획을 갖고, 평생직장이라는 생각에서)

.활동교사간 의식의 차이를 극복하는 문제

.신중한 생각과 고민후 탁아일을 선택했으면

.탁아운동의 개념. 탁아를 바라보는 세 측면

.신고문제와 관련 경과조치 이후 활동 대안은

신고문제가 갖는 의미? (신고조치이후 활동평가를 중심으로
신고에 대한 입장을 재정리하자. 94, 95지자체를 바라보면서
신고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원칙만 제시)

재 논의하기로 함

수원지역

1. 분과활동평가

1) 아동교육분과

상반기 활동: 1년 계획안 작성, 각 탁아소 소개서 준비

하반기 활동: 분과원 축소로 교사들의 교육활동 참여부여(전교사가 교육계획안
작성에 동참하고 과제작성)

-이후 지탁연 중앙 아동교육분과의 강화뿐만 아니라 지역위 아동
교육분과강화에도 함께 공유하므로 적절한 역분이 필요로 한다.
특히 내년도는 연령별 교육(4.5세 6세)에 대해 깊이있게 고민해
본다.

또한 민탁연대시 아동교육프로그램을 통한 교류도 시도해 본다.

2) 개정특별위원회

활동내용-조사작업(실태조사)

교사제교육 2회실시

-중앙사업참여를 통해 개특위 사업에 대한 감을 잡게 되었으나 전교사가 참여
하는 확대기회가 부족하였고 전체 지역사업에 대한 구체적 사업 설정을 하지 못
함으로써 사업을 활기차게 하지 못하였다.

-앞으로는 지역대표, 개특위원, 지역위원들의 사업에 대한 전체 합의및 일 분
담이 필요하다.

-내년을 전망하건데 올해 사업의 이월 작업 및 조사작업을 벌여내야 하겠다.

2. 활동 총평기

-지역위원회 활동의 문제점과 이후 활성화방안-

1)주체 역량 평가

가)그간 지역내에서 나타났던 교사간 인간관계 문제는 여러가지 열악한 객관
적 조건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안정된 구조속에서의 활동만이 교사의 생명력과
활동성을 보장하는데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일의 양과 조건이 실제로 활동의 폭
을 축소화시켰다. 그러나, 활동가 집단이라는 의식 속에 일의 순서를 떠난 지나
친 배려 역시도 교사들의 철저한 자기관리를 안이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개인
의 노력, 열의만으로는 끈질긴 활동을 가질 수 없고 서로의 북돋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며 현재 펼쳐지고 있는 활동을 줄일 수 없는 현실에서는 전문적 역
할분담이 필요한 시기라 하겠다.

나)일의 효율적 운영으로 그간 정체되어왔던 탁아소운영을 점검해보고 중앙구
조와의 결합여부도 정확한 지역위 역량 진단을 통해 참여폭을 결정해야겠다.

2)자모조직

가)전반적인 자모정서의 변화는 올해사업의 능동적 대처를 요구했으나 교사
전체적으로 미흡했다고 보았다.

우선 그간 이끌어왔던 자모들의 모습에만 국한되게 사고함으로써 "원칙의 고
수"만을 고집하였고 자모들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내지 못하였다.

나)행사중심의 자모조직이 아닌 전문적 영역을 가진 자신있는 교사의 모습으
로 자모조직을 이끌어낸다.

이때 기본적인 바탕은 교사와 자모의 신뢰감 형성 및 친밀한 관계형성으로부터 시작되며 종일탁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공유가 필요하다.

다)안산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내년도 자모회 프로그램을 통해 활용해보자.

3) 운영

개별 탁아소 및 지역위 운영의 어려움

자모의 정서변화 및 사회인식의 변화에 따라 비영리 탁아의 개념의 모호성이 나타났다. 개별탁아소의 경우 지역의 개발, 집주인의 건물 사용목적, 주변지역 주민의 변화 등에 신속히 대처해 나가야 할 때라는 사실에 전체적으로 공유하였다.

자모가 교사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차츰 변해가고 있으며 탁아와 관련된 지역 단체나 후원인들의 경우도 새롭게 혹은 발전적인 운영의 형태를 요구하고 있다.

이때 문제는 탁아운영의 현실화 방안을 내년 이후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이며 수원지역의 경우는 한 곳만이 살아남아 있으므로 세력 확장의 문까지 짊어지고 있다. 우선 남아있는 한 곳의 탁아소만이라도 내년도엔 실정에 맞는 영유아 통합의 프로그램을 정확히 짜내고 지역내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전달하는 사업을 펼쳐야겠다.

4)전망

-이에 따라 수원지역은 앞으로의 사업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먼저, 새로운 변화에 민감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지니며, 지역내 탁아지지세력을 확보하고(담당주체 선정), 탁아소운영의 합리화 및 효율화, 경제성을 확보해 나가고(교사중심에서 지역내로의 경제적 문제해결을 확산), 새로운 탁아소의 설립 부분보다 기존 탁아소의 내용을 풍부히 하여 민탁언대를 통한 지역내 자기 내용성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교사의 전문적영역에 대한 구체적 고민 및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에 중요한 관점은 조건에 몰입되어 수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아닌 새롭게 우리의 조건과 내용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북부지역

1. 평가

1)조직 평가

가)월례회

-각집의 활동내용을 공유할 수 있어 좋았고 지역위원회 활동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

-안전토의 및 상정에 있어서 사전준비를 잘해야 했다. (임원회역할강화 필요)

-모임자체는 체계화 된 듯하나 새로운 교사들이 많고 교사들의 이해정도의 차가 있어 월례회의 진지성이 떨어지고 보고의 형식적 모습이 크다.

-탁아운동과 지역운동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는 자리로.

-올해는 신입교사들이 참여의 의의를 둔 소극성이 컸다. 월례회 위상을 높이기 위해선 밀착업이 필요하다.

나) 임원회

-구성원의 변화가 잦아 내용이나 체계를 잡지 못했다.

-임원회 강화가 월례회 강화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후 임원의 확충과 회의 구성원의 활동보장이 필요하다 (각집대표 +지역대표, 총무로 구성)

-내용 강화하자 (월례회 시간을 잘 활용키 위해)

다) 분과-별첨

-조직체계에 대해, 기본적인 탁아활동을 하면서 저녁시간에 지역위 활동 등으로 인해 교사의 수명이 짧아지는 문제가 많이 제기되면서 조직의 축소와, 가장 기본이 되는 조직은 그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논의됨

-회의시간에 대한 논의-조직을 잘 이끌고 싶지만 이젠 이전과 같이 탁아 끝난후 12시, 1시까지의 회의하는 모습은 더 이상 활동력을 갖게 하지 못한다는 결론속에서 전체 교사가 모이는 회의 이외엔 탁아시간 중 배려를 통해서 진행키로 함

-조직활동에 있어 현 탁아에서 오는 교사들의 체력과 시간등의 여건과 활동에 대한 열정 사이에서 교사들의 고민이 크다. 조건 개선 및 방안 필요

-조직분과의 필요성도 많이 제기되나 여건에 대한 고려도 필요-이전

교사들과의 연대 등 방안 필요

-모든 조직들의 활동내용은 중앙 안전처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2) 활동 평가

가) 지역위원회 월례학습의 경우, 교사 재교육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일정 (매월1회)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내용은 이전과 같이 교사들이 하고 싶은 내용을 선정하자.

나) 신진교사 교육을 강화하자 - 북부지역은 신진교사가 많은 상태이고 각 집 내에서 교육을 뒷받침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지역 차원에서 뒷받침해야 하며 (방안마련) 중앙에서도 조직분과 든지 어떠한 형태로든 뒷받침해 줘야 한다.

그리고 이전처럼 탁운이나 지역운을 목표로 들어오는 교사 외에 다른 것을 목표로 들어오는 교사들이 많다. 그로 인해 각 집이나 지역위 활동의 통일성을 가지기 어려운 모습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진교사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

다) 교사간의 인간관계 프로그램을 갖자 - 월례회에서 실행하는 다소 형식적인 모습이 많았으나 지역위의 권위 뿐 아니라 활동하는 교사를 잘 알기 위해서 환영회, 송별회, 생일, 교사 엠티등을 잘하자

라) 지역위 내 자모활동은 특별한 것은 없지만 햇님, 햇살의 경우 자모회를 구성하려고 하거나 또는 막 걸성한 단계이고 사랑방은 자모회 운영의 잘못으로 형태는 좋으나 교사가 자모에 이끌려 다니는 형편이고 둥근나라는 자모회가 초보적 단계고 안정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 지역내에서도 천차만별한 자모회 운영상태에 대해, 그리고 그 속에서 차이점과 교사들에 대해 다시 점검을 하면서 탁아소내 자모회의 위치, 자모를 어떻게 볼것인지, 자모회 운영내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재점검해보자.

자모교육의 강화는 제기되나 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가 있었으면 좋겠다. (지역과 중앙에서)

마) 이후 지역위 사업으로 민탁연대와 지원확보 싸움을 하자.

지역특성상 조직이나 내용이 취약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활동하기 보다 조직강화를 하면서 민탁연대의 시초를 마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해보자.

3) 지역대표의 역할과 지도력

지역대표가 지역의 사안을 전달하기 위해선 지역내 기본구조가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북부지역은 내년 대표자의 역할이 강조된다. -경력1년 이상교사가 전체의 2명인 상황

4) 중앙사업에 대한 평가

가) 93년 한해동안 중앙에서 많은 사업을 했지만 일상활동에 소홀한 감이 있었다. 지역편차의 존재라든가 자모조직에 대한 고민 등 지역내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할 것 같다.

나) 개특위나 민탁연대 사업에 대한 지역위원회의 부담이 컸다.

뭔가 해야하는 당위감 속에서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서 지역의 여건이 못따르는 중앙사업은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역을 활성화시켜야 하며 그것을 위해 중앙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구체적 방안은 제시 못함)

다) 지역위 고민을 전문적으로 받쳐주어야 한다.

안산지역

1. 조직활동 평가

1) 활동목표에 따른 평가

가) 변화된 주, 객관적 상황에 맞는 대안의 부재로 교사들 침체

-교사들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중요성은 인지하였으나 당면한 일의 처리로 전문성 확보의 시간투여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과감한 역분과 시간배려가 중요한 원칙으로 대두된다.

나) 여태까지의 활동의 성과 (보육시설의 양적증대, 국가의 개입)를 챙기고 앞으로 우리가 쟁취한 성과속에서 이후 우리의 전망이 서야한다.

-쟁취한 성과는 분명히 존재하나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존립을 위협하는 실정이다.

다)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조직의 문제, 결혼, 임신, 출산으로 인력부족현상이 생기는데 이에 대한 대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것에 대한 파급은 교사들의 연령과 처지가 비슷한 상황이어서 수년 간 계속될 것이다.

라)이밖에도 다른 여러가지 상황으로 '93조직역량은 변화를 요구하는 시기로 인해 새로운 대안을 요구받게 되었다.

안락위의 가장 큰 장점이 되는 안정된 조직구성과 조직원의 신뢰와 친분을 바탕으로 정확한 현실 파악과 대안마련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통합의 전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기도 하다.

2)주체역량강화

-취업을 감소나 주변에 같은 운영의 탁아소들이 많아진 점 등으로 자모의 이동이 잦아졌다.

-아동수 감소, 자모수의 감소로 사업의 지속성을 꾀할 수 없다.

-'93 집중사업이 민탁연대 등 교사 위주의 사업들이 많아 자모사업에 집중되지 못했다.

-자모들의 의식변화 (중산층의식, 좋은 시설 선호, 다양해진 취미 등)를 감지하지 못하여 기존의 사업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들을 낳았다. 변화에 비추어 자모사업의 목표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모들의 처한 상황(생활적 요구)에 근거하여 사업의 동기 유발을 이루어내야 한다. 교사들이 준비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모들이 생활속에 무엇을 답답하게 여기고 알고자 하는지를 파악하고 사업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예를 들어 생활강좌 중 부부대화법에 대한 자모들의 기대가 높음 등)

-자모의 의식화내용은 공동육아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자모 자부가 실천할 수 있는 내용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 자녀들을 돌본다는 것이 계급운동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계층에 공동되는 일반적인 의식화 (특히 탁아문제나 부모교육)의 내용 마련이 되어야 한다.

-일상적인 부모와의 대화, 상담, 가정방문 등으로 탁아소 교육내용과 가정에서의 교육내용의 일관성을 가져와야 하고 부모의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의식화 사업에 반영

-조직화 단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변화된 의식은 실천되어야 하고 실천의 장은 마련되어야 하고 파급되어야 한

다.

-지속적으로 탁아소가 책임질 수 있는 2차 조직이 필요하며 기존의 단체와의 기계적인 결합이 아닌 구체적인 사업속에서 지역모임과의 결합, 기존 모임의 적극적 결합속에서의 강화도 생각할 수 있다.

3) 개특위 사업 및 민탁연대 (구조 보고 별첨)

가)법개정사업

-법개정사업을 당면한 중요사업으로 인정은 하였지만 특수한 사업의 성격에 비춰보건대 농친점이 오류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 작업이 이용자와 안산 전체시설로 확대되어 이 설문 분석을 기초로 간담회가 열리고 민간보육시설 연합회 준비위까지 구성된 것은 커다란 성과이다.

-중앙의 공청회/대토론회가 교사나 민탁관계자 중심으로 진행되기에 따라 전체 교사가 공유하지 못했고, 자모가 개정차원에서 전혀 함께 하지 못한 것은 민탁연대로 제도개선의 주체가 중심 이전 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탁주체와 개특위 간의 관계 및 역할에 대한 재규명 및 개특위 해소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민탁연대

-개특위와 주체들의 유기적 결합으로 민탁모임의 성과는 그 기초를 차근차근 다져나가고 있다.

-간담회 이후로 '연합'건설에 대해 원장들 스스로가 강하게 느끼게 되고 '연합건설'의 중심에 서부지역 모임이 자리잡게 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원차움에 있어 안락위의 지원자체가 민탁지원의 전부인양 행정부처에서 여기고 있으므로 이것을 꺾어야 하며 안락위가 보육료를 현실화하여 정부의 낮은 지원선을 높여야 할 자기 혁신의 과제가 제기된다.

-사업자체가 일부 주체와 다른 민탁과의 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서 보고가 자칫 소홀해지면 전체교사의 관심밖의 사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전체 교사가 알 수 있는 보고와 문제, 성과의 공유가 중요할 것이다.

4) 자활의 지역차원 관리

-「과」단위에 대해 전체교육을 함에 있어서는 안락위 차원에서 강사가 파견

되고 전체 자활교육을 실시한 것은 잘 되었지만 일상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학생운동에서의 자활과 현장에서의 자활은 지금 상황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탁아분과(학교)가 유명무실해지면서 단일과에서는 과 학생회의 강화추진이나 인자발굴, 소모임 강화 등으로 탁아활동을 바라보기 때문에 탁아소와 자활이 지속적으로 연결되기 보다는 학교중심적으로 활동이 연결되는 면이 강했다. 인근 지역의 전공과 관련된 자활연결이 탁아활동가의 재생산이나 학생들의 욕구를 채워주고 탁아소는 활동의 장이라는 상호보완적 관계가 바람직하다 하겠다.

5) 민주단체와의 연대-특히 지역여성모임과의 내용적 결합에 대해서

-성급한 조직 건설보다는 기초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안락위가 안산에서 유일하게 여성문제(의 일부)를 해결하고자 활동하는 단체이지만 여러가지를 고려해 보전대 시급하게 대중적으로 뿌리내지 못한 조직을 건설할 수는 없다. 따라서 대중의 요구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가운데 내용적 결합을 거듭함으로써 한계 극복 및 대안을 내와야 한다.

2. 총평 및 대안

1)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투쟁의 방향성이 모호해짐에 따라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력했던 한 해였다. 하지만 주체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제기되는 문제의 해결 및 대안마련에 노력했었다.

객관적 요인들과 맞물려 주관적인 주체의 상황도 하반기에는 열악하게 되어서 이것은 획기적인 혁신을 요구하는 것이다. 관성화된 활동을 되돌아보고 변화된 현실을 인식하여 새로운 전망 및 대안모색만이 우리들의 활동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2) 따라서 94년도 계획은 혁신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실에 맞지않는 원칙들은 과감히 폐기해야 하며 닦쳐있는 현실도 인정하자. 평가를 통해본 대안은

가) 교사들의 전문성 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모든것을 해야한다는 초조감을 버리고 중심되는 사업을 올바르게 수행한다는 원칙으로 역분도 정확히 해낼수 있는 일을 중심으로 되어야 하고 전문성의 내용확보를 위한 시간배려도 있어야 한다.

나) 자모의 의식화 조직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세워나간다.

자모의 시시콜콜한 문제까지 해결하면서 의식화를 피하지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자모들의 이기로 인한 실망뿐이었다. 이것은 변화된 대중의 정서와 어울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든 것을 이루려는 노심초사형의 사업작풍에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생활적 요구로 자모들의 답답증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과 그로인한 동기유발과 탁아소의 교육내용을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의식화 내용이 필요하다. (부모교실, 부모참관교육 등)

우리가 대수롭게 여겼던 일상 생활의 갑갑함을 건드려주는 생활강좌가 얼마나 많은 관심으로 자모들에게 다가가는지 생각해 보자

다) 적극적 활동은 안정된 상황에서만 할 수 있다.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교사들은 다른 것에 우선하여 수익사업에 모든 기력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실제로 수익사업, 재정사업기간에는 모든 사업이 일시중지된다.)

또한 현재와 같이 낮은 보육료는 부모들의 지원싸움의 의지를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고 민탁의 시설지원요구가 우리로 인해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보육료의 현실적 인상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의 지원요구투쟁을 해소하는 의미가 아니다.

<안산지역 개정특별위원회 평가서>

1. 목표

-경과조치 마감에 대한 대응 마련의 해-

- 1) 법개정의 전면화
- 2) 지원의 확대, 아동/시설 지원의 확대
- 3) 탁운 세력의 확대 강화

2. 성과

-지역내에서 92년의 경우 1인 체제에서 2인을 내온 것 자체가 성과이다.

위원이 생기면서 사업이 준비되고 빠르게 진행되었다. 즉 상반기에 각집에서 개특위원을 마련하면서 개특위 사업이 구체적이고 각집 실정에 맞게 마련되었다. 그리고 실태조사 등 기본사업이 가능했다.

-기본작업인 조사작업이 왕성했다.

지역내 작업으로 1월의 안락위 이용 가구실태조사, 3-5월 민간시설 운영실태조사가 진행되었고 지탁연 차원에서 대도시 중심의 보육시설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

- 각각의 조사된 현황에 근거하여 인식의 전환과 사업가능했다. 특히 민탁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전체 보육시설의 공통의 문제를 담아낼 수있는 간담회와 연합회 결성 준비 등의 사업이 가능했다.
 - 지원요구와 관련하여 민탁에 대해서도 일률적이지 않고 차별성에 따라 다양한 결합이 가능했다.(예, 전체 민탁에 대해서는 원칙적 의미에서 시설에 대한 지원 즉 운영비 지원을 요구하고 초록, 꿈나무 등에 대해서는 안락위 수준의 간식비 지원 요구함)
 - 개정안의 마련과 검토로 법개정의 방향과 원칙 즉 개정싸움의 성격과 내용에 대한 합의가 가능했다.
 - 2월의 교사월례회, 법대 사회학과의 자활교육, 자모회 통한 교육, 민탁에 대한 교육등 개특위사업(제도개선 요구토장)의 내용에 대한 공유와 심화가 이루어졌다.
 - 민탁주체 모임과의 관계설정 과정에서 개특위의 위상 확립과 사업내용의 마련 가능하였다.
- 구체적 제도개선 싸움에서 민탁주체가 주요할 수 밖에 없으나 기본사업의 마련으로 민탁사업 가능하도록 지지하는 연구단위의 성격과 역할로 개정안 마련, 지침의 사전 검토, 각종 실태조사, 제도권 싸움에 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함.
- 3. 오류**
- 언초 법개정을 주요사안으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투쟁이 없었다. 처음단계에서 시기에 대한 판단과 법개정싸움의 성격에 대한 인식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다. 지침분석이나 정책에 대한 즉각적 대응과 일상적 대응이 요구되고 지원확대 요구가 상반기에 걸쳐 중요하게 부각됨에 따라 시기에서 밀려나면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 또한 1년의 사업이 중앙과 지역 모두에 걸쳐 기계적으로 배치한 모습이 보였다. 이는 외부세력과의 연합에 의해서 인적인 면과 국회 일정 등 행정상 일정과 절차 등에 대한 정보부족에도 기인한다.

- 개특위 사업에 대한 자모들의 공유와 참여를 촉구할 수 있는 사업의 마련이 부족했다. 개특위 사업의 참여로 자모는 개 시설의 주인의식에서 탁아복지에 대한 권리로 의식고양이 될 수 있다.
- 상반기 활동에 비해 하반기 활동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원인으로서는 개특위원 간 결합력을 높여내지 못한 주체의 문제와 더불어 사업이 지역위 위주에서 민탁으로 중심 이동되면서 기존 개특위의 위상과 역할이 변해야 하였다.
- 제안으로 개특위만의 위상 역할 전환이 아닌 전체의 구조와 단위간의 위상 역할의 조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개특위 해소에 대한 대안과 민탁주체의 중요성 부각된다 하겠다.

< 민탁주체모임 평가서 >

1. 목표

- . 지원확대-아동지원선 확대, 간식비 등 운영비지원요구, 위탁전
- . 아동관, 탁아관의 합의, 공동행사의 개최 및 참여
- . 자모사업의 교류와 공동행사 모색
- . 민탁모임의 위상과 역할의 설정 및 강화, 보육위원회와의 관계 정립
- . 공적 대응위한 활동(시의원 작업 등)과 정보교환 등

2. 주요사업

- .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요구
- . 교사교육(아동교육 등 강화)
- . 모임의 대상 확대

3. 평가

- 지원확대의 요구과정에서 탁아의 공공성이 합의됨
- 초반의 사업의 중심을 지원요구로 판단하였으나 용도변경으로 이전되면서 운영의 편차가 있는 전체 민탁이 공동의 위기와 요구갖고 결합하게 되었다.
- 지역 내에서 안락위의 위상을 높여낼 수 있었다.
- 서부지역 모임이 전체 민탁모임에 대해 책임감과 지도력을 갖추었고 전체모임내에서 인정받음
- 이후 서부모임의 운영은 전체가 지역모임으로 편성될 것을 전제로 계속한다.

- 앞으로 구체적 사업의 기획이 요구되나 일단 지역내 평교사 모임이 시작된 것은 성과이다.
- 간담회와 민탁 첫모임에서 민탁의 참석율이 저조하였다.
원인은 일단 각 시설 특히 놀이방이 여력이 없고 또 홍보도 부족했다. 점차 확대해 가는 과정이어야 하나 이미 연합회 준비위의 명칭, 사업 수행 등의 계기속에서 방문과 접촉 바람직하겠다.
- 시의원 작업이 지속되지 못하였다.
탁아에 적극적 활동을 보일 의원과의 연계가 중요하며 그에 따른 적합한 인물 물색이 요구된다.
- 자주여성 등에 의회 모니터 제안, 시의원 결합 높여낼 수 있는 방도강구

대구지역

1. 사업목표

1) 개별 탁아소의 안정화

- . 아동교육 강화
- . 탁아소 제정의 안정
- . 교사의 자격 시설보수의 문제 영보법 개정
- . 영세성 극복

2) 자원봉사자 조직의 확대 강화

재생산 구조를 만들기 위한 단계 설정

3) 행사계획

- 3월 소식지 발간 (3.6.9.12)
- 5월 어린이날 행사 수익사업
- 7-8월 여름캠프, 지탁언 수련회
- 10월 가을 운동회
- 12월 송년잔치
- 94년 1월 동계수련회 및 총회

4) 활동 일정

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참가

(대구에서 3인 교사 참석)

나) 5월5일 어린이날 행사

일시: 93년 5월 5일

장소: 대구대학교 교정

주최: 전교조 대구지부, 참교육 학부모회, 공부방, 대탁연, 그외 제 단체

평가 : . 아동프로그램이 마련되어서 좋았다. (예: 인형극, 도깨비방)

. 전반적으로 산만한 분위기였고 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 탁아소 자모들간의 모임시간은 좋았지만 넉넉치 않은 시간과 내용이 알차지 못했다.

. 교사들의 아동의 문화, 교육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참여해내지 못했다.

다) 여름캠프

일시: 1993년 8월 12일~13일 (목, 금)

장소: 고령 들꽃마을 사촌교회

참석: 4개 탁아소 74명 참가(아동33명 자봉29명 교사 8명 기타4명)

설문지 분석: (자활24명 참가)

. 놀이프로그램에 대해

긍정: 좁은 공간을 벗어난 새로운 경험제공

부정: 산만하고 연령에 따른 고려가 없었고 형식적인 느낌

. 자활교육

긍정적 측면: 단순자활의 차원에서 활동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부정적 측면: 짧은 시간에 발제내용의 이해가 잘 안 되었고 타자활간의 교류의 필요성 제기

. 전반적 진행: 시간이 느슨하기도 했지만 잘 진행되었다.

. 좋았던 프로그램: 인형극 > 자활교육 > 물놀이

평가 . 전체 교사 자활의 인원부족(준비팀의 역량부족)으로 진행이 매끄럽지 않았고 각 준비에 따른 인원배치가 효율적으로 되지 못했다. (특히 식사 시간)

. 아동놀이 진행에 있어서 교사와 진행자간의 공유가 잘 되지 않아 상황

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자활교육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았고 교육토론 사례극 등에 자활들이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않았고 사전에 탁아소에서 자활에 대한 교양이 잘 되지 않았다.

.탁아소별로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교사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 어머니 한마당

일시: 11.7일

장소: 경북대 구학강당

내용: 4개 탁아소 자부모 자활 문화행사로 노래자랑 대회 13팀 출연, 흥겨운 잔치, 영보법 전시, 자료물, 상품 골고루

마)송년잔치 12월 중예정 각집 자활 대상

바)수련회: 94.1월

사)지역 총회: 94.2월

2. 활동평가

1)구조

월례회: 2월~8월까지 매월4째주 목요일

아동관토론회(2회):4.5월

가)월례회

평가: 사전에 안전상정이 안 된 경우 각 집별로 충분한 논의 검토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용을 담은 깊이 있는 논의가 잘되지 않았다.

월례회의 성격상 중부한 논위가 어려운 점도 있어서 다른 모임(분과모임, 아동관토론회)에서 찾아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임이 잘되지 않았다.

나)아동관 토론회

평가: 월례회의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아동교육에 따른 각집의 현황과 각 집별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낼 수 있었다.

다)분과활동

평가: 교육, 조직분과에서 계획안이 나왔으나 분과활동이 원활하지 못했다.

이유로서 교육분과장의 경우 3개월의 병가로 활동중단(분과원 확보 못

한 상황)

아동관토론회 2회 실시 이후 캠프활동으로 중단

계획안 자체가 무리한 안이 아니므로 하반기 동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라) 소식지: 3월에 발간

마) 전국회의

지대의: 매월 세째주 화요일 12시 대점 민청 회의실

지역보고, 중앙보고, 전체안전, 토론

영보법의 현안 논의, 보사부간담회 결정, 민탁연대 방안 논의

평가는 「함께가는길」 참고

개특위:매월 둘째주 목요일 1시 대전 민청회의실

각 보고, 안전토의

평가 「함께가는 길」 참고

아동분과:3,4,5월 참석, 이후 불참석

3. 총평...연간 목표에 따른 평가

1)개별 탁아소 안정화 문제

현재 신고된 곳은 배꼽마당뿐 교사자격문제 해결안됨. 재정상태는 대부분 현상유지되나 달구벌이 이전준비와 운영비 부족으로 어려움

2)자활 조직 강화확대-상반기에 개 탁아소 자활은 안정화되는 분위기이나 대학 별, 대탁차원에서 묶어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되지 못했다

4. 1994년 행사및 사업계획

1)사업계획 . 재정지원활동-각 탁아소 신고, 지역사업

. 아동교육 전문성확보-아동관 토론회, 공동건축 프로그램

. 조직-각탁아소 대표자 모임(정책제안)

새 교사 확보 후 분과 조직

. 교사 확보방안 마련

. 교사 자질 향상과 친목을 위한 엠티 활성화

2)행사

3월 교사 엠티

5월 어린이날 행사

- 7월 수련회
- 8월 캠프
- 10월 어머니 큰잔치
- 12월 송년잔치
- 년 2회 소식지 발간

중부지역

1. 지역활동 내용

1) 활동일지

- 1월 동계수련회
- 2월 어린이큰잔치
- 7월 상반기 결산오티
- 8월 하계수련회 소모임 '시사회'구성
- 9월 교사단합을 위한 북한산등반 공연관람
- 10월 어머니 큰잔치
- 12월 93총회 및 오티

2) 각 분과 활동내용

가) 아동교육 소모임

- 3월 '미운 아이 딱 하나 더 주고'토론
- 4월 환경자료제작 어린이날 행사
- 5월 환경자료제작 문제행동관찰
- 6월 문제행동사례별 관찰(각집 진행) 방학통신문제작(또래놀이방)
- 7월 '더러운 일남이'인형극 자료 제작
- 8월 음률지도 자료 제작 (자료집 제작 예정)
- 9월 '잃어버린 장갑'인형극 자료 제작
- 10월 '꼬부랑 아기 돼지'인형극 자료 제작

나) 시사회

8월에 구성. 9월부터 한달에 2번씩 정기적인 만남 속에서 비디오 테잎 감상, 모두 5편의 영화를 보고 감상문을 정리 보관함

2. 활동평가

1) 각 분과활동평가

가) 목표 .분과체계강화

.교육의 질과 수준의 향상

.지역강화

나) 평가

.분과체계의 안정. 분과를 통한 교류로 활동의 틀 마련

그러나 중앙분과와 연결되지 못한 점, 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를 하지 못해 아쉬웠고 시간적 배려의 절실한 요구가 필요

.공동 교육 주제를 설정함으로써 교육내용 교류가 용이해짐. 그러나 평가서가 생활화되지 못해 일이 중복됨

.분과활동이 전체교사와 공유되지 못할. 활동후 함께 평가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 교사재교육에 관한 것은 추후 평가

2) 시사회

목표: .회원의 요구와 흥미에 의한 다양한 문화매체의 접촉

.교사간의 활발한 교류와 공감대 형성에 따른 지역위 강화

평가

.비디오 테잎을 이용한 영화보기를 활동의 주된 내용으로 선택함으로써 장소,시간에 대한 부담감이 감소되었고 회원의 요구와 흥미를 충분히 채울 수 있었다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선택함으로써 영화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혔다.

.격주 모임이 꾸준히 지켜짐으로써 '시사회원으로서의 우리'로 잡아가는 과정은 만들었으나 비회원을 고려하는 장치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3. 활동총평

93중부지역의 목표는 '지역위의 안정화'로 설정했고 모든 활동의 근간에 있어 이 목표의 실현을 염두에 두고 각 행사나 모임을 구성하였고 그에 따른 사업내용으로 마련된 것이 소모임의 강화와 교사간 유대의 강화였다.

이런 목표와 사업속에서 '93년 중탁위의 활동을 평가해볼때 우선은 전교사가 긍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먼저 상반기 오티의 결과물로 '시사회'라는 소모임이 구성되어 교사간의 친목 도모와 각 집의 교류에 도움을 주었고 '아동교육

소모임'은 분과장을 내지 못하는 상황속에서도 꾸준히 자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내실을 기한 모임이었다.

이것은 전년에 비해 크게 달라진 지역위 사업활동이 부재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안으로 탄탄한 기반을 다졌다는 일례인 것이다. 이런 안정화의 기본적인 힘은 1년간 교사의 교체가 없음으로 인해 교사간 공감대의 형성이 훨씬 수월했고 그에 따른 지역위 모임속에서 논의의 폭이 넓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 지역위의 안정화를 토대로 '93년 한해에 이루지 못한 여러가지 대외활동에 힘을 모으고 그에 따른 지역위 구조의 변화도 요구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아쉬운 점으로 남는 민탁연대의 사업을 논의만이 아닌 실천의 장으로 옮겨야 할 때임을 전교사가 공감하였다.

더 나은 지역위 활동의 내용마련을 위해 안정적인 교사진의 확보, 각 집간의 원활한 교류, 전교사의 공감대 형성은 '93년 한해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활동의 힘이 되어야 함을 중탁위 모든 교사가 인식하는 자리로 총회를 마무리하였다.

광주지역

93년은 광탁연의 활동이 민간탁아소 연대의기초를 다지는 해로 연대사업(지침서 설명회, 1,2차 아동관토론회, 설문조사등)을 많이 펼쳤다. 그리고 방일의 기회가 2번이나 주어져 국제적 교류가 이루어진 해이기도 하다.

93년도 목표를 보면 . 아동교육에 대한 전문 증력 갖추기

- . 민간시설의 지원확대
- . 탁운세력 확장을 위해 민간탁아연대의 강화
- . 자모, 자활조직관리 강화

1. 사업 및 본과활동 (하반기 활동 중심으로)

1) 가을 운동회(10.17)

장소: 광주 가톨릭 신학대학교

내용:엄마,아빠만 참석하여 축구경기(오전)

미니올림픽, 시상식

자원활동가,탁아소 자모,자부 50여명이 참석 즐거운 하루를 보냄

2) 놀이방협회모임(9회모임)

월1회 놀이방에서,식당에서 모임. 2회 모임은 광탁연,보육사업 지침서 설명회,교수초빙. 아동관 토론회를 같이 함
보육사업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 제대로 교육이 안되어 있고 주로 현안 문제(보육료,신고의문제)에 대해 논의

3)광주 전남 여성문제 특별 위원회

2개월에 1번씩 모임을 가졌으나 7월 총회 이후 월1회 모임을 갖음
중앙위원(광주 전남 여성단체 10여개소)자문위원(9인)으로 구성
각단체 현황보고와 매 식 사건,행사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4) 아동분과

목표 : .올바른 아동관을 정립하자

- .아동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자
- .교사 아동 자모와의 삼위일체 교육을 실시하자
- .아동분과모임을 정례화,내용을 채워내자

행사 : 1월 일본보육소 견학

4월 놀이방협회와 아동관 토론회

5월 어린이날 행사 (교육대학교). 5.17시민놀이 한마당 참가

6월 일본 오사카 보육연수(6월1일~30일,2명 참가)

7월 여름캠프

8월 일본연수보고회

9월 전남대 인형극 공연 관람

조선훈 일일 보육 참가

놀이방협회와 교사교육 세미나 갖음

10월 광탁 가을 소운동회(가족과 함께) 카톨릭 신학대학

평가 :

-매달 교사교육실시 아동교재교구 제작 아동관토론회를 통해 올바른 아동관을 정립하기로 했으나 주로 행사위주의 모임이 많은 탓에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4월,9월에 있었던 놀이방협회와의 아동관 토론회 및 교사교육은 내용면에서나 놀이방협회와의 연대부분에서나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 계기로 지속적인 만남이 될 것 같다.

-아동분과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했으나 주로 광탁연 모임으로 대체했다. (도담도담과 우리동네 두 곳밖에 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굳이 따로 만나지 않았다) 하반기에 교사가 바뀌고 휴가중인 교사가 있어 모임 갖기가 힘들었다.

-어린이날 행사를 통해 타 단체와 좋은 유대 관계 및 광탁연 홍보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일본보육연수를 통해 보육운동의 거시적인 안목을 갖게 되었다. (일본연수생이 내년 초 올 예정)

-어름캠프때 장소가 좋지 않아 프로그램 진행과 물놀이 하는데 애를 먹었다. 좋은 장소 설정과 아동분과 및 교사들의 적극적인 캠프준비가 요구된다.

-가을운동회는 좋은 장소 설정 및 가벼운 프로그램으로 가족들이 즐거운 하루를 보내는데 최상이었다.

2. 활동평가

1) 아동교육에 대해서는 공개강좌로 2회 실시하고 내부교사교육도 실시하였으나 체계적인 교육이 되지 못해 아쉬웠다.

2) 민간시설 지원확대 부분은 구립형 사랑의 놀이방으로 지정된 우리동네 아기 등지가 92년에 이어 지원을 받고 있고 93년부터는 민간시설 지원하겠다고 약속(아동별 지원)

3) 민탁연대에 대해서 올 광탁사업의 주요사안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연대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놀이방협회의 가입으로 놀이방협회의 운영문제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놀이방이 있는데 이들과 운영문제 개선을 위해 앞으로 한 단계 높은 고민이 필요하다.

3. 광탁연 활동의 문제점과 이후 활성화 방안

1) 구조의 문제-놀이방협회와 지속적 모임을 같이 해왔는데 놀이방협회의 구조, 운영에 대해 좀더 적극적인 고민과 문제해결을 위해 놀이방과의 만남을 지속해야겠다. 이후 광탁연과 놀이방 협회, 이 두 구조를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가가 고민

2) 재정문제-광탁연 재정이 현재 회비, 후원금, 행사 잔여금으로 운영을 하고 교사 1인 광탁연 반 활동으로 활동비가 미지급 상태에 있어 광탁연 자체 수익

사업이 요구되어지고 앞으로는 회비가 탁아소별이 아닌 교사별 회비 납부와 후원자를 더 확보해야겠다.

3) 교사교육(활동가교육)

탁아활동가로서 어떤 역할 임무를 해야하는가에 대한 자체교육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자기 전망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 분과활동 강화

대전지역

1. 활동일지

2/26 즐거운 개원 (신탄진 북상동)

3/24 전체교사회의

4/12 교사 재교육(탁아운동론)

4/29 전체교사회의-교사교육과 아동교육분과를 교육분과로 통합
개특위-'올바른 보육사업 수행을 위한 제안서'문사위 의원에게 발송

5/10 교사재교육(노동의 가치를 아는 교육)

5/4~5 어린이날 행사-샘골, 어린이집에서 여러가지놀이. 지역아동대상으로
즐거운, 대청댐, 수익사업및 어린이날 나들이

6/초순 민간보육시설 방문

6/26 대전지역 여성정책 공개 토론회(어민회 주최)

7/5 전체교사회의-토론회평가, 재정문제 해결방안

7/지탁연 설문조사 실시

7/31~8/1 지역위원회 수련회-지역위원회 회칙검토

지역위원회 조직 체계 전망

교사교육(품성에 대하여)

9/6 전체교사회의-분과별 하반기 계획(교사 교육 강화, 교재교구 연구, 민탁연대를 구체적 사업으로 발전하여야 등의 내용)

9/20 교사재교육(아동발달단계에 따른 교사 지교)

10/7 전체교사회의-각집 상황보고

임소대상과 보육료 수준 논의

11/12 교사재교육(교사들 교재교구만들어 발표하기)

11/19 대전민간 보육시설 연합회 창립

11/22 지역위평가 및 전체교사 회의

2. 주요사업 평가

1) 어린이날 행사

섬굴, 즐거운 의 공동사업으로 마련하고자 했으나 거리의 문제와 즐거운이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각 집의 행사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어린이날 행사를 올바르게 정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 대전지역 여성 정책 공개토론회

민간탁아와 교류를 내오고 연대의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대전민간보육시설연합회 창립(11/19)

대전지역 전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고 사전작업(시의원)을 하지 않은 것은 오류

타단체(어민회)주최로 열린 행사로 보육사업에 대한 공개토론이 부족하였다.

3. 각 분과활동 내용 및 평가

1) 교육분과

아동교육과 교사재교육을 연구하고 월1회 아동교육내용과 교사 세미나, 독후감 발표 등의 내용으로 활동

평가 -교사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올바른 아동관을 가지는 기초를 마련함

-공동행사를 내오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사모임, 교사재교육의 일

정한 틀을 내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지역위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임

-즐거움(영아)과 섬굴(유아)의 상황이 같지 않아 아동교육의 내용설정과

교육설정, 교육계획안 작성이 어려웠음

-개교사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였음, 교사들의 독후감발표가 지속되면 각

교사의 고민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배려도 할 수 있을 것임

2) 기록위

영유아 보육사업지침 검토(3월)

민간탁아사업에 중점(5월)-대전여성정책공개토론회(6월)

지탁연설문조사(7월)-하반기 대전지역 설문조사 계획

평가-개별 사업이 특화되어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점차로 민탁연대의 기틀을

마련하였음(대전 민간보육시설연합회 창립-11/19)

-하반기 지역 설문조사를 계획하였으나 준비주체, 조건(시의원과 함께 하는 것)이 맞지 않으면서 이루어지지 않음

인천지역

1. 활동목표에 따른 평가

1) 조직역량의 강화

-93년 상반기 인탁위 회장의 병가로 인한 공석이 있었고 이후 조직부장의 사임, 조직적으로 중심이 없는 불안정한 한해였다.

-조직적으로 문제점들에 대해 전회원들의 상기 부족

-대표자 훈련구조(오티)가 정기적으로 마련되어 상시적으로 논의 평가되어 교사 이동 및 각 어린이집의 변화되는 내용들을 개별적 처리가 아닌 모임에서 뒷바침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대표자 회의에 충실한 어린이집은 각 집에서도 연합활동이 원활하나 아닌 곳은 연합활동 내용의 인식이 결핍되었다.

-대표자가 자기의 활동이나 회의보고에 대해 일방적이거나 무시적 태도에 대한 대안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

... 전체임원회의나 대표자 회의에서 집단적 해결을 모색해보자

2) 주체역량강화

-자모들의 의식변화와 많은 수의 어린이집 운영의 문제로 자모사업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많았다.

-갓은 자모이동 및 임원진 자모들로 인한 지속적인 사업 고민이 단절되므로 이러한 점들에서 오는 교사 의욕 상실

-자모들의 의식변화에도 불구하고 2.3년전의 방식으로 우리들의 요구(행사, 수익사업)만 주장한 지금 결과에서 오는 시행착오라 판단됨

-수익사업이나 행사 재정부담에서 벗어나 실질적 교육으로 변화시키고 질문에 대해 고민하면 보육료 현실화가 가능(보육내용의 우수성 확보)

-사회변화속에서 교사들의 헌신적인 면은 인정하지만 재정이 안정된 곳, 시설

환경이 좋은 곳 등을 선호하는 자모들에 대한 사업부분에 충분한 논의와 대안이 마련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설문지 조사등 현재 자모들의 요구사항, 정서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마련 내부모임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은 이젠 무리가 따른다. 좀더 넓게 생각하여 연대단체 또는 지역사업을 고민하는 단체와 함께 풀어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들의 전문성 확보도 요구되어 진다.

3)민탁연대

인탁위는 탁아운동속에 민간보육시설연합회란 대중조직을 만들었다. 93년 한 해는 인탁위 자체 강화작업과 민보련은 회장, 총무, 구대표를 통한 사람 중심의 사업내용이 되어졌다. 따라서 민보련과의 연대활동에서 적극성은 상실되었지만 나름대로 이를 올 해 연대 사업의 성과로 본다.

<이에 따른 문제인식과 대안>

인탁위 회원 탁아소는 육아의 사회화라는 명제 아래 운영구조의 차별성이 당연히 있으며 집의 각 교사들은 계속적인 조직 강화속에 관리 되어진다.

이때 일반 원장들의 사유재산 욕구로 인한 기본적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를 어떻게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낼 것인가가 또한 과제이다. 그리고 아동교육의 끊임없는 요구가 되어지는 (민보련)평교사들을 어떤 식으로든 싸 안을 것이 요구된다하겠다.

여기서 우리는 민보련 회원 전체를 육아의 사회화로 가계품 의식화하기에 성급함이 앞선다.

앞으로 과제에 대한 대안들을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함께 풀어가갈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대표자=원장체계가 93 하반기 부터 일치 되었다. 대표자들은 집 강화 다시 말해서 각 집 교사의 집내 역할이 주어지며 대표교사의 활동등이 배려되어야 한다.

...활동내용중 연대사업에 적극적으로 고민한다.

민보련 임원 구 단위 구조에 참여하여 적극 활동한다.

아동교육연구부를 전공자 중심으로 활동 강화한다.

2. 총평

현재 모든면에서 침체되어진 상황이었고 탁아소 제정, 교사, 자모, 운영등 끊임

없이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한계점까지 온 것 같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갖고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들의전문성확보가 요구된다.

더 이상은 경력교사는 물론이고 신진교사들의 상실부분이 있어서는 안되며 질적인 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94년에는 인탁위 조직 강화에 중점목표를 두며 올바른 탁아소 운영에 있어서 보육료의 현실화 등 재논의가 반드시 되어져야 한다.

보육료 현실화시 자모들에게 확실한 근거마련을 제시해야 하며 예산에 있어서 (지원금 확보)공통된 합의하에 운영을 해야 할 것이다.

<아동교육부 평가서>

1. 활동목표에 따른 평가

- 일상활동을 점검해내는 일은 할 수 있었으나 교육내용을 확산하는 작업이 안되었다.
- 교육에 대한 필요성인식과 새로운 활동을 시도했다. 교육부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방향설정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다.

2. 사업평가

-월례회의 내용기획이 좋았다.

- | | |
|--------------|-----------|
| 1)수,과학교육 | 2)아동미술 지도 |
| 3)인형극 제작과 실제 | 4)전달강습회 |
| 5)음률지도 | |

-활동에 대한 만족감이 없었다.

-공동행사(어린이날, 캠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못했다. 내용을 채울려고 노력했다.

3. 중앙과의 관계

지역활동보고서를 받을때는 각 지역의 상황을 알 수 있어서 좋았으나 점차 흐려졌다. 아동관토론회의 기획이나 내용은 좋았으나 조건상 참여할 수가 없었던 점은 아쉬웠다. 중앙의 내용을 전체교육으로 해서 가능하면 전체교사가 참여할 수 있게 했으면 한다. 가능하면 지역순회를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의

입장을 꾸준히 연구해내고 정리해서 확산 보급하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할 것이며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연구되어 현장 활동교사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4. 주체평가

모임시간이 잘 안맞음에도 불구하고 모임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각집에서 1인씩 참여하고 신진교사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새롭게 배울려는 의지가 있었으나 각 집에서 전체교사와 공유해 내는 일은 어려웠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하여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할 시간이 없는 것과 다른 안전에 밀려 교육에 대해 집중 논의가 안되는 것이 안타깝다.

5. 영아분과와의 관계

내용이 달라서 분리를 했으나 3,4세에 대한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6. 민탁연대와의 관계

민탁연대 부분에 있어서 분과원이기때문에 연대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적인 부담을 주며 바람직 하지 못하다. 조직화하려는 사고를 갖고 연대를 해야한다. 구성은 올해 교육부원과 의욕있는 교사로 일상활동 지원과 아울러 아동교육에 대한 집중고민 알 수 있는 단위 였으면 한다.

7. 총평

아동교육을 강화해내려는 시점에서 전체의 조직구조의 발침이 필요하다.

1994년도 활동 전망

1. 활동 방향

1993년은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탁아제도가 정착해 나가는 초기에 「육아의 사회화」의 올바른 실현(제도적 구현)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민간보육시설의 공적 재정을 확보하려는 일련의 사업들을 감당하였다. 이를 위해 중점사업으로 법개정사업이 있었고 또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민간보육시설의 운영현황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일정정도 성과를 얻어낸 한 해였다.

그러나 총평가 작업을 통해 나타났듯이 작년의 사업에서 조직 내적 공유가 매우 희박했다는 것과 또 개별 탁아소가 당면한 문제가 위급하기에 이에 대하여 조직적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함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내부 문제 처리를 중심에 두면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외적 사업을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운영, 재정, 교사, 자모 등 개별탁아소 혹은 지역위원회가 안고 있는 기본적인 현안에 대해 조직의 중지를 모아 새롭게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논의를 집중하고 실행을 감수할 구조가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조직발전위원회 등을 두는 것이 좋겠는데 이는 기존의 교사, 조직 분과의 연장선상이나 논의의 범위는 전체적 차원에서 조직내부를 진단하고 변화를 시도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평가에서 제기된 신진교사 교육의 문제는 중앙차원에서 회원가입 교육과 같은 성격으로 부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 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앙은 여태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이러한 기초위에 이후 사업을 진행해 나가며 이제 지자체 국면과 결부되어 올 해는 본격적으로 지역사업 강화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구조는 지역활동 지원을 강화하며 나아가 먼밀한 교류를 통해 지역의 편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작년의 활동을 통해 조례제정 시도의 가능성이 보이고 민탁지원의 (미소한)근거를 확보하였으며 민

탁연대를 통해 일정정도 지역사업을 벌일 기반이 조성되었기에 이를 지역실정에 맞춰 사업을 배치하고 한 터이기에 이를 기반으로 지역사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아동교육의 사업을 일정정도 가시화시켜내야 할 것이다.

아직 우리의 준비정도나 조건이 미약한 처지지만 탁아전체 상황이 이미 질 논쟁을 수반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명확히 판단하는 작업과 다른 부분과의 관계를 조명해 내는 일, 교육의 질적 강화를 위한 그간 사업을 더욱 체계화하는 일, 지역 아동교육분과 스스로 교육의 질적 심화를 위해 자체내 연구계획을 잡아내고 심화시키는 것과 이를 전교사에게 확산하기 위한 중앙사업 배치, 중앙차원에서는 분과에서 제기된 교사연구모임(아동분과), 아동교육발전특별위원회등의 논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등을 검토 마련하고 민탁연대의 방법론을 고민하는 것등이라 하겠다. 이는 조속한 성과를 내기에 급급하여서는 안되며 다만 그간의 우리활동을 보다 객관적으로 드러내놓고 현단계 교육전반을 진단하는 가운데 우리의 장기적 계획을 마련하는 가운데 서서히 실현할 것이라 본다.

넷째, 법개정사업 및 지원투쟁을 일상사업으로 전화하면서 그 활동의 축을 지역으로 이관해 나가는 것 등이다.

이는 중요한 사업이긴 하나 그간의 축적된 역량을 기반으로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역량에 걸맞는 구조를 편성하고 여기서 내부 정비 및 강화를 중심에 두면서 활동의 수위를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결국 94년도의 활동은 기존의 중심사업을 일상적 사업으로 전화하고 내부의 당면 문제를 특화시켜 중점화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업방식은 지역사업이나 교육사업이 조속한 성과를 거두기에 어려울 것이므로 장기적 차원에서 계획을 마련하고 차곡차곡 역량을 쌓아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94년 사업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당면한 내부문제를 조직적으로 해결해 나간다.
- 2) 지역사업 활성화를 꾀하고 중앙사업은 이를 위한 지원체제로 돌입한다.

3) 아동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활동을 담보해 나간다.

4) 법개정 및 제도개선 사업을 일상사업으로 전화 실시한다.

2. 구조 조정 시안

1) 지역대표자회의

지역 운영위원회나 집대표모임을 민탁주체로 단일화 한다.

지대의는 민탁주체모임과 그간 지대의의 역할을 병행한다.

2) 아동분과

다른 사업이 지역으로 중심이동해 나가는 것과의 관계를 살피는 가운데 중요 하계는 확대된 사업에 대해 중지를 모아나가야 할 것이다.

3) 정책소위원회 - 해소

4) 개정특별위원회 - 해소 이 후 내용은 지역대표자회의로 모은다.

가칭 제도분과를 신설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지역 역량과 현안(운영난)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이중 논의구조의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지역대표자회의의에게로 이관함이 현실적이라 판단된다.

5) 조직분과

재신설한다. 그러나 활동 내용은 그간 논의 수준이 아니라 조직내부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새로운 시도를 꾀하는 단위로 설정한다. (필요하다면 「조직발전위원회」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도 있겠다. 기간은 신축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

6) 집행위원회

회장: 상근체제 재검점 (이 후 상근체제가 갖는 장점과 불합리성)

부회장: 반상근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한다. 본 회의 경우 부회장의 역할이 조직 발전에 큰 힘이 되었다. 그러나 상당정도 무리가 따를 것으로 판단되나 재정의 문제, 중앙 구조 축소지향, 지역 강화 등을 고려하여 폐지하기로 한다. (하지만 부작용을 대비하여 과도기 및 임시조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다.)

강 령

1. 우리는 기층 기혼 여성과 아동의 권리와 복지향상을 위해 매진한다.
1. 우리는 이념적, 제도적으로 육아의 사회화가 보장되는 사회를 건설해 나가는데 앞장선다.
1. 우리는 조직의 민주와 통일을 기반으로 하여 대중을 주체로 세우는데 기여한다.
1. 우리는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이룩하는 데 복무한다.

회 칙

- 회칙 제정 1987년 6월 (1회 임시총회)
 제1차 개정 1988년 3월19일 (3회 정기총회)
 제2차 개정 1989년 3월12일 (4회 정기총회)
 제3차 개정 1990년 2월25일 (5회 정기총회)
 제4차 개정 1991년 1월 5일 (6회 정기총회)
 제5차 개정 1992년 1월 4일 (7회 정기총회)
 제6차 개정 1993년 1월 5일 (8회 정기총회)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회는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소재지는 경인지역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각 지역에서 운영되는 비영리 민간탁아소의 연합체로 탁아연령 아동의 올바른 양육과 일하는 기층 기혼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주요활동)

본회는 전 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의 활동에 임한다.

1. 민주적인 아동교육 확립
2. 기층 기혼여성의 자주적 단결을 위한 교육, 선전, 문화활동
3. 민간 비영리 탁아소의 자율성 확보 및 탁아환경 개선을 위한 제반 활동
4. 탁아교사의 자질 향상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제반 활동
5. 탁아법 개선 등 올바른 탁아제도 확립을 위한 제반 활동
6. 조직의 확대 강화와 관련 단체와의 연대 활동
7.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 2 장 회 원

- 제5조 (자격) 1. 정회원 : 지역사회에서 비영리로 운영되는 민간 탁아소와 실무자를 정회원으로 한다. 단 3개월 이상의 탁아경력을 지닌 자에 한한다.
 2. 준회원 : 3개월 이하의 경력을 지닌 자와 특별한 사정으로 탁아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
 3. 특별회원 : 본 회의 목적 및 사업에 관심있는 사람은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 (가입과 탈퇴)

본 회의 가입과 탈퇴는 각 지역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지역대표 자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7조 (권리와 의무)

본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정회원은 동등한 발언권, 표결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본 회의 목적과 취지에 따른 제반 활동과 지역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해야 한다.
3. 정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소정의 규정에 의거하여 권리의 일부를 제한한다.

4. 준회원과 특별회원은 본 회의 목적과 취지에 따른 제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징계)

1. 본 회의 목적을 위반하거나 결의사항을 위배하였을 시는 지역 대표자회의의 결의를 거쳐 징계에 처한다.
2. 징계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본회는 지역대표자회의의 결의로서 징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 (징계의 절차와 종류)

1. 회원의 징계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다.
2. 징계받은 회원이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3. 징계의 종류는 경고, 정권, 제명으로 구분한다.

제 3 장 조 직

제 1 절 총 회

제10조 (구성)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 (회기) 본 회의 회기는 전년도 11월 1일 부터 10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 (소집) 1. 총회의 소집은 정기화 임시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지역 대표자회의 3분의 2 이상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이 목적 사항을 명시한 소집요청서를 연서날인하여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3조 (회의 성립과 결의)

1.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2.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3. 다만 정관의 변경과 임원 불신임은 정회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임무) 총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 보고 및 결산 보고
2. 감사 보고
3.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4. 정관 심의 및 개정
5. 임원 선출
6. 필요한 기구의 설치 및 해체
7. 임원의 징계 및 복권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 회의 발전에 필요한 활동

제 2 절 이 사 회

제15조 (구성) 본 회의 이사회는 탁아에 관심이 있는 인사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16조 (임무)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행한다.

1.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관한 방향 제시
2. 본 회의 재정 및 운영 지원
3. 이사장 및 이사 선출

제17조 (회의) 이사회는 연 1회 이상 이사장이 소집한다. 단 본 회 회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활동 내용을 보고한다.

제18조 (이사장)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한다.

제 3 절 지 도 위 원

제19조 (지도위원) 본 회의 총회의 결의에 의거하여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제 4 절 지역대표자회의

제20조 (구성) 본 회의 지역대표자회의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각 지역 위원회 대표로 구성한다.

제21조 (회의) 지역대표자회의는 월 1회 이상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22조 (임무) 지역대표자회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발전에 따른 제반 운영사항 논의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처리 및 결정
3. 각종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책위원회 등 각종 위원 선임
5. 예비비 사용 승인 및 예산 항목 집행액 조정에 관한 사항
6. 회원 징계 및 복권에 관한 사항
7. 임시총회 소집 요청 심의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 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결의

제23조 (지역위원회 대표)

지역위원회 대표는 각 지역에서 선출된 1인으로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 5 절 집 행 위 원 회

제24조 (구성) 집행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및 각부장으로 구성한다.

제25조 (소집) 집행위원회는 회장이 필요로 할 시 또는 집행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시 소집한다.

제26조 (임무) 집행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및 지역대표자회의 결의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 수립 및 건의
3. 본 회 일상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4. 총회 및 지역대표자회의에 상정할 안건 수립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6 절 지 역 위 원 회

제27조 (회의) 지역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지역대표가 소집한다.

제28조 (구성) 지역위원회는 활동지역을 근거로 모든 회원이 각 지역위원회에 소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 (임무) 각 지역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가진다.

1. 지역위원회 대표 선출
2. 각 탁아소가 지역내 연대를 통하여 탁아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3. 지역내 다른 단체와의 연대활동을 한다.

제 7 절 부 서

제30조 (부서) 본회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부서를 둘 수 있다.

제 8 절 임 원

제31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명
3. 회계감사 약간명

제32조 (임무) 1. 회장의 임무 : 본 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제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3. 회계 감사위원 : 본 회의 재정 지출과 회비 집행상황을 감사한다.

제33조 (임원의 선거와 임기)

1. 본 회의 임원은 회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9 절 사 무 국

제34조 (구성)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간사로 구성된다.

제35조 (임무)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행한다.

1. 사무국장은 사무국 운영을 총괄하여 사무국을 대표한다.
2. 간사는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각 부서활동의 전문적 역할을 담당한다.

제36조 (임면) 사무국장과 간사는 집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지역대표자회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임면된다.

제 10 절 재정사업국

- 제37조 (임무) 1. 본회는 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재정사업국을 둔다.
2. 재정사업국장은 재정사업의 운영을 총괄 책임진다.
3. 재정사업국의 구체적인 운영내용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 4 장 재 정

- 제37조 (내용) 재정내용은 자체 회비와 후원 회비,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38조 (관리) 1. 사무국장이 수납, 출납을 관리하며 회계사항을 보고한다.
2. 출납은 회장의 승인을 받는다.

부 칙

- 제1조 (통상관례) 본회의 회칙에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2조 (시행) 본회의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9회 정기총회

회칙 개정안

1. 개정 사유

- 1) 탁아운동의 조건이 변화하는 추세에 있어서 조직의 확대, 교사 혹은 관심있는 사람들을 수렴해 내기 위해 최소한의 원칙만 가시화시켜 놓는게 좋을 것 같다. 따라서 강령을 잠정적 폐기하고 이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목적에 삽입한다.
- 2) 현재 탁아소 중심의 조직에서 개인회원, 자료회원 등 다양한 형태의 회원을 확보해 내기위해 이를 특별회원으로 포괄적 규정을 한다.

2. 개정안

- 1) 강령을 잠정적으로 폐기한다.

2) 제 2 장 총 칙

제 3조 (목적) 본회는 각 지역에서 운영되는 비영리 민간탁아소와 탁아 교사의 연합체로 탁아연령 아동의 올바른 양육과 일하는 기혼여성의 지위 향상, 탁아교사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여 올바른 육아의 사회화가 실현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 2 장 회 원

제5조 (자격) 1. 정회원: 지역사회에서 비영리로 운영되는 민간 탁아소와 실무자를 정회원으로 한다. 단 3개월 이상의 탁아경력을 지낸 자에 한한다.

2. 준회원: 3개월 이하의 탁아경력을 지낸 자에 한한다.

3. 특별회원: 본회의 목적 및 사업에 관심있는 사람은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신.구 지역 대표자 명단〉

	구대표	신임대표
북부지역	김선지(동근나라)	미정 김선자
동부지역	조용란(오손도손)	김명숙(개나리동산)
중부지역	김언희(또레)	박선희(또레)
봉천지역	정은진(봉천동애기방)	미정 유임
구로지역	김명신(튼튼이)	박성희(구로어린이집)
안산지역	임남희(진달래)	유임 박금희
부천지역	최순옥(튼튼이)	미정 김희연
성남지역	권금숙(푸른솔)	미정
인천지역	전신경(무지개)	유임
수원지역	이기원(옹기종기)	지언(옹기종기)
대전지역	권오원(샘골)	유임
대구지역	안경숙(배꼽마당)	미정
부산지역	강애란(우리아가동산)	이원경(아기자립터)
전주지역	오춘자(금임)	미정
경주지역	박말신(도담도담)	유임

〈결 의 문〉

오늘 우리는 1993년의 활동을 마감하고, 1994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 해에 임하는 우리의 결의를 다지려 한다.

우리는 작년 한해동안 안팎으로 계속되는 양질의 아동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자모들의 정서변화, 개 탁아소 운영의 현실적 어려움, 민간탁아소연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발빠른 정책대응, 법개정 활동 등으로 우리 활동에 있어 새로운 변화의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는 일련의 활동과정에서 민탁연대를 통한 새로운 세력확보작업과 보다 질 높은 아동교육의 담보, 정부의 탁아정책으로의 우리의 요구반영 등의 성과물을 쟁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성과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탁연 소속의 교사들은 그간의 활동과 그에 따른 성과를 전체가 공유하지 못한채 변화하는 객관적 정세로 인하여 탁아 활동 및 개인의 전망을 올바로 내오지 못하는 모습으로 활동에 임하게 되었으며, 재정.운영상의 현실적 어려움, 전보다 위축된 자모회 활동 등 그간 누적되어온 문제들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였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더이상 지친 어깨로 모든 것을 관망해서는 안되는 시기에 와있다. 설사 1993년 한해가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만들었던 시기였다 할지라도 새롭게 시작해야 할 1994년은 그 원인분석과 함께 대안을 만들고 그에 따른 활동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자, 이제 우리가 지냈을지 모를 관성적 자세와 나태함, 무기력감에서 벗어나 과학적이고 진취적인 활동가의 자세를 지녀야 할때다.

고인 물은 반드시 ^{43기}바뀐다.

각자 한사람 한사람의 발전이 곧 지역의 발전이요, 지탁연의 발전임을 각인하고 선배활동가가 땀흘려 뿌려 놓은 '육아의 사회화'의 새길을 힘차게 건설해 나가자.

전국 탁아활동가의 단일 조직인 지탁연의 깃발 아래 지금까지 일궈 놓은 성과물을 모아 보다 가까워진 육아의 사회화와 통일세상의 그 날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자.

1994년 1월 4일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 지탁연 활동 일지 ♠

〈1월〉

- 4일-6일 93년 겨울 수련회
- 8일 자원 활동가 신년 회의
- 13일 확대 개특위
- 14일 서울, 경인 지대의
- 15일 여언 확대 정책협의회
- 20일 서울 개특위
- 26일 대선활동 평가회
- 27일 서울개특위, 교육연구부
- 28-29일 기사련 수련회
- 28일 교사조직분과
- 29일 정책연구부
- 30일 자활대표자회의, 보육시설개원을 위한 설명회에 참석

〈2월〉

- 1일 집행위
- 2일 여언 총회 참석, 아동분과회의
- 3일 서울개특위, 지방지대의, 서울시보육위원회 회의
- 4일 자활대표자회의, 정책소위, 교육연구부, 정책연구부
- 5일 사회복지예산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사대위) 회의
- 8일 집행위, 조직분과
- 10일 개특위
- 11일 도시빈민연구소 토론회 참석, 정책소위
- 12일 93년 자원활동가 차기 대표자회의, 교육연구부
- 13일 지대의 합식
- 15일 보육위원 모임
- 16일 아동교육분과
- 17일 개특위, 여언 특별사업운영위원회

- 18일 서울경인지대의
- 19일 여언 정책과사업위원회, 교육연구부
- 22일 지방개특위, 조직분과, 보육위원모임
- 23일 지방아동교육분과
- 24일 서울개특위
- 25일 정책소위
- 26일 여언 대표자회의, 조직분과
- 27일 교육연구부
- 〈3월〉
- 2일 여언 특별사업운영위원회, 조직분과, 아동교육분과
- 3일 1차 정치토론회
- 4일 서울경인지대의, 사대위회의
- 5일 자활대표자회의
- 6일 교육연구부
- 8일 여언 3.8여성대회 참석
- 10일 서울개특위
- 11일 정책소위, 지방개특위, 집행위
- 12일 교육강좌강사모임, 정책연구부
- 13일 교육연구부
- 15일 교육강좌 개강식, 조직분과
- 16일 지방지대의, 아동교육분과
- 17일 아동관 토론회 개최, 어린이날 행사준비모임, 개특위
- 18일 서울경인지대의
- 19일 대표자회의, 교육연구부,
- 19일-21일 새쌍둥이 어린이집 이천기금마련 노래공연
- 20일 방앗간 개소식
- 24일 지방아동교육분과
- 25일 정책소위
- 26일 여언정책과 사업위원회, 어린이날 행사준비 간담회

제 9회 정기총회 자료집

- 28일 세쌍둥이 2주기 추모제
- 29일 조직분과
- 30일 아동교육분과

<4월>

- 1일 서울경인지대의
- 2일 서울경인지역자원활동가 대표자회의
- 7일 개특위
- 8일 정책소위
- 12일 조직분과
- 13일 아동교육분과
- 15일 지대의
- 16일 어린이날 행사 참가단체자 모임
- 17일 교육연구부 모임, 뽀뽀보 평일 방송 되찾기 항의 시위 참석
- 20일 아동교육분과
- 21일 개특위, 지방아동교육분과
- 22일 정책소위
- 23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실시
- 24일 교육강좌 마감, 교육연구부
- 26일 조직분과
- 27일 지방지대의, 자활대표자회의, 아동교육분과
- 30일 여언 정책과사업위원회

<5월>

- 5일 제3회 공동 어린이날 행사 개최
- 10일 조직분과
- 12일 여성평화의집 준비 회의, 개특위
- 13일 지대의
- 14일 어린이날 평가 모임, 사대위회의
- 18일 아동교육분과

제 9회 정기총회 자료집

- 20일 지대의
- 21일 여언 정책과 사업위원회,
보사부에 올바른 보육사업 수행을 위한 제안서발송
- 22일 지방개특위, 교육연구부
- 23일 자원활동가 체육대회
- 24일 조직분과, 사대위회의
- 25일 지방지대의
- 26일 지방아동교육분과, 개특위
- 27일 교육연구부
- 31일 영아탁아모임

<6월>

- 1일 아동교육분과
- 3일 지대의
- 4일 여언 특별사업위원회 회의, 정책연구부
- 5일 경실련 사회복지정책5개년계획에 대한 토론회 참석
- 7일 정책소위, 자활대표자회의, 평화의집 준비모임, 사대위
- 8일 아동교육분과
- 9일 개특위
- 10일 서울시 보육위원회 참석, 지방개특위, 수련회 준비위 모임
- 11일 여언대표자회의, 정책연구부
- 12일 교육연구부
- 14일 조직분과, 방위비 삭감 토론회 참석
- 15일 정책연구부
- 16일 아동관 토론회, 민자당 여성국 법개정간담회 참석
- 17일 지대의
- 20일 여성통일 마라톤대회 참석
- 21일 정책소위, 보사부에 올린 제안서에 답변 공문 받음
- 22일 지방지대의, 아동교육분과
- 23일 개특위 (민택연대 주체와의 간담회)

- 24일 수련회 준비위 모임
 25일 여언 정책과 사업위원회, 정책연구부
 “TV방송, 이대로는 안된다” 토론회에 참석
 26일 교육연구부
 “정부예산 구조와 사회복지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이해찬 의원 특별
 강연회 참석
 28일-30일 기독교사회발전위원회 합숙교육
 30일 지방아동교육분과, 정책소위

<7월>

- 1일 지대의
 2일 성폭력특별법 줄속처리 규탄대회 참석
 3일 영아탁아모임
 5일 조직분과
 6일 아동교육분과
 7일 개특위, TV 안보기 운동 참석
 8일 여성평화의집 준비 회의
 9일 성폭력추방문화제 참석
 10일 교육연구부
 12일 정책소위
 13일 여언 특별사업운영위원회 합석
 15일 지대의, 개특위
 19일 집행위 평가회의, 조직분과
 19일-20일 서울경인 자원활동가 대표자 여름합숙 실시
 20일 지방지대의 회의, 아동교육분과
 21일 직장탁아소 추진위원회 사례발표회에 참석, 지방아동교육분과
 22일 지대의
 24일 교육연구부
 26일 집행위
 27일 아동교육분과

- 29일 수련회준비위 모임
 31일 여성평화의 집으로 이사감

<8월>

- 2일-4일 여름수련회
 19일 지대의
 20일 정책연구부, 여성평화의집 회의
 21-23일 여언 집행위 수련회
 23일 정책소위
 24일 보사부 비공식 간담회 참석
 25일 농촌탁아소 관계자 간담회 참석
 26일 지방개특위
 27일 여언 정책과 사업위원회
 30일 집행위
 31일 아동교육분과, 지방지대의

<9월>

- 1일 지방아동교육분과, 개특위
 2일 지대의
 3일 자활회의, 여언특별사업운영위
 4일 영아탁아모임
 7일 정책연구부, 어머니큰잔치 준비모임
 8일 개특위
 9일 지방개특위
 11일 교육연구부
 15일 개특위, 인도네시아 활동가 방문
 16일 지대의
 17일 여성평화의집 개소식
 18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첩수
 21일 아동교육분과

제 9회 정기총회 자료집

22일 개특위, 지방아동교육분과

24일 "영유아보육시설의 실태와 보육정책의 대안" 대토론회 개최

<10월>

5일 아동교육분과

6일 개특위

7일 지대의

8일 여언 대표자회의

9일 아동교육실기 강습회

10일 교육연구부

12일 정책연구부

13일 여언 정책과 사업위원회

14일 독일 후원단체 지탁연 방문

16일 교육연구부

17일 제6회 일하는 어머니 큰잔치

19일 지방지대의

22일-23일 부산걱정모임 주최 영유아보육사업 발전을 위한 심포지움 참석

26일 아동교육분과

27일 지방아동교육분과

30일 교육연구부

<11월>

3일 여언대표자회의 참석

10일-11일 기독교사회발전위원회 지자제 교육 참석

11일 지대의

13일 영아탁아모임

16일 아동교육분과, 인형극강습회실시

17일 보육학회 심포지움과 창립대회

19일 여언 정책과 사업위원회, 성폭력방지(아동용) 비디오 시사회 참석

20일 인형극 강습회, 자활대표자회의

제 9회 정기총회 자료집

23일 지방아동교육분과

24일 지방지대의, 여언 특별사업운영위 경영자문 세미나

25일 지대의, 교육연구부

26일-27일 집행위 합숙

30일 아동교육분과

<12월>

1일 개특위

2일 지방개특위, 감사, 교육연구부

4일 독일 EZE 방앗간 방문

6일 수련회 준비위

8일 아동관 토론회

9일 총준위, 여성평화의집 운영이사회

10일 여언 대표자회의, 여성개발원 지원사업단체 보고회 참석

11일 교육연구부, 걱정모임 연구발표 참가

13일 삼성복지재단 평가 면담, 집행위원회

14일 아동분과

15일 지방아동분과

16일 지역대표자회의

17일 '탁아시설 확충방안과 건축설계 방향에 관한 연구' 토론회 토론참가

20일 국정감사 보고회 참가(이해찬, 원혜영의원)

21일 지방지대의

22일 민탁연대 주체모임

♣ 여성운동일지(1993년 1월에서 12월) ♣

- 1/12 윤금이지 살해사건 공대위활동
- 1/14 김영삼차기대통령에게 '근친강간 피해자 김진관군 특별사면'에 관한 사면 요청 공문 발송
- 1/26 경남 고성군 의료보험조합 정은숙씨에 대한 부당해고 항의공문 발송
- 2/1 김영삼 차기대통령과 법제사업위원회에 '성폭력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에 관한 촉구공문발송
- 2/2 여언 제 7차 정기총회개최
- 2/3 여언 '93 년 신년기자간담회'개최
- 2/8 전교조 합법화 및 해직 교사 복직 촉구 단식농성 지원방문
- 2/17 민주당 여성특별위원회의 당규개정안 지지 및 개정 촉구 공문발송
- 2/22 이인모씨 송환 촉구 여성계 서명운동
- 2/24 도곡동 10대 청소년들의 성폭력 범죄를 접하여 성명서 발표
- 2/26 '이인모씨의 무조건 조속 귀환을 촉구한다.' 성명서 발표
- 3/1 일본의 전쟁범죄죄 진상규명과 군국주의 부활저지를 위한 3/1 국제연대집회 참여
- 3/6 여성고용촉진과 사회적 평등을 향한 3.8세계여성의 날 85주년 기념 전국여성 노동자 대회
- 3/8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9회 한국여성대회 개최
- 3/10 윤금이지 살해미군 재판 참여
- 3/12 성폭력추방 모범시민과의 만남, 도곡동 청소년 피해자 부모에 격려성금 전달
- 3/22 우리쌀 지키기 범국민 대책회의 발족식 및 공개토론회
- 3/24 윤금이 사건 심문공판
- 3/25 성폭력 특별법제정에 관한 정무제2장관 면담
- 3/27 '무권리, 이중착취 용역노동의 실태와 대응' 토론회 개최
- 3/30 민주여성 발간
- 4/2 윤금이사건 검사 무기구형에 대한 규탄집회
- 4/3 공직자 재산공개에 대한 시민결의대회 공동주최

- 4/14 윤금이사건 결심공판
- 4/20 신경재정책에서의 여성노동정책안에 대한 질의서 발송
- 4/23 지탁언 주최 영유아보육법 개정토론회
- 4/26 한국일보 브리짓스광고에 대한 항의공문, 처리대책, 스포츠서울 진바지 광고에 대한 항의공문
- 5/11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의 내용과 위원회구성에 대한질의서 발송
성폭력 특별법제정에 관한 국회법사위주최 입법 공청회
- 5/18 6.10민주항쟁 기념 국민위원회 참가
- 5/21 올바른 성폭력특별법제정촉구 범여성, 사회단체 공개기자회견 및 각 당대표, 국회법제사법위원장 앞 공개질의서 발표
- 5/26 제2차 통일과 평화위원회 회의
제한정보전을 위한 민간환경단체의 역할과 과제 공개토론회 참가
- 6/10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심포지움개최' 연구프로젝트기관선정과 관련한 질의서 발송(노동부 앞)
6.10항쟁기념식 참가
- 6/13 new setter(영문판) 발간
- 6/14 방위비 삭감 토론회
- 6/20 통일마라톤대회 개최
- 7/9 성폭력추방문화제 개최
- 7/10 미대통령 클린턴 방한시 주한미군범죄 공개사과 요구시위 참가
- 7/20 '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 한국준비위결성 준비모임참가
- 8/11 8.15기념 일본정부의 정신대발언에 대한 공개사과, 진상규명, 배상요구 정신대 시위 참여
- 9/6 법사위, 청와대, 각 당에 성폭력특별법 수정안 제출
- 9/7 윤금이공대위 평가회 및 해산식
- 9/13 금융실명제하에서의 주부의 상속세, 증여세에 관한 기자간담회 참가
- 9/17 여성평화의 집 헌판식
- 9/20 "남녀평등한 세계개혁을 위한 대토론회"
- 10/15 해고수배노동자 단식투쟁 지원방문
- 10/18 우리쌀지키기 대표자회의

선거법개정 여성단체제안 설명회	10/19
10/19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 기자회견	10/20
10/20 관련단체지원패지 언대 1차모임	10/22
10/22 여성신문 창간5주년 리셉션 참가	10/26
10/26 기독교민회 종교개혁 심포지움	10/27
10/27 남북합의서 이행촉구 1000인서명 대표자회의	11/2
11/2 선거법관련 법여성 단체 기자회견	11/3
우리말 지키기 긴급공청회	11/4
11/3 남북합의서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	11/8
11/4 남북합의서 국회동의와 이행촉구를 위한 공청회	11/10
11/8 민주여성 15호 발간	11/10
11/10 전국여성농민대회 참여	11/11
성폭력특별법 제정 촉구와 친고죄폐지를 위한 국회의장 면담	11/22
11/11 우리말 지키기 대표자회의와 거리시위	11/23
11/22 민주당 여성위원회 '전국구비례대표 20%여성할당'간담회	11/24
11/23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1차 재판 및 거리홍보	12/6
통일정책설명회	12/7
11/24 경제사업경영자문세미나	12/6
관련단체 지원패지 언대 2차모임	12/7
민중개혁의 실현 촉구 1000인서명	11/30
11/30 여성의 고용안정과 촉진을 위한 공개토론회 '여성노동의 현실과 법. 제도적 개선방안'공동주최	12/6
12/6 쌀수입개방을 규탄하는 항의시위	12/7
12/7 직장내 성희롱 실태와 대책에 대한 토론회	12/7
쌀-기초농산물수입개방저지 범국민대회 참가	

부 록

◆ 짜임새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청원서 /1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한 보사부의 의견서/4

보사부의 의견서에 대한 지탁연 입장/8

민간보육시설 대표와 보사부와의 비공식 간담회 보고서 /13

간담회 이후 보사부의 보육정책에 대한 계획/16

함께 부르는 노래/23

수신: 국회의장

제목: <영유아보육법>개정에 관한 청원의 건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1. 청원소개의건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청원자: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번지 84호

(전화: 275 - 8505~6)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회장 최 현 숙

청원서

주 소: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번지 84호

성명: 최 현 숙

주민등록번호: 580306-2004819

1. 청원 취지

새로운 사회 환경속에서 중요하게 대두되었던 보육사업이 1991년 1월,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고 본격적인 사업 실시가 된 이래 3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의 성과는 아동방치의 폐해가 극심한 저소득층 지역에 상당한 정도로 탁아소의 양적 확대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우리나라의 보육제도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데 이는 보육의 책임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의 공동책임이라고 선언적으로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가정내 양육을 강조하는 이념과 공적 재원부담을 회피하는 정부의 정책 방침으로 인해 일부 저소득층에만 보육료를 지원하고 대부분은 수익자 부담에 입각한 보육시장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구분해 놓지않아서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보육욕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기에 부족하며 별도의 재원을 마련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못하다는 것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실제로 아동에게 보호받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보육정책이 가진 문제점을 극복하는 길은 다양한 토론과 대안마련속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일차적으로는 정책 시행의 근거가 되는 법의 개선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의 개정은 행정실시 과정을 무시한 채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행정개선요구가 아니라 장기적 차원에서 성공적인 복지사업으로서의 보육사업 성취를 위해 근본적인 이념과 기조를 마련해야한다는 점과 그러한 것들을 담당주체들의 활발한 참여와

합의를 통해 이뤄나가기 위하여 전제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다.

2. 주요 내용

첫째, 법은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 명시해야 한다.(제2조)

이러한 국가책임의 원칙아래에서 현재 수혜자부담의 원칙에 근거한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을 국가와 수혜자의 공동부담으로 전환하여야 한다.(제21조)

둘째, 정책의 실시여 있어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강화한다. 보육사업을 국가의 위임사무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보장되는 형태로 규정정한다.(제22조, 제30조)

셋째, 보육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의기능의 보장이 필요하다. 현재의 보육위원회가 이용자 및 시설운영자와 보육교사의 주요한 참여통로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표성을 갖는 구성을 해야한다. 또한 추상적인 용어를 나열하는데 그친 보육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심의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예산에 관한 조항을 첨가해야 한다.(제4조)

넷째, 현재 지도, 감독과 관련된 규제조항을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바꾸어 행정편의에 따른 처벌을 약화시키고, 보육의 질과 관련된 규제를 보완한다.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31조)

(현행법과 개정안 대조표 수록-본 글에서 생략)

청원 주요내용 및 우리부 검토의견 (보육부 의견서)

1. 보육비용부담의 책임을 현행 수혜자(보호자)부담원칙에서 국가와 수혜자의 공동부담으로 전환하고 민간보육시설에도 시설운영비등 정부지원 요구 (법 제21조 관련)

○ 보육비용을 국가와 보호자의 공동부담으로 하자는 요구는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은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업 기본방향에도 어긋나며, 국가발전 수준 및 재정형편을 감안하지 않은 주장임.

-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아동보육의 일차적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으며, 보호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책임을 다하지 못할때 국가는 보충적 지원을 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임.

※ 미국, 일본, 캐나다등 선진국에서도 동 원칙에 입각한 보육제도 채택

○ 민간보육시설에 시설운영비 정부지원 요구에 대해서는 이를 수용시 일시에 막대한 정부재정이 소요되어 현재로서는 수용이 곤란하나 앞으로 민간보육시설에도 점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음.

- 현재 민간보육시설에도 저소득층아동 보육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부담으로 보육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재·교구비, 아동급식비등을 자체지방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는 바, 앞으로 이러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음.

※ 현재 3,800여개 민간보육시설에 개소당 보육교사 1명의 인건비만 지원 하는 경우 개소당 연간 6백만원씩 총 228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일시에 소요

2. 보육사업 시행에 있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방정부의 재량권 강화 (법 제22조 관련)

○ 현행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큰 편임.

- 보육시설의 설치(인가)권, 보육시설의 폐지·휴지승인권, 보육시설 지도·감독권등 보육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결정·집행토록 하고 있고 중앙정부는 보육정책 및 보육사업의 근간이 되는 중요사항을 결정·시행하고 있음.

- 보육비용의 부담에 있어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국고지원이 안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자체재정으로 보조가 가능토록 규정하여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크게 보장되고 있음.

○ 다만, 현행법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시설에 보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 법운영 체계상 법률보다는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 향후 영유아보육법시행령개정시 이를 반영토록 적극 검토하겠음.

3. 보육위원회를 보호자, 시설운영자, 보육교사의 주요한 참여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표성을 갖는 위원회로 구성하고 보육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육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의기능 보장(법제4조관련)

○ 현행법에 보육위원회는 각계 대표를 고루 참여시켜 구성토록 이미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음.

-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보육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보육위원은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 보육시설종사자대표, 보호자대표, 관계공무원등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 다만, 앞으로 보육위원회 기능의 확대, 개최회수 명시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동법시행령개정시 이를 반영 검토토록 하고 시·도 및 시·군·구 지방보육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의 기능이 보장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음.

4. 현행 지도·감독과 관련된 규제조항을 개정 행정편의에 따른 처벌을 완화하고 보육의 질과 관련된 규제·보완 (법 제12조 관련)

○ 현행 규정은 인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설치한 자, 인가의 취소, 사업의 정지등의 명령에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에 대한 규제조항으로

- 영유아의 보육은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표현 못하는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양질의 보육환경 확보 및 영유아를 잘 못 보육하거나 방임하는 경우 이를 지도·감독하기 위한 법적규제조항은 불가피함.

○ 다만, 법 적용과 행정처분에 있어 "시정명령", "사업정지", "인가취소"등의 단계별로 조치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 현 행정처분시 그와 같은 단계별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 앞으로 보다 그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향후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시 세부적인 행정처분 절차를 정하도록 하겠음.

<참고자료>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대한 의견

이 해찬 의원 (정 태호 지)

1993년 12월 10일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 공동부담 원칙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보사부>

- 보육비용을 국가와 보호자의 공동부담으로 하자는 요구는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은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업 기본방향에도 어긋나며 국가발전 수준 및 재정형편을 감안하지 않은 주장임

-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아동보육의 일차적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으며 보호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책임을 다하지 못할때 국가는 보충적 지원을 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임

-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도 동 원칙에 입각한 보육제도 채택

<지탁연>

- 사회복지법은 전통적 시민법이 자본주의사회의 모순적 현실과 괴리를 보이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특히 자기책임의 원칙을 수정한 법으로 등장한 것이다.

- 영유아보육법도 결국 여성취업의 증가, 핵가족화 현상이 맞물려 가정의 위기를 초래하므로 개인이나 가정이 자녀양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진데서 등장한다.

자녀양육의 문제는 거시적 차원에서 볼때 우리사회의 존속을 위해 다음세대를 키우는 중요한 과업이다. 그것이 과거에는 전적으로 개인과 가정에 그 책임이 주어져 있다면 현재의 사회는 그러한 생활양식의 변화를 초래하여 이제는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으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재정적 부담도 사회화될 필요가 있다.

-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최상위의 규정인 헌법에서는 제34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에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

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있다.

또한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2항에 있는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규정에 의하면 이것이 1차적으로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법적인 근거는 되지 않는다. 오히려 헌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동시적 공동부담 내게 일차적 국가부담으로 볼 수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의 공동부담원칙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비용부담이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싶다.

-수익자부담원칙을 관철하고 있는 미국,일본, 캐나다는 비록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지만 복지차원에서 볼 때 후진국에 속한다. 따라서 스웨덴, 영국, 독일 등과의 비교가 필요하며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와 경제력 수준이 비슷한 중진국과의 비교가 필요하다고 본다.

-예산상의 문제에 대하여

보육사업은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제도가 전적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그 것의 불합리성으로(부모입장에서는 고액의 보육료, 시설장 입장에서는 운영이 불가능함) 대부분 민간보육시설들이 현상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에있어서 이에 따라 보사부에서도 점진적으로 민간보육시설에 지원을 강구하고 있다. 지원의 폭은 예산확보 여부에 있음을 누구도 안다. 문제는 이러한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적이 근거 내지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지방정부의 재량권에 대하여

<보사부>

-보육비용의 부담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국고 지원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자체재정으로 보조가 가능토록 규정하여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크게 보장되고 있음

-다만 현행법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시설에 보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법운영체계상 법률보다는 하위법령에 정하는 것

이 타당하므로 시행령개정시 이를 반영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지탁언>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비용 부담의 배분에 있어서 현행 수익자 부담원칙이 고수되는 한 이에 따른 비용부담의 역할 배분이 거의 의미를 잃게 된다.

또한 현재 똑같은 법과 지침체계하에서 똑같은 지원요구에 대한 결과가 어느시는 가능하고 어느시는 확보된 예산조차 공무원에 의해 거부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행정 담당자의 자유재량권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명확한 재량권이 필요하며 이에 지원여부에 대한 조례제정권이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조례제정권이 하위법령에 규정된다함은 가능하다고 보나 그렇다면 현재 일부 지역에서 조례제정작업이 진행되는 처지에서 언제 시행령 개정이 있을 것인지 묻고 싶다.

3) 보육위원회에 대하여

<보사부>

현행법에 보육위원회는 각계 대표를 고루 참여시켜 구성토록 이미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음.

다만 앞으로 보육위원회 기능의 확대, 개최회수 명시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개정시 이를 반영토록 하고 시,도 및 시,군,구 지방 보육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의 기능이 보장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음.

<지탁언>

-보육위원회는 보육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수혜자를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이의 실질적인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선 보육위원회의 권리와 의무 규정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모법에 규정되어야 한다. 즉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권, 자료제출 요구권등의 부여되고 명시되어야 한다. (참고적으로 장애인 복지법에서 이러한 위원회에 대한 권리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있음.

=장애인 복지법 제6조 (장애인 복지위원회)

1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 건의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중앙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서울 특별시, 직할시, 도에 지방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2장애인복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직원의 출석 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장애인 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회횟수나 회기 명시가 보육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요한 조항이라 여기나 이러한 것이 시행령 개정시 반영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며 문제는 조속하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벌칙 조항의 문제

<보사부>

현행 규정은 인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설치한 자,인가의 취소,사업의 정지 등의 명령에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에 대한 규제 조항으로

영유아의 보육은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표현 못하는 취약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양질의 보육환경 확보 및 영유아를 잘 못 보육하거나 방임하는 경우 이를 지도,감독하기 위한 법적 규제 조항은 불가피함.

다만 법 적용과 행정처분에 있어 "시정명령", "사업정지", "인가취소"등의 단계별로 조치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현 행정처분시 그와같은 단계별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앞으로 보다 그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향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시 세부적인 행정처분 절차를 정하도록 하겠음.

<지탁언>

먼저 모든 운영 및 비용부담이 개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반면 이에 따른 규제가 경중 구별없이 무조건 불가피하다는 것은 일단 균형이 안 맞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제고를 요청하는 바이다.

<규제에 관련한 법규정: 제11조(폐지 또는 휴지),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제13조(청문), 제2조(인가취소 등), 제31조(벌칙), 제32조(양벌규정)>

취학전 아동을 보육하기에 일정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현행 법에 의하면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에 여기서 모든 처벌의 근거에 "정당한 이유"가 명확히 삽입되어야 한다.

또한 행정처분시 단계별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현재도 행정처분시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행정처분시 고려한다는 것과 정확히 규정된

법의 위임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보호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기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여기서 시행규칙 개정시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1993년 11월에 나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를 반영할 수 없는가. 아니면 언제 할 것인가.

민간보육시설 대표와 보사부 비공식 간담회 보고서

일시: 9월 24일, 오후 4시, 보건사회부 소회의실

참석: 지탁연 회장, 인천 민보련 3인, 성동구 2인, 구로구 2인, 안산 2인, 부천 2인, 강서구 1인 - 총 13인

보사부 김진수 아동복지과장, 원기선 계장, 사무관 2인 - 총 4인

모임개기:

-민자당 법개정 토론회 이후 보사부에서 지탁연의 정책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언.

-이에 7월 20일, 아동복지과장의 요청에 의해 지탁연 회장과의 면담이 이뤄짐.

-면담과정에서 보사부는 청와대의 탁아정책의지를 전달하면서 행정쇄신 기획안, 획기적인 양적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민간보육시설의 실정을 모르니 이를 자세히 알 수 있기를 희망함.

-이에 지탁연은 민탁의 현황을 직접 들을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하고 또한 9월 실태조사에 참석하기를 청하고 간담회를 시도함.

당일 모임 준비:

-모임성원은 각 지역 민탁작업이 시도된 곳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지탁연 1인과 민탁1인으로 정함

-당일 1시간 정도 미리 모여 각지역의 상황을 서로 나누고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사전 논의함

-여기서 지역별, 기타 여러조건 차이에도 불구하고 민탁이라는 깊은 공감대가 형성됨

보사부 간담회 논의 내용:

상견례 이후 먼저 지탁연 회장이 전체적인 민탁운영상황과 개선방안을 제시

1. 민간보육시설의 개괄적 운영현황

사업동기: 복지사업, 여성인력 지원 등 건강한 동기임

운영형태: 전월세가 50%이상 (사실상 국공립, 놀이방을 고려한다면 민간보육 시설의 대부분은 전월세로 보아야 함)

운영의 어려움: 정원 미달, 재정 등(이는 현재 탁아소들이 같은 지역에 밀집)

아동지원: 사실상 민간보육시설에는 전혀 없다고 봐야 함

정부 지원요구: 64% 이상이 원함. 이유는 공적사업, 재정의 어려움 등

원하지 않는 이유: 정부 간섭이 싫어서

현재 시급한 시설 개선: 시설확충, 인건비, 아동보육 프로그램 순으로

용도변경: 모르는 경우도 상당수

변경의 어려움: 건물주 동의 없음, 비용 부담, 건물 자체 하자 등요인

2. 개선 요구사항

전제할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법인)은 사실상 국공립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민간보육시설의 핵심은 30인 정도의 중소보육시설이어서 이에 초점을 맞춘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1) 표준단가를 없애지 않고 유지하되 이를 현실적, 세부적으로 결정할 것.

현행단가는 국공립, 대형 위주로 짜여져서 불합리함. 따라서 기준을 국공립과 민간, 규모별, 대, 중, 소 고려, 지역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의 기준으로 세분화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

2) 지원요구

개시설당 월 50-100만원 정도 부족한 현실(이후 실태조사에서 밝히기로)

따라서 인건비, 시설유지비 등으로 지원을 요구하나 당장 어렵다면 다른 항목으로, 비용도 순차적으로, 방법도 국가와 지방으로 나누어서, 그러나 급하게는 교재교구비, 간식비 등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

3) 건물의 안정화를 위해 직접지원이 아니더라도 장기 물자나 공공시설 이용권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

4) 기타 간접지원방식으로 보육프로그램 지원, 교사재교육

5) 현행 일부지역에서 시도하는 구립형, 시립형을 개발 확충 할 것

6) 용도변경: 30인 이내 시설은 풀어야 한다. 대신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를

7) 정보센터 활성화 및 홍보

8) 지방예산확보강조

9) 공무원의 전문성, 자질에 문제, 개선요구

10) 행정조치, 감사를 최소화하여야

11) 농촌(읍 미만) 기준 새롭게 마련하기를 (부안 농천촌아소 요구안 제출)

12) 직박의 경우 개별사업장과 사업주관계의 불합리성 지적

13) 영유아의 교사수 불합리, 영아의 경우 자원봉사자라도, 이에 수당지급을 민간은 작은 규모이므로 영아반만 운영이 인정되어야

3. 답변

1) 행정간소화 조치는 이미 안을 내왔다. 상당히 부담이 줄 것이다.

2) 민간의 지원을 사실상 경제기획원과의 문제이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하겠다.

3) 용도변경이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 살펴보겠다.

4. 기타 요구

1) 유치원 종일반은 아동의 입장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다(인천)

2) 탁아소 물품에 면세 조치를 해달라 (인천)

3) 공공기관 유휴시설을 민탁에 제공

4) 공공아파트 경우 국공립화 조치(안산)

5) 용도변경 제 강조

6) 미인가 탁아소 양성화 방안, 별도의 경과조치를

7) 놀이터 옆의 공공부지를 탁아소에게 우선 불하하기를

본 글은 지난 10월 22일, 제2차 부산 영유아보육 심포지움에서
토론용으로 발표된 보사부 입장이다.

『영유아보육 행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모색』에 대한 토론

김 진 수

(보건사회부 아동복지과장)

1. 총 평

1991. 1. 14. 영유아보육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그 동안 몇개 부처에서 분산 운영되어 오던 보육사업은 보건사회부로 일원화되어 총괄 관리·운영되고 있다. 보육사업의 일원화 이후에 정부예산이 집중투자되고 시설설치가 용이하도록 관계 법규를 개선하는 등 보육시설 확충에 적극 노력한 결과 '93년 6월말 현재 전국 5,050개소 시설에서 145천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아동들이 보육을 필요로 하고 있어 보육시설의 조속한 확충이 필요하고 아울러 보육사업이 3년 가까이 추진되어 온 과정에서 시행조기상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 보육사업과 관련된 재정지원, 시설운영 및 보육서비스의 질 등에 관한 재검토가 요망되고 있다.

따라서 지난 9월 24일에는 보건사회부 자체에서 2개월간에 걸쳐 마련한 보육사업 개선 대책안을 중앙보육위원회에 상정한 바 있고 또한 개선 내용을 중심으로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안도 준비하여 보육위원들의 검토의견을 취합중에 있다. 금번 김종해 교수의 "영유아보육 행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육사업 확충 계획 중 대폭적으로 설치 확대가 필요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시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주제발표 내용은 전반적으로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현행 보육사업의 문제점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그 원인을 적시하고 있으나, 보호자

나 시설 경영자의 부담을 줄이고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늘려야한다는 정부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 당장 대안으로 채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많으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동 방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과제로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2. 보육행정의 특징에 대한 의견

• 육아책임 주체

육아의 책임은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자유주의 국가가 부모의 책임으로 하고 있다.

비록 현행법상에 수익자 부담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정부지원 대상인 저소득층의 범위를 늘릴 수도 있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필요한 경비도 지원이 가능하다. 영유아보육법상에 정부와 보호자의 공동부담을 명시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대폭적인 예산증대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국가재정 형편상 실현이 어렵고 앞으로 지속적인 예산증대를 통해 공공보육시설 및 저소득층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안으로 생각된다.

• 정책결정 권한

현재는 보육사업의 기본정책이 보건사회부에서 결정되고 있는 top-down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보육사업이 정착되어 보육의 개념이 보편화되고 지방재정의 부담능력이 개선되면 보육사업의 많은 정책결정 기능이 지방으로 위임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의 직접 보육서비스 기능

정부지원 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저소득층 자녀 91천명 전체를 보육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현재 보육중인 아동 145천명 중 정부가 지원해주는 저소득층 자녀는 61천명으로 40%를 점하고 있어 정부의 직접 보육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결코 적은 편은 아니다.

• 보육행정의 시설지원

보육시설 설치인가에 필요한 구비조건이나 설치·운영시 관청의 확인행위는 지원을 위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행정이 규제행정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 특히 '94. 1. 14.

까지 시설과 종사자 구비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조건부 보육시설인 새마을유아원이나 미인가시설에 있어서는 시설 및 종사자 기준 또는 노유자시설로의 용도변경이 마치 규제행정으로 오인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보육시설 설치를 함에 있어 법인이 아닌 개인·단체도 허용하고 최소한의 시설이나 종사자 기준을 갖추도록 하였기 때문에 규제보다는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앞으로 점차 모든 보육시설에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육시설의 자체 행정업무도 간소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3. 보육정책 기능에 대한 의견

• 공공보육의 확대

우리나라의 보육대상 아동은 센서스 자료나 연구기관의 조사자료 등을 토대로 추계하였고, 그 중 법정생활보호대상자 등을 포함한 저소득계층의 자녀는 '92년도의 경우 가구소득 월 60만원미만 계층자녀, '93년의 경우 월 70만원 미만의 가구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보육 대상아동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기준을 높여 점차 확대하고 있다.

• 보육수요의 측정

'93년의 경우 보육수요아동을 100만명으로 잡고 시설소요량을 33천개소로 추정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수치일 뿐 지역별로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보육수요 조사내용에 대해서도 일부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보육수요를 전면적으로 재조사 및 추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94년도에는 전국적인 조사와 병행하여 시·도별 자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육시설 확충 계획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자 한다.

• 민간보육시설 확충

현재의 장기 보육시설 확충 계획에 따르면 '97년까지 정부지원시설은 2천여개, 나머지 31천여개는 민간의 참여에 의해 설치·운영토록 계획하고 있으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97년까지 매년 6,400개소씩 증설해야 한다. 그동안 매년 600여개소가 설치되어 온 실적을 감안해 볼 때 현실적으로 무리한 목표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보육수요 재조사 결과에 따라 민간보육시설의 장기계획도 수정함은 물론 민간이 보육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첫째로 민간이 시설설치를 희망시 공공부지, 공공건물내 유휴공간을 무료로 대여하거나 열가로 제공토록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권장하고, 둘째로 보육시설의 자산을 손금에 산입토록 하며 보육시설의 구입품은 면세혜택을 받게 하고 보호자의 보육비용도 세제감면을 받도록 하는 등 세제혜택을 강구하며, 셋째로 시설의 신규설치 시 인가신청에 필요한 법정구비서류를 감축하고 아파트가 많은 도시지역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안전시설이 갖추어졌을 때에는 1층이 아니더라도 허용하여 지역여건에 따라 설치의 융통성을 부여하도록 하며, 넷째로 '94. 1. 14.까지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많은 시설에 대해서는 조기에 해결되도록 최대한 지원하며, 마지막으로 기업, 금융기관, 종교단체 등의 보육사업에의 참여를 확대 유도하기 위해서 보육사업에 대한 소개와 설치요령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 지방정부의 보육사업 참여 확대

현재 보육시설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은 보육사업지침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지원과 국고보조에 따른 일정비율의 비용부담 그리고 자체예산을 확보한 경우에 급·간식비 등의 제한된 지원에 그치고 있다.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이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확충해 나간다는 원칙이므로 중앙·지방을 막론하고 일반보육아동이나 민간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점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지역복지 차원에서 지방재정으로 민간보육시설에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4. 보육행정체계에 대한 의견

• 보육행정의 전문성 확보

'91. 1.부터 보육행정체계가 보사부로 일원화 되었다고는 하나 중앙 및 지방조직에 독립된 보육전담부서의 설치없이 기존의 아동업무부서에서 보육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독립된 사업조직의 부재는 정부조직 동결 방침에 따라 직제신설의 어려움도 있으나, 보육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결여도 한 원인이라고 하겠다. 현재 중앙의 보사부에는 보육관리과가 신설토록 추진 중에 있으며 지방의 시·도 및 시·군·구에는

보육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금년 6월에 각 시·도에 지시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일부 지방에서는 보육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보육전담 실무인력 확보를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일선의 보육행정 인력이 자주 교체됨에 따라 보육행정의 전문성과 계속성 확보에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이는 보육행정이 다른 복지사업보다 행정이 복잡하기도 하지만 격무로 인하여 보직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

앞으로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 직렬을 새로 신설하여 복지사업의 전문성과 계속성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 보육위원회 기능 활성화

정부 각 부처가 각종 업무에 자문을 구하기 위해 많은 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일부 위원회의 경우에는 활용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보육위원회의 경우에도 보다 활성화 되도록 보육위원회의 위원들이 관련 전문가로 엄선되도록 하고 보육위원회에 대한 행정부서의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

한편 위원회의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설치 여부는 위원회의 기능이 증대되고 분야별 업무가 명확하게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보육정보센터의 기능 정상화

지방의 보육정보센터가 주축이 되어 보육행정을 관장하게 될 때 보육업무는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다. 그러나 지방조직의 경직성과 인건비 등의 확보 어려움으로 제대로 설치·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연차적으로 보육정보센터의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우선 '94년 중에 지방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사회복지관 등에 위탁하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며, '95년부터 일부사업은 국고에서 지원되도록 계획 중에 있다.

5. 보육료 산정

• 표준보육단가

보육료는 보사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 범위내에서 시·군·구별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고시하고 시설장은 고시가 내에서 보육료를 수납하고 있다. 표준보육단가가 실제보육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서울을 제외하고는 보육료를 표준보육단가 수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보육료는 도시지역의 60~70% 수준에 불과하여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방식을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 차등지원을 검토하고, 정부지원 시설은 가급적 표준보육단가의 80% 수준 이상이 되도록 행정지도하며, 민간보육시설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먼저 표준보육단가를 현실화하고 일정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보육료의 고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에 따라 보육료를 책정할 수 있게 보육료의 자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주제발표에서 제시된 일본의 보육료 부담 형식을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에 도입하자는 것은 전 대상아동을 지원하여 민간보육시설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보호자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좋은 해결책으로 보일 수 있으나, 현재 우리의 경제수준 상황에서 국가가 전 보육대상아동을 지원 한다는 것은 정부부담이 너무 크다고 본다.

일본의 경우에도 경기침체로 인하여 국가부담을 줄이고 보호자 부담을 늘림으로써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할 때 무조건 일본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계속해 나가되 저소득계층 자녀 지원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며 상대적으로 보육료에 부담을 느끼는 계층을 단계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이다.

• 저소득층 아동 선정기준

현행 선정기준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만원에 도·농간 소득격차나 재산 및 생활실태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못하고 소득의 실시도 형식적인 확인에 그치고 있어 대상아동의 선정상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도·농간 소득수준 차이를 감안하여 차등 책정토록 하되 소득조사도 재산·생활실태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일정소득액 이하인 자로서 소득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면 이를 토대로 조사하여 책정토록 할 계획이다.

6. 시설운영의 내실화

•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처우미흡으로 우수 보육교사의 확보가 어려워지

고 있다. 보수는 동일자격을 가진 공립유치원 교사 보수의 68.2% 수준에 불과하고 시간외 근무에 따른 수당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다른 보육시설 근무경력도 인정받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보수도 낮은 편이다. 이러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종사자의 보수규정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규정과는 별도로 제정하여 보수수준도 점차 공립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인상하고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나머지 시간은 보호를 중심으로 종사자간 상호 교대근무를 허용토록 하여 초과근무수당은 보육료 수입 등으로 충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은 표준보육단가를 받아야 정상 운영이 가능하나 인근 사설학원 및 유치원 등과의 경쟁으로 인하여 보육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시설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임대료 등의 비용을 감안한 표준보육단가를 현실화하고 민간복지재단과 협조하여 교재·교구 등을 열가로 지원토록 하며, 아동 급식비 등은 지방비에서 확보 지원하고 앞으로는 국고에서도 지원이 가능하게 예산부서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보육위원회, 각종 세미나 및 교육연찬회 등에 민간보육시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민간보육시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건 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7. 기타 의견

지방자치단체 예산 확보

주제발표 내용은 대체적으로 현재 보육사업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을 잘 지적하였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제시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적극 수용토록 노력하겠으며 주제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보육시설의 시설 및 종사자기준, 영아보육, 연장보육문제, 보육서비스 수준향상 등에 관해서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동지여 곧세계

류형선 글, 곡

<희망세>

라 라 라~ 벗들아 일어나 희망세 되자

1. 저들에 피어난 장미꽃보다 우리네 마음이 더욱 곱다오
2. 세상은 험하고 힘들지마는 너와 나 가는 길 막지 못하오
3. 봄벌에 아지랑이 춤을 추어도 벗들의 사망만큼 파사롭겠소
(후렴) 돌아보면 아픔도 많고 많지만 벗들아 일어나 희망세 되자

희망의 노래

김호철 글, 곡

너의 빈 잔에 술을 따라 라 - 너의
나의 술 품도 가져 가거 - 라 나의
마 음에 문 을 열어 - 라 피땀
마 눈 물도 가 져 가거 - 라 피땀
헌 노동 에 - 무너 진 가슴 에 - 우리
헌 노동 에 - 무너 진 가슴 에 - 우리
희 망의 꿈 을 따라 - 라 보라
해 방의 술 을 따라 - 라
거 대하 게 - 몰 아 치는 - 태 풍
의 쓰라 린 - 칼 바 람 - 저
더 러운 것 - 들 싹 쏠 어 서 - 우리
해 방의 불 밝 히리 - 라

<또다시 앞으로>

가버린 세월을 탓하지 마라 지나간 청춘일랑 욕하지 마라
아직도 태양은 우리의 머리위에 빛나고 있다
부딪쳐 깨어지는 파도와 같이 산산이 부서져서 다시 모여라
어차피 우리는 한 배의 운명이니까
자 저 쓰라린 세월도 기름밥 눈치밥의 나날도
자 또다시 일어나 역사에 발맞추어 하나 둘 셋 앞으로 또 다시 앞으로
눈덩이 첫덩이로 앞으로 굴러 끝내는 우리가 건설할 세상을 향해 앞으로

전화카드 한장

조민하 글, 곡

언제 라도 - 함들고 지냈을텐 - 내게 전 화를 하라고 - 내손
에 - 꼭 쥐어 준 너의 - 전 화 카드 - 한장을 - 물고
러미 - 바라보 다 나는 눈시 율이 - 붉어 지고 - 고담
다는 - 말 - 짤 한 마디 - 다 못 하고 돌아섰 - 네 나는
그저 - 나 의 아픔만을 - 생 각 하며 - 살았는 - 데 그
런 입으 - 로나는 늘 동지 라 말했는데 -
오늘난 편지를 써야겠어 - 전화 카 드도 - 사야겠 어 그리
고네게 - 전화를 해 야지 - 줄 것이 - 있노라 - 고

꽃다지 2집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한양대 '더불어 사는 소리' 글, 곡

하나 가-되려고하는것 은 우리 거-레-살아남이 라 하나
우리 조-국하나가된다 면 우리 주인되는세상됨이 라 양키

가 된다는것 은 우리민족 큰힘얻는것 이 라 서로
들 몰아내고 서 우리주인 되는세상되 리 라 자본

가 돌로갈라져남 는다면 모두 시름에겨워죽으 리 부동
가 권력의노예들 보아라 진정 분단의아픔삼키 는 나의

키-는 서로를 그리워함은 기나 긴 거레의-아- 품 하나
어마니 그리고 북녘의하늘 우리 의 땅-어머니의 땅 길-

가 되 기 위 하 여 가슴 벽-찬-무쟁의때 굳게두르고 한뼘
고 도 힘 한 독 정 가열 찬 무쟁만이높히 잠겨우리라 차가

힘 육백 리 사선을 단숨 에 뛰어넘 고 백두산까지우리하
운 분단 의 장벽을

나 가 된다는것 은 더욱 커지는일이 라 동지

여 어깨걸 고 싸우자조국 통 일그날 까 지
통일노래한마당, 전대협 우리의 자람이여 (전대협 노래단)

코끼리 미끄럼

코끼리 아저씨 코끼리 아저씨

다람쥐 드 스트 르 웁승이 드 스트 르

긴 코 르 미끄럼줄 태워 주셔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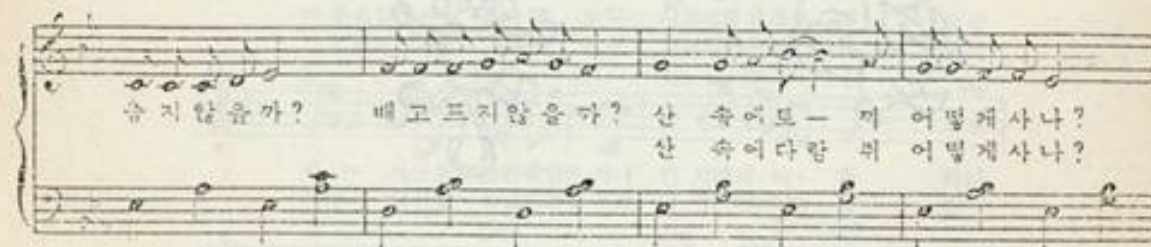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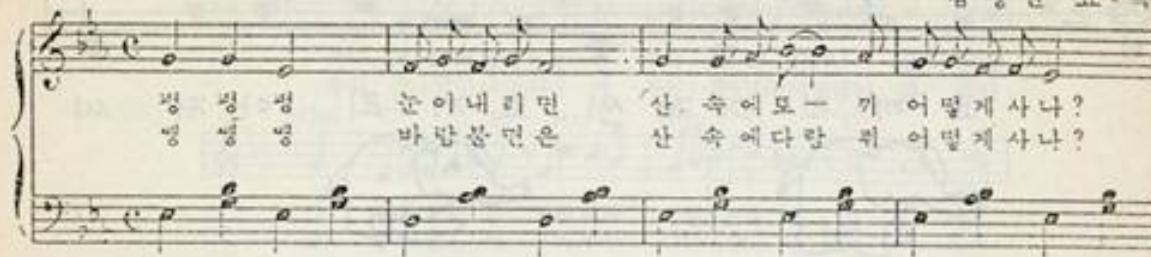
아기 곰이 형 텅방아 쥔-았어 요

오 냐 사 다리플 가져 오 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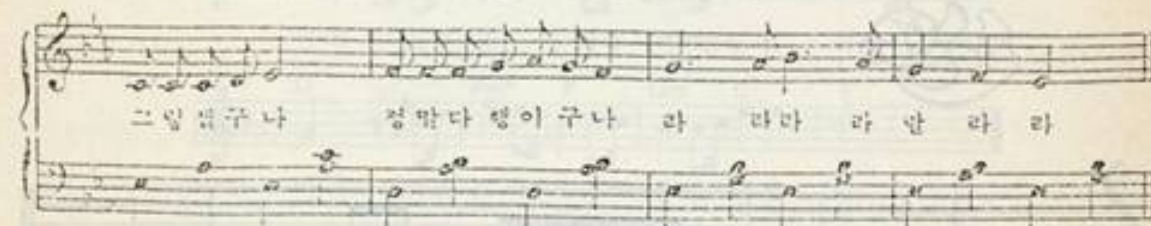
오 냐 조심조심 타-거 라

춤지 않을까? 배고프지 않을까?

김성관 요곡



1. 토기야 토기야 얼마나 추우니? 춤지 않아 나는 뭇꽃을 입었잖아
2. 다람쥐야 얼마나 배고프니? 걱정하지 마 겨울이 오기 전에 얼마 아바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도토리 알밤을 창고에 채워 놓으셨어 배고프지 않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주소록

152-055 구로구 구로5동 41번지 16호 2층 ☎ 838-3296~7

지역	이 름	주 소	전화 번호
북부	어린이사랑방	132-107 도봉구 미아7동 852-613	02) 989-4524 917-6220 984-0880 985-6920 984-7958
	밝은 어린이집	136-104 성북구 정릉4동 236-858	
	등근나라어린이방	132-101 도봉구 미아1동 791-2001 22/4	
	햇님 어린이집	132-108 도봉구 미아8동 327-15	
	햇살 놀이방	132-102 도봉구 미아2동 791-1317	
동부	개나리동산	133-110 성동구 성수1가 211-1	469-1325 461-6251 296-2272
	슬기아이방	133-121 성동구 성수2가 658 - 1호	
	오손도손애기방	133-072 성동구 행당2동 322-158	
중부	게구장이어린이방	110-542 종로구 창신2동 660-14	762-2010 762-9201 723-5368
	해송아기둥지	110-542 종로구 창신2동 626-36	
	포레 놀이방	110-080 종로구 무악동 46-1205	
봉천	꽃동네놀이방	137-070 서초구서초동 1501-7	588-4244 877-3617 872-1781
	봉천동애기방	151-055 관악구 봉천9동 산102-30	
	픽픽이놀이방	151-053 관악구 봉천3동 산89-16호 4/4	
구로	꾸러기동산	152-053 구로구 구로3동 791-25	855-3579 863-0468 867-8698 837-3072 858-4886 853-8853 831-9658 844-5023
	구로놀이방	152-021 구로구 가리봉1동 136-18	
	새터어린이방	152-011 구로구 독산1동 147-56	
	튼튼이놀이방	152-050 구로구 구로본동 409-54	
	온누리탁아방	152-022 구로구 가리봉2동 25-160	
	희망어린이집	152-056 구로구 구로6동 98-15	
	새싹놀이방	150-056 영등포구 신길 6동 3185 4층	
	한울탁아방	150-072 영등포구 대림2동 1069-6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현황

구분	시설명	소재지	연락처
안산	오손도손애기방	425-130 안산시 원곡동 746-14	0345)494-9588
	진달래동산	425-130 안산시 원곡동 범신언립라-101	495-6700
	꿈나무어린이네	425-130 안산시 원곡동 803-2	495-3962
안양	다람쥐놀이방	435-010 경기도 군포시 당동 280-3	0343)55-5321
	한무리어린이집	430-083 안양시 호계3동 706-4	54-5963
부천	아이사랑	421-170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592-15	032)682-6449
	새봄어린이집	421-140 부천시 약대동 145-1 새봄교회내	676-0154
	한울 놀이방	429-010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380-1 3층	691-0349
	튼튼이 아가방	421-150 부천시 중구 삼정동 313-12호2층	676-1887
성남	푸른솔애기방	461-123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동 3922	0342)47-5456
	새날아기마을	461-122 성남시 중원구 금강1동 638번지	732-0930
	하늘어린이집	461-152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1082-2호	41-1448
	동방어린이집	462-241 성남시 중원구 금강1동 671 2층	732-0704
인천	인천지역탁아소위원회	402-063 인천시 남구 도화3동 52-20	032)863-7443
	굴목어린이집	402-205 인천시 남구 주안5동 8-60	872-5196
	나눔의집	402-063 인천시 남구 도화3동 52-20	863-7443
	민들레의집	402-021 인천시 동구 화수1동 278-30	762-8664
	새싹어린이집	404-252 인천시 서구 가좌2동 30-23 19/2 301호	573-6304
	햇살어린이집	403-030 인천시 북구 청천동 86-7	525-3734
	우리동네 어린이집	403-040 인천시 북구 효성1동 153-7 18/4 3층	548-0635
	무지개동산 어린이집	403-020 인천시 북구 산곡동 180-390	529-9479
	세쌍둥이탁아소	402-022 인천시 남구 용현2동 473-1호	887-0531
	엄마방놀이방	403-011 인천시 북구 부평4동 887번지 39-3	526-5849
	샘터 선교원 어린이집	403-131 인천시 북구 심정1동 191-16	516-6459

안산	오손도손애기방	425-130 안산시 원곡동 746-14	0345)494-9588
	진달래동산	425-130 안산시 원곡동 범신언립라-101	495-6700
	꿈나무어린이네	425-130 안산시 원곡동 803-2	495-3962
안양	다람쥐놀이방	435-010 경기도 군포시 당동 280-3	0343)55-5321
	한무리어린이집	430-083 안양시 호계3동 706-4	54-5963
부천	아이사랑	421-170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592-15	032)682-6449
	새봄어린이집	421-140 부천시 약대동 145-1 새봄교회내	676-0154
	한울 놀이방	429-010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380-1 3층	691-0349
	튼튼이 아가방	421-150 부천시 중구 삼정동 313-12호2층	676-1887
성남	푸른솔애기방	461-123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동 3922	0342)47-5456
	새날아기마을	461-122 성남시 중원구 금강1동 638번지	732-0930
	하늘어린이집	461-152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1082-2호	41-1448
	동방어린이집	462-241 성남시 중원구 금강1동 671 2층	732-0704
인천	인천지역탁아소위원회	402-063 인천시 남구 도화3동 52-20	032)863-7443
	굴목어린이집	402-205 인천시 남구 주안5동 8-60	872-5196
	나눔의집	402-063 인천시 남구 도화3동 52-20	863-7443
	민들레의집	402-021 인천시 동구 화수1동 278-30	762-8664
	새싹어린이집	404-252 인천시 서구 가좌2동 30-23 19/2 301호	573-6304
	햇살어린이집	403-030 인천시 북구 청천동 86-7	525-3734
	우리동네 어린이집	403-040 인천시 북구 효성1동 153-7 18/4 3층	548-0635
	무지개동산 어린이집	403-020 인천시 북구 산곡동 180-390	529-9479
	세쌍둥이탁아소	402-022 인천시 남구 용현2동 473-1호	887-0531
	엄마방놀이방	403-011 인천시 북구 부평4동 887번지 39-3	526-5849
	샘터 선교원 어린이집	403-131 인천시 북구 심정1동 191-16	516-6459

수원	용기종기놀이방 꿈동산어린이집	441-360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393-2호 441-220 수원시 권선구 매교동 140-1호	0331)294-3877 35-8156
대전 천안	샘골놀이방 채송화어린이집	306-020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31-41 3/4 330-070 천안시 원성1동 498-13 현대소아과 2층	042)626-3198 0417)555-0077
대구	달구벌어린이집 참사랑애기방 배꼽마당 민들레놀이방 디딤 탁아소 감나무굴	702-052 대구시 북구 침산2동 299-2 703-041 대구시 서구 비산1동 782-47 702-072 대구시 서구 비산6동 361-2 703-011 대구시 서구 평리1동 743-2 703-042 대구시 서구 비산2동 27-17 702-042 대구시 북구 대현2동 462-8	053)353-1326 556-6338 557-0419 553-5669 563-7783 957-3926
성주	대가어린이집	719-860 경북 성주군 대가면 홍산2동791	0544)932-4875
부산	우리아가동산 꼬마동산 새날어린이집 아기자람터 새싹	614-012 부산시 진구 가야2동 590-14 608-062 부산시 남구 우암2동 189 616-030 부산시 북구 업궁동 465-19 614-044 부산시 진구 천포4동 191-223 614-024 부산시진구 범천4동산38번지11/3	051)894-3218 647-9434 328-6264 816-4383 898-1297
전주	일터아가들의집	560-200 전주시 팔복동 2가 290-1 전북일보 제2별관 3층	0652)211-1803
부안	마포놀이방 돈지놀이방 금암어린이집	579-850 전북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 산기 246 579-850 전북 부안군 계화면 의봉리 560-182 전주시 덕진구 금암2동 514-1	0683) 81-0890 84-4124 253-0389
이리	정다운어린이집	570-160 이리시 영동동 235	0653)857-4482
군산	해뜨는동산	573-150 군산시 선양동 905	0654) 63-0962
마산	두레아가동산 까치둥지 튼튼이어린이집	630-500 마산시 봉암동 436-3 17/1 대정빌딩 4층 630-511 마산시 회원구 구암1동 267-22 630-492 마산시 회원구 양덕2동 151-30	0551) 99-6630 98-4744

광주	우리동네 아기둥지	502-223 광주시 서구 양3동 384-1	062)364-3831
	무진어린이방	502-210 광주시 서구 광천동 655-9	366-2600
	도담도담	502-233 광주시 동구 학3동 901-314	228-6786
	아기둥지		
	게뽀아가방	501-083 광주시 동구 계림3동 202-2	227-8864
	오손도손애기방		222-2202
거창	하루종일 어린이집	670-800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132-1	0698)857-1944

◆ 인천 민보련

405-230 인천시 남동구 간석3동 102-7 신성교육사 2층
032)423-8578

032)423-8578

한글 인천 우리네 방앗간

032) 513-9683

※ 주소와 전화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없는 경우 반드시
정정 광고를 내도록 해주십시오.

